

머리말

일본대부업협회 2009년도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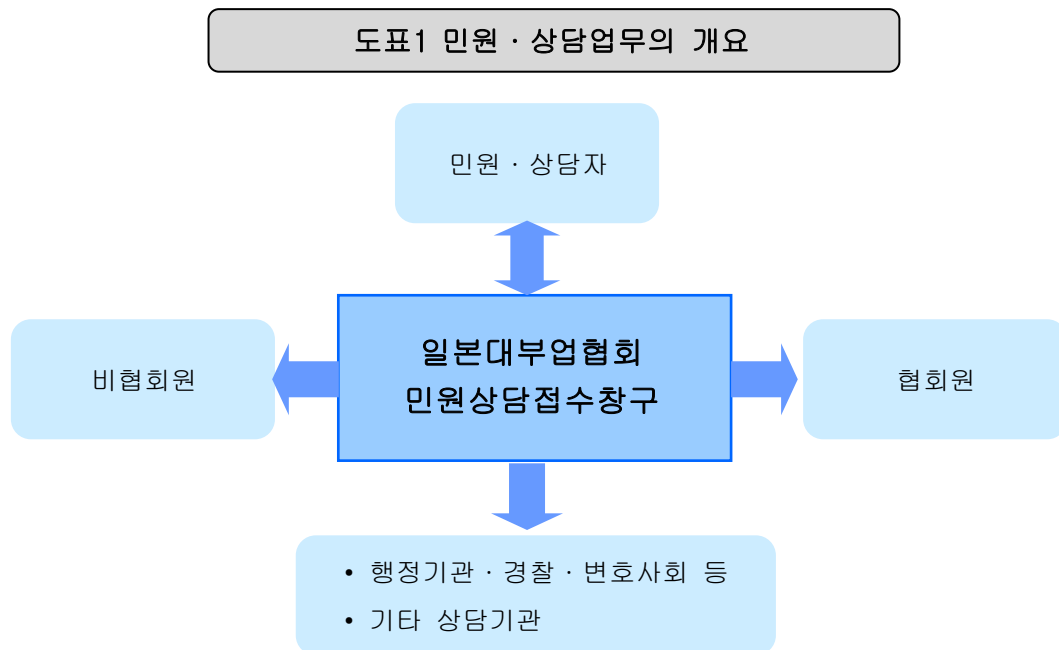
<협회의 활동내용>

협회에서는 대부업체의 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등과 같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 이루어진 협회 활동 가운데 ‘민원처리·상담대응’, ‘광고심사·법무상담’, ‘감사의 실시’,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행정 협력 사무’, ‘홍보·계몽활동’ 및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주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상담대응

1) 업무개요

자금수요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상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부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① 민원처리

협회원이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폭넓게 접수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대상이 되는 협회원에게 내용을 통지한다. 필요할 경우 업무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② 상담접수—일반상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싶다’ , ‘계약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 ‘불법사채업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등과 같은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③ 상담접수—채무상담

‘빚이 너무 많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와 같은 상담에는 채무상황이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상담기관의 소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빚은 정리할 수 있었지만, 가게 관리가 서툴러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이다’ , ‘의존증(도박이나 쇼핑 등)을 고칠 수가 없다’ 와 같은 상담에는 생활재건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④ 대출 자숙 제도

낭비벽 등과 같은 이유로 자금수요자 본인 및 해당자의 소재불명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증명된 경우, 협회는 친족으로부터 대출 자숙 신고를 받아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을 의뢰하여 다중채무자의 발생 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⑤ 협력 요청

협회원이 아닌 대부업체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민원 · 상담 접수현황

협회에 접수된 민원 및 상담건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표2 민원 · 상담 접수건수와 상세내역

(단위 · 건)

구분	2007년도 (07,12~08,3)	2008년도 (08,4~09,3)	2009년도										계 (*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심행위	10	326	14	15	11	23	23	17	23	13	17	156	
계약내용	6	85	10	7	8	26	9	14	25	13	9	121	
금리	2	7	1	-	-	-	1	1	4	-	1	8	
연금담보	-	1	-	-	-	-	-	-	1	-	-	1	
장부공개	7	82	15	15	23	29	16	12	21	10	7	148	
과잉대출	-	1	-	-	1	-	-	-	-	-	-	1	
행정당국사청, 등록업자사청	-	-	-	-	-	-	-	-	-	-	-	-	
보증계약	-	4	1	-	2	-	-	-	1	8	6	18	
광고·권유(사청미외)	-	11	2	2	2	1	1	2	4	1	2	17	
과불금	-	18	1	3	5	13	8	6	5	4	5	50	
개인정보(*2)	-	-	-	-	-	-	-	-	4	3	3	10	
사무처리(*2)	-	-	-	-	-	-	-	-	2	6	4	12	
용자관련(*2)	-	-	-	-	-	-	-	-	3	5	2	10	
기타	18	62	9	5	14	15	7	3	2	3	2	60	
합계(*4)	43	597	53	47	66	107	65	55	95	66	58	612	
상환능력부족	1,180	5,214	393	384	397	406	276	366	290	236	201	2,949	
상환의무	207	1,011	96	55	89	94	61	82	80	68	51	676	
신분증 등의 분실	542	2,023	183	125	136	126	143	123	143	109	108	1,196	
대출자속 의뢰·철회	2,249	8,240	714	642	658	589	595	615	517	496	484	5,310	
신용정보	593	2,722	318	244	313	285	234	283	241	230	232	2,380	
등록업자 확인	983	3,824	339	310	355	238	415	414	352	349	333	3,105	
수수료	15	77	2	1	5	7	6	6	8	-	7	42	
스팸메일	87	258	18	10	8	12	5	13	6	9	4	85	
계약내용	205	1,849	120	114	137	260	164	182	193	98	85	1,353	
장부공개	50	282	22	23	25	23	15	22	16	10	12	168	
보증인의 관계	48	180	15	11	17	16	13	13	12	16	6	119	
금리·계산방법	290	1,109	84	50	76	66	57	52	50	45	35	515	
자기파산·조정·민사채생·수속	55	325	33	20	25	28	14	24	17	15	15	191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있음	336	1,585	109	105	112	124	99	107	94	91	78	919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없음	261	2,318	218	200	206	206	205	189	188	163	108	1,683	
용자관련(대출상담 등)	-	2,541	662	334	641	744	555	401	403	343	266	4,349	
과불금	-	1,211	165	149	174	157	137	142	117	98	101	1,240	
업체의 연락처(*2)(*3)	-	-	-	-	-	-	-	-	901	799	839	2,539	
기타	1,007	7,442	1,062	869	1,131	1,145	925	1,144	320	421	331	7,348	
합계(*4)	8,108	42,211	4,553	3,646	4,505	4,526	3,919	4,178	3,948	3,596	3,296	36,167	

(*1) 합계는 2009년도 합계임(2009년 4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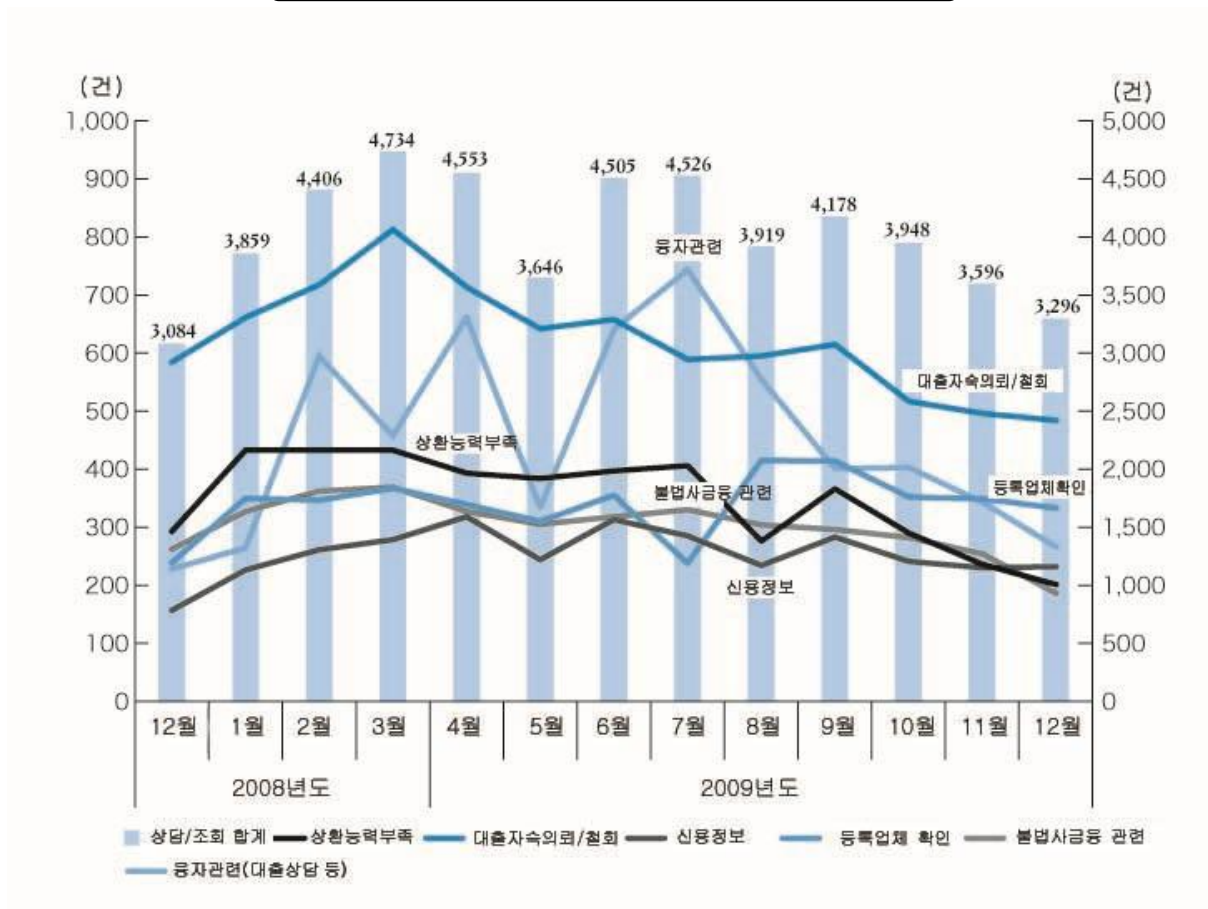
(*2) 항목은 2009년 10월부터 집계 개시

(*3) 2009년 9월 이전에는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음

(*4) 2009년 10월부터 민원 내용의 정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담 · 조회’로 분류되었던 일부 건수가 ‘민원’으로 분류되었다.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통계자료)

도표3 <참고> 상담건수와 주요항목의 추이



3) 기타 활동

항목	개요
생활재건지원	가계 수지 개선을 통한 생활재건과 낭비벽 및 도박벽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담자에게 심리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금년도(2009년 4월~12월) 실적 ● 상담자수 : 441명 ● 카운슬링 실시건수 : 871회
외부기관과의 연대 강화(출장강좌)	협회의 인지도 향상과 더욱 강한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비 생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생활 재건 채무 상담 및 카운슬링 연수를 실시.

2. 광고심사 · 업무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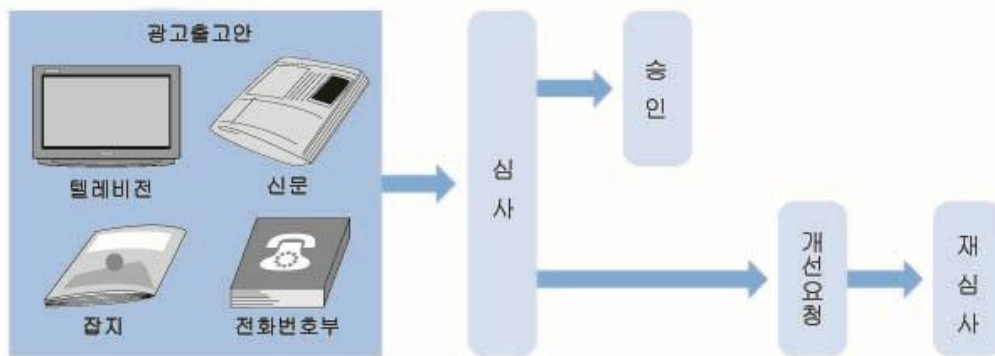
1) 업무개요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원을 대상으로 광고가 나가기 전 사전심사를 거치는 광고출고사전심사 및 업무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① 광고심사

협회원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의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전화번호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출고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대상 외의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여 자금수요자 등이 업체나 상품선택 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광고에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표기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고심사 외에도 출고 상황의 모니터링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도표4 광고출고사전심사의 개요



② 업무상담

협회원을 대상으로 업무상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자율규제 기본규칙 및 기타 업무규정의 해석은 어떠한지’, ‘사내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접수된 상담 가운데 협회원에게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2) 활동실적

실시항목	개요
광고출고사전심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광고에 대한 출고사전심사를 실시 필요에 따라 개선요청을 실시하며, 재심사를 실시 금년도(2009년 4월~12월) 심사건수 : 694건
협회원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대응	사내규정 및 광고 권유, 법령 등의 해석, 서식류와 관련하여 협회원으로부터 받은 문의에 대한 응답 금년도(2009년 4월~12월) 문의건수 : 4,568건

3. 감사의 실시

1) 업무개요

협회원의 법령 및 각종 규칙의 준수 여부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체제 정비를 통한 업무의 적정한 운영 확보 등의 관점에서 ‘일반감사’와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일반감사

법령·자율규제 기본규칙 등과 같은 각종 규칙의 준수 상황, 내부관리체제의 정비 상황에 대해 협회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감사의 경우 협회원이 협회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하는 ‘서류감사’와 협회원의 영업소 등에서 실시되는 ‘현장감사’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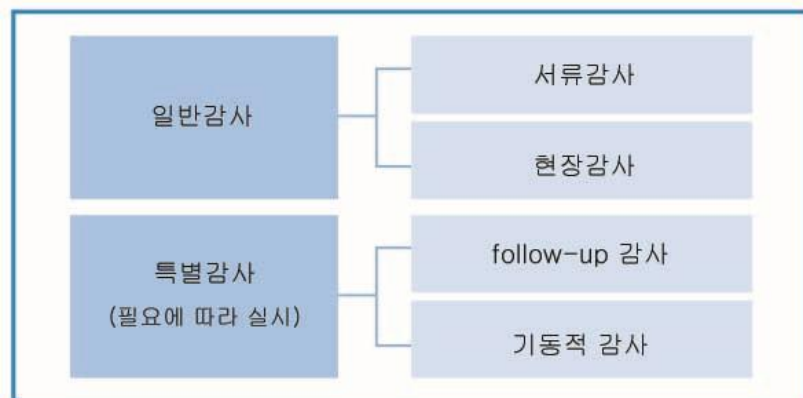
② 특별감사

법령·자율규제 기본규칙 등과 같은 각종 규칙의 준수상황, 내부관리체제의 정비상황 가운데 특정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협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지도사항의 개선상황을 확인하는 ‘Follow-Up 감사’와 감독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항목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기동적 감사’가 있다.

③ 감독기관과의 연대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감독기관과의 밀접한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감독상의 유의사항 등’, ‘연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대상 협회원 등’, ‘감사결과 및 협회원의 개선 상황 등’의 각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도표5 감사업무 개요



2) 활동실적

실시항목	개요
2008년도 서류감사 ^(*1) 에 따른 협회원의 처분 실시	실시한 서류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 및 권고를 실시. 상세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처분 57건, 처분건수 중 제명은 6건. 그리고 제명 이외의 처분은 권고를 병과)
2009년도 서류감사 실시	전 협회원에 대해 완전시행의 준비 대응 등에 대해 실시.
2009년도 현장감사 실시	전 협회원의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정하도록 대상회사를 추출하여 현장감사를 실시(2010년 1월말 현재 : 56사)
2009년도 특별감사 실시	2008년도 서류감사에서 회원권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원 가운데 대상회사를 추출하여 특별감사를 실시(2010년 3월 5일 현재 : 8사)

(*1) 2008년도 서류감사란 전 협회원을 대상으로 사내규칙에 의거한 업무의 실시 상황을 88개 항목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요구한 감사를 말한다.

4.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1) 업무개요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업무의 적정화를 위해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에 대한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협회는 2009년 6월 18일에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지정 시험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아 같은 해 8월 30일에 제1회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자격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등록사무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아 대부업법 상의 지정시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① 시험사무

- 시험문제의 작성 및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시험실시요령의 작성 및 시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 자격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업무위탁처 선정 및 위탁처 관리에 관한 사무
-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작성에 관한 사무

② 등록사무

- 주임자 등록에 관한 사무
- 주임자 등록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무
-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무
- 시험사무 및 주임자 등록 사무와 관련된 회계사무

2) 활동실적

실시항목	시험일	응시자	합격자	시험장
대부업무	2009년 8월 30일	44,708명	31,340명	삿포로, 센다이, 지바, 도쿄, 사이타마,
취급	2009년 11월 22일	16,597명	10,818명	요코하마, 다카사키, 나고야, 가나자와,
주임자	2009년 12월 20일	12,101명	7,919명	오사카, 교토, 고베, 히로시마, 다카마쓰,
자격시험	2010년 2월 28일	8,867명	5,474명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

5. 행정협력사무

1) 업무개요

대부업의 등록신청·갱신·변경 등의 신청서류 접수사무를 재무국 및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2) 활동실적

위탁을 받은 주요 행정협력사무	접수건수
대부업 등록신청, 등록갱신신청 접수사무	783
변경, 폐업 등의 신고 접수사무	6,255
대부업의 개시 및 휴업 시 필요한 신고서류 등과 같은 각종 신고 접수사무	1,270
사업보고서, 업무보고서의 접수사무	5,503

(주1) 접수건수는 금년도(2009년 4월~2010년 1월) 실적임.

6. 홍보 · 계몽 활동

1) 업무개요

① 홍보활동

매월 발행하고 있는 ‘JFSAnews’ 등을 통하여 협회원에게 대부업법 및 업계 관련 정보, 업무정보, 협회 활동내용 등을 발신하여 업무의 적정화와 업계의 건전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업계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협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홍보를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② 계몽활동

다중채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전이나 이자, 대부업, 금융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으로 대표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환기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민원상담창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에도 힘쓰고 있다.

2) 활동실적

	활동명칭	실시시기	개요
홍보활동	홍보지를 이용한 활동	매월 및 분기별	월간지 ‘JFSA news’와 계간지 ‘계간 JFSA’를 발행하여 협회원의 업무 적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업계 관련 정보를 발신한다.
	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활동	수시	업계지와 관련 기관지 등에 협회 광고를 게재하여 인지도 향상 등을 도모한다.
	섭외활동을 이용한 활동	수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각 관계단체 및 매스컴 등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계몽활동	‘개정대부업법’ 홍보활동	2009년 3월~8월	법 시행 시, 자금수요자 등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금수요자들에게 영향이 예상되는 주된 법개정 내용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가계관리 진단 콘텐츠의 개발	2009년 9월	다중채무자의 발생 방지를 위한 계몽 차원에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행동 진단·가계관리 진단’ 콘텐츠에 새롭게 3개의 콘텐츠를 추가했다.
	소비자계몽용 책자 배포	2010년 1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에 관한 기초지식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성인식용 124,422부, 소비생활센터 26,455부)
	출장강좌 등을 이용한 활동	수시	고등학교나 대학교, 소비생활센터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를 파견하여 다중채무 방지나 악질업체 등에 대해 출장강좌를 실시(2009년 4월~12월 실적 : 개최 39회, 참가자 1,100명(단, 동일인 중복 참가 시 한 명으로 카운트))

7. 조사연구 활동

1) 업무개요

대부업이 국민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여 그 현황과 동향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기획입안이나 업계동향을 파악한 정보 등을 발신하고 있다.

2) 활동실적

실시항목	시기	개요
월차실태조사	2008년 7월~ (이후 매월 공표)	대부업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원 각사의 협력 하에 잔고규모의 동향 등을 월차로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매월 홈 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 본 백서 제2장
대부업체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	2009년 10월	대부업계의 현황, 개정법의 영향 등을 업체의 경영실태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3장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등에 관한 조사	2009년 10월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도와 관련하여 인지도 및 인지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4장
완전시행과 관련하여 대응 상황 등에 관한 조사	2009년 11월	대부업법 개정의 완전 시행에 맞춰 대부업 이용자와 대부업체 각각의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3장 및 제4장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2010년 1월	자금수요자의 동향 및 대부업법 개정의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5장
기타 조사	-	기타 협회 운영이나 업계의 건전한 발전,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조사를 실시.

제1장 대부업계의 현황

1.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

1) 대부업체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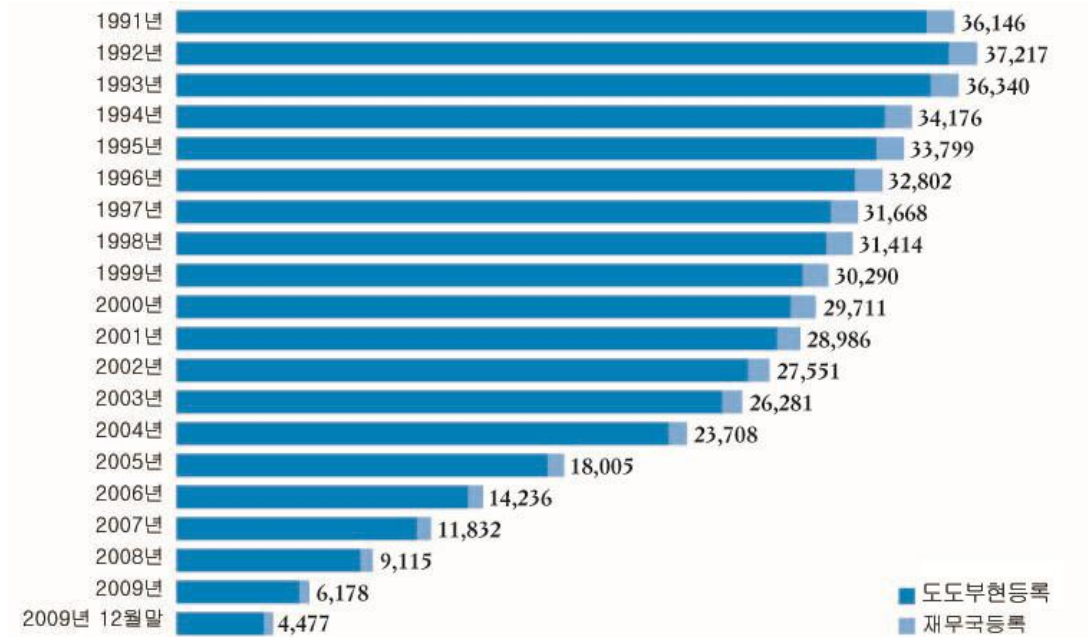
① 매년도 말의 추이

대부업체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수는 6,178사이며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는 4,477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1 대부업체 수의 장기적 추이(1991년~2009년)

(단위: 사)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도도부현등록	34,841	35,879	35,034	32,900	32,526	31,521	30,400	30,186	29,095	28,543
재무국등록	1,305	1,338	1,306	1,276	1,273	1,281	1,268	1,228	1,195	1,168
합계	36,146	37,217	36,340	34,176	33,799	32,802	31,668	31,414	30,290	29,711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12월말
도도부현등록	27,896	26,551	25,352	22,869	17,243	13,534	11,168	8,535	5,705	4,053
재무국등록	1,090	1,000	929	839	762	702	664	580	473	424
합계	28,986	27,551	26,281	23,708	18,005	14,236	11,832	9,115	6,178	4,477



(주) 2009년 12월말 이외에는 매년 3월말의 수치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② 재무국, 도도부현 등록별 대부업체 수의 추이

도표 1-2 재무국, 도도부현 등록별 대부업체 수 추이(2008년, 2009년 12월말)

(단위: 사)

	2008년	2009년
관동재무국	237	197
도쿄도	1,620	1,119
가나가와현	194	121
사이타마현	107	75
지바현	121	67
야마나시현	33	21
도치기현	41	15
이바라기현	68	36
군마현	48	28
니가타현	47	26
나가노현	42	21
소계	2,321	1,529
관동관내합계	2,558	1,726
긴키재무국	78	64
오사카부	628	387
교토부	173	122
효고현	269	187
나라현	55	36
와카야마현	63	28
시가현	44	32
소계	1,232	792
긴키관내합계	1,310	856
홋카이도재무국	10	8
홋카이도	224	137
소계	224	137
홋카이도관내합계	234	145
도후쿠재무국	32	30
미야기현	105	68
이와테현	51	27
후쿠시마현	46	17
아키타현	27	22
아오모리현	51	29
야마가타현	35	17
소계	315	180
도후쿠관내합계	347	210
도카이재무국	31	29
아이치현	225	156
시즈오카현	113	85
미에현	76	46
기후현	48	29
소계	462	316
도카이관내합계	493	345
호쿠리쿠재무국	11	8
도야마현	45	31
이시카와현	43	29
후쿠이현	41	22
소계	129	82
호쿠리쿠관내합계	140	90
쥬고쿠재무국	25	21
히로시마현	104	70
야마구치현	70	44
오카야마현	101	77
돗토리현	19	9
시마네현	10	5
소계	304	205
쥬고쿠관내합계	329	226
시코쿠재무국	21	18
가가와현	51	28
도쿠시마현	44	28
에히메현	104	63
고치현	66	36
소계	265	155
시코쿠관내합계	286	173
규슈재무국	22	17
구마모토현	101	50
오이타현	56	33
미야자키현	63	34
가고시마현	70	40
소계	290	157
규슈관내합계	312	174
후쿠오카재무국	28	28
후쿠오카현	510	283
사가현	28	13
나가사키현	117	75
소계	655	371
후쿠오카관내합계	683	399
오키나와종합사무국	5	4
오키나와현	244	129
소계	244	129
오키나와관내합계	249	133
재무국 합계	500	424
도도부현 합계	6,441	4,053
총 합계	6,941	4,477

(주) 합계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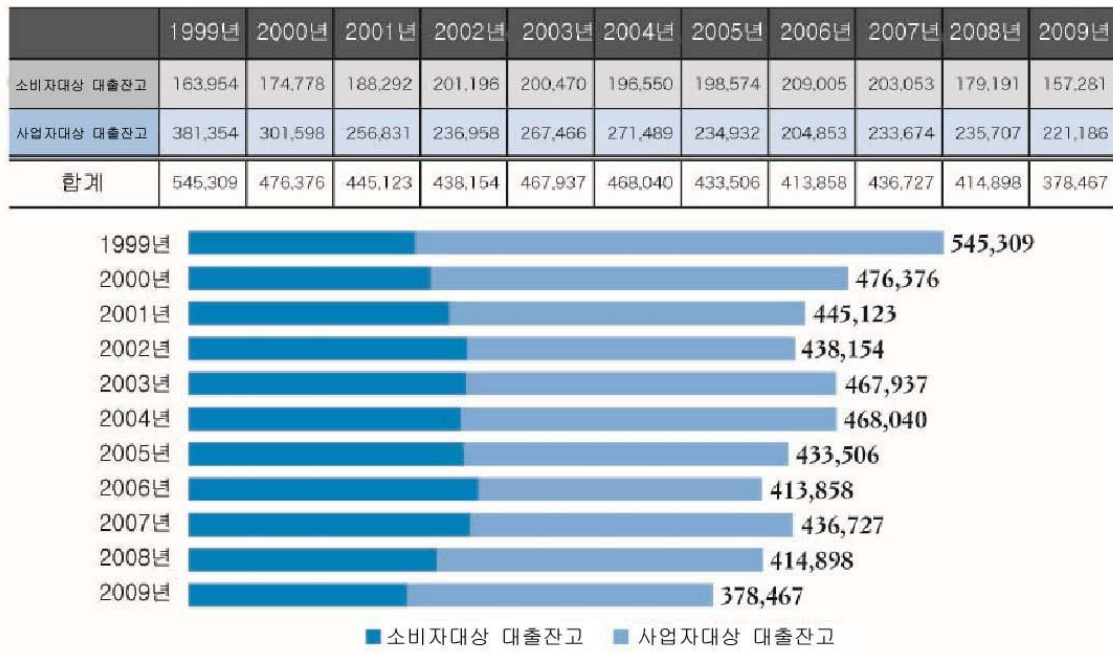
2) 대출잔고의 추이

①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와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매년도 말)

‘소비자대상 대출잔고’는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3년간 약 5조 1,700억 엔의 대출잔고가 감소했다. 그리고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의 경우는 1999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다.

도표 1-3 대출잔고의 추이(1999년~2009년)

(단위: 억엔)



(주) 매년 3월말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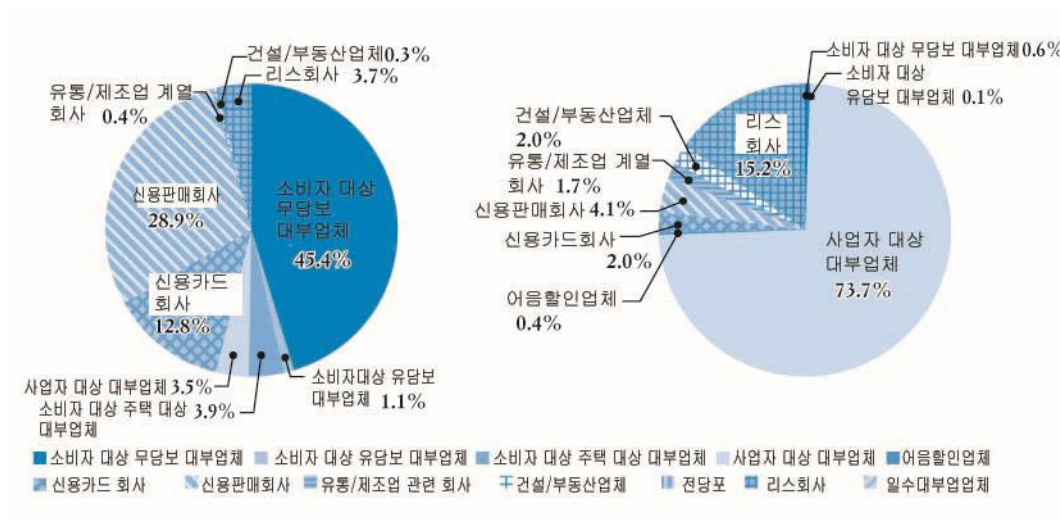
(출처: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② 업태별 대출잔고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소비자 대상 대출의 45.4%를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28.9%를 ‘신용판매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가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5.2%를 ‘리스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도표 1-4 업태별 대출잔고 비율

■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 비율(2009년 3월말) ■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 비율(2009년 3월말)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업태별 대출잔고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는 1993년 이후 증가 추세였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변했다.

도표 1-5① 업태별 대출잔고의 추이(1993년~2009년)

(단위: 억엔)

	대출잔고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43,900	45,731	52,177	64,771	74,833	89,845	95,948	106,263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11,424	8,481	8,172	6,065	5,768	4,185	3,514	2,755
소비자 대상 주택 대상 대부업체	11,964	14,326	15,643	14,843	14,137	8,589	13,751	15,054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434,092	415,441	393,910	358,489	339,906	267,382	204,360	179,977
어음할인업체	5,743	4,493	4,241	5,527	4,190	4,709	4,272	4,274
신용카드회사	13,482	13,012	12,657	12,586	12,391	13,228	19,268	12,888
신용판매회사	64,453	67,595	64,427	63,222	58,461	59,979	54,170	62,052
유통/제조업 관련회사	11,504	9,403	10,316	12,024	11,274	11,764	9,547	6,882
건설/부동산업체	56,002	53,279	46,149	36,236	24,907	24,262	23,774	17,841
전당포	1,299	1,742	1,733	1,212	1,359	1,591	1,279	1,341
리스회사	148,349	141,559	124,120	109,539	93,381	59,117	45,797	35,035
일수대부업체	381	486	388	801	603	652	691	754
합계	802,593	775,548	733,933	685,320	641,216	545,309	476,376	445,12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119,341	120,074	117,169	116,720	117,403	108,601	89,659	72,853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2,877	2,187	2,288	1,824	1,285	2,408	1,653	1,933
소비자 대상 주택 대상 대부업체	12,427	8,067	7,226	5,751	9,183	7,154	6,992	6,158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178,909	222,336	228,062	193,333	160,580	177,810	178,547	168,546
어음할인업체	3,697	2,702	2,679	2,385	2,206	2,348	1,597	961
신용카드회사	16,233	16,828	16,202	14,706	23,345	25,413	26,334	24,635
신용판매회사	51,917	47,702	50,870	53,093	53,504	57,293	55,509	54,434
유통/제조업 관련회사	5,632	5,412	6,765	6,903	6,552	6,631	4,044	4,317
건설/부동산업체	12,085	9,248	7,313	5,507	5,432	6,010	5,731	4,962
전당포	988	425	437	240	198	251	141	132
리스회사	33,350	32,375	28,416	32,379	33,495	42,496	44,543	39,435
일수대부업체	694	576	607	660	672	307	142	95
합계	438,154	467,937	468,040	433,506	413,858	436,727	414,898	378,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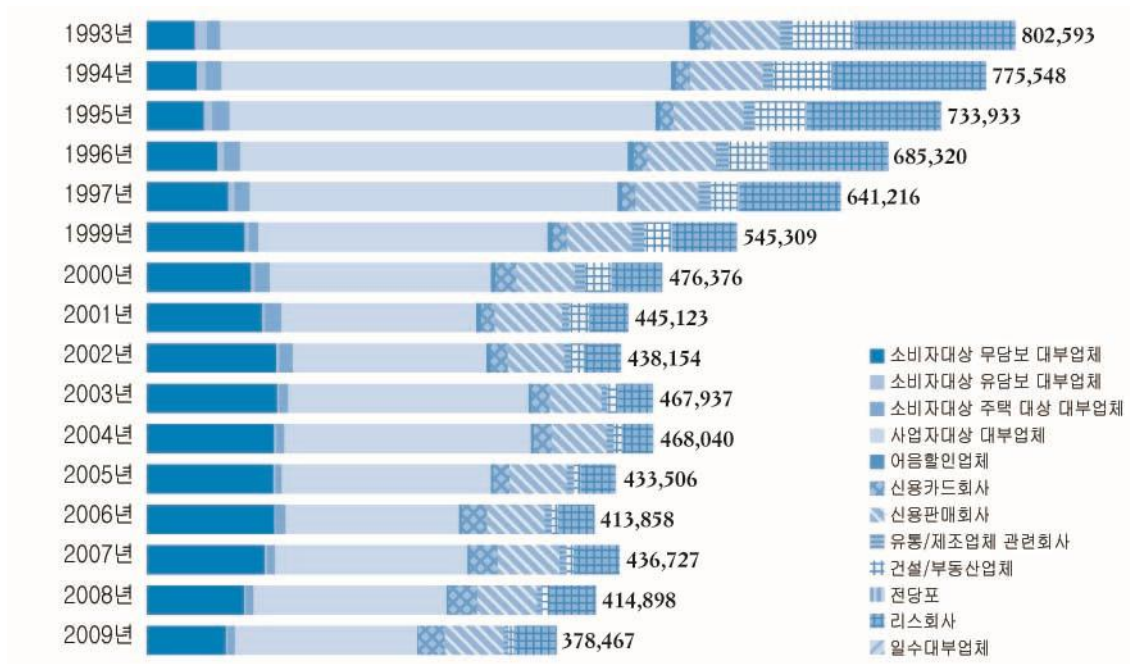
	업태별 대출잔고 구성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5.5%	5.9%	7.1%	9.5%	11.7%	16.5%	20.1%	23.9%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1.4%	1.1%	1.1%	0.9%	0.9%	0.8%	0.7%	0.6%
소비자 대상 주택 대상 대부업체	1.5%	1.8%	2.1%	2.2%	2.2%	1.6%	2.9%	3.4%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54.1%	53.6%	53.7%	52.3%	53.0%	49.0%	42.9%	40.4%
어음할인업체	0.7%	0.6%	0.6%	0.8%	0.7%	0.9%	0.9%	1.0%
신용카드회사	1.7%	1.7%	1.7%	1.8%	1.9%	2.4%	4.0%	2.9%
신용판매회사	8.0%	8.7%	8.8%	9.2%	9.1%	11.0%	11.4%	13.9%
유통/제조업 관련회사	1.4%	1.2%	1.4%	1.8%	1.8%	2.2%	2.0%	1.5%
건설/부동산업체	7.0%	6.9%	6.3%	5.3%	3.9%	4.4%	5.0%	4.0%
전당포	0.2%	0.2%	0.2%	0.2%	0.2%	0.3%	0.3%	0.3%
리스회사	18.5%	18.3%	16.9%	16.0%	14.6%	10.8%	9.6%	7.9%
일수대부업체	0.0%	0.1%	0.1%	0.1%	0.1%	0.1%	0.1%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27.2%	25.7%	25.0%	26.9%	28.4%	24.9%	21.6%	19.2%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0.7%	0.5%	0.5%	0.4%	0.3%	0.6%	0.4%	0.5%
소비자 대상 주택 대상 대부업체	2.8%	1.7%	1.5%	1.3%	2.2%	1.6%	1.7%	1.6%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40.8%	47.5%	48.7%	44.6%	38.8%	40.7%	43.0%	44.5%
어음할인업체	0.8%	0.6%	0.6%	0.6%	0.5%	0.5%	0.4%	0.3%
신용카드회사	3.7%	3.6%	3.5%	3.4%	5.6%	5.8%	6.3%	6.5%
신용판매회사	11.8%	10.2%	10.9%	12.2%	12.9%	13.1%	13.4%	14.4%
유통/제조업 관련회사	1.3%	1.2%	1.4%	1.6%	1.6%	1.5%	1.0%	1.1%
건설/부동산업체	2.8%	2.0%	1.6%	1.3%	1.3%	1.4%	1.4%	1.3%
전당포	0.2%	0.1%	0.1%	0.1%	0.0%	0.1%	0.0%	0.0%
리스회사	7.6%	6.9%	6.1%	7.5%	8.1%	9.7%	10.7%	10.4%
일수대부업체	0.2%	0.1%	0.1%	0.2%	0.2%	0.1%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1998년은 미집계

(주2) 매년 3월말의 수치

(출처: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도표 1-5② 업태별 대출잔고의 추이(1993년~2009년)



(주 1) 1998년은 미집계.

(주 2) 매년 3월말 수치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도표 1-6 <참고> 대부업체의 업태 분류

업태	정의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가 총 대출잔고의 50%이상이며,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 중 무담보(주택대상 제외) 대출잔고가 가장 많으면서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가 총 대출잔고의 50%이상이며,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 중 유담보(주택대상 제외) 대출잔고가 가장 많으면서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비자대상 주택 대상 대부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가 총 대출잔고의 50%이상이며,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 중 주택 대상 대출잔고가 가장 많으면서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가 총 대출잔고의 50%이상이면서 ⑤~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⑤ 어음할인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가 총 대출잔고의 50%이상이며,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 중 어음할인잔고가 50%이상(일본사업자금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25%이상)이면서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신용카드회사	일본신용카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⑦~⑫와 중복될 경우 ⑥이 우선된다)
⑦ 신용판매회사	할부구입 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⑫와 중복될 경우에는 ⑦이 우선된다)
⑧ 유통·제조업체 관련 회사	전기기계기구 계열의 비영리법인 및 자동차 관계의 비영리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또는 일본백화점협회, 전국 월부백화점조합 연합회, 일본체인점협회, 일본상점연맹, 일본전문점회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⑨, ⑪과 중복될 경우는 ⑧이 우선된다)
⑨ 건설 부동산업체	건설·부동산 관계의 비영리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⑪과 중복될 경우에는 ⑨가 우선된다)
⑩ 전당포	전당포 허가를 받은 업체 (⑧, ⑨, ⑪과 중복될 경우 ⑩이 우선된다)
⑪ 리스회사	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⑫ 일수대부업체	일수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⑪과 중복될 경우 ⑫가 우선된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3) 업태별 대출금리

도표 1-7 업태별 대출금리(2009년 3월말)

업태	업체수 (*2)	소비자대상 대출				사업자대상 대출				합계		
		잔고 (억엔) (*3)	구성비	금리(%) (*4)	소비자대상 대출 중 무담보잔고 (억엔)(*3)	금리(%) (*4)	잔고 (억엔) (*3)	구성비	금리(%) (*4)	잔고 (억엔) (*3)	구성비	금리(%) (*4)
소비자대상 무담보대부업체	1,665	71,454	45.4%	20.33	65,865	20.90	1,398	0.6%	13.32	72,853	19.2%	20.19
이 중 대기업(*1)	15	65,614	41.7%	20.14	60,162	20.73	870	0.4%	13.86	66,485	17.6%	20.05
이 중 대기업 외	1,650	5,839	3.7%	22.46	5,702	22.66	528	0.2%	12.45	6,368	1.7%	21.63
소비자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314	1,699	1.1%	6.84	72	20.27	233	0.1%	7.13	1,933	0.5%	6.88
소비자대상 주택대상대부업체	78	6,069	3.9%	3.55	63	4.22	89	0.0%	3.53	6,158	1.6%	3.55
사업자대상 대부업체	1,184	5,467	3.5%	6.95	1,909	12.38	163,078	73.7%	2.33	168,546	44.5%	2.48
어음환입업체	206	10	0.0%	12.69	6	14.34	950	0.4%	8.81	961	0.3%	8.85
신용카드회사	154	20,173	12.8%	16.62	19,588	17.03	4,462	2.0%	1.62	24,635	6.5%	13.90
신용판매회사	112	45,402	28.9%	17.47	44,307	17.81	9,031	4.1%	2.40	54,434	14.4%	14.97
유통/제조업체 관련회사	60	630	0.4%	17.38	617	17.49	3,687	1.7%	2.49	4,317	1.1%	4.66
건설/부동산업체	202	531	0.3%	9.54	22	14.68	4,431	2.0%	4.69	4,962	1.3%	5.21
전당포	65	38	0.0%	22.23	12	23.70	94	0.0%	11.22	132	0.0%	14.43
리스회사	96	5,802	3.7%	3.14	234	3.47	33,632	15.2%	3.25	39,435	10.4%	3.24
임수대부업체	157	-	-	-	-	-	95	0.0%	52.21	95	0.0%	52.21
합계	4,293	157,281	100.0%	17.09	132,699	19.12	221,186	100.0%	2.64	378,467	100.0%	8.64

(주1) 대부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중 ‘대기업’이란 대출잔고가 500억 엔이 넘는 업체를 말한다.

(*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 제출업체(5,113) 중 대출잔고가 없는 업체(820)를 제외한 수이다.

(*3) 대출잔고는 억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4) ‘금리’는 ‘평균약정금리’를 말한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4) 업태별 대출건수 및 1건당 평균 대출잔고

도표 1-8 업태별 대출건수 및 1건당 평균 대출잔고(2009년 3월말)

업태	업체수 (※2)	소비자대상 대출						사업자대상 대출			합계	
		건수 (건)(※3)	잔고 (억엔) (※4)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이 중 무담보 건수(건) (※3)	이 중 무담보 잔고(억엔) (※4)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건수 (건)(※3)	잔고 (억엔) (※4)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건수 (건)(※3)	잔고 (억엔)(※4)
소비자대상 무담보대부업체	1,665	13,489,839	71,454	530	13,352,408	65,865	493	67,388	1,399	2,075	13,557,227	72,853
대기업(※1)	15	10,708,375	65,614	613	10,579,621	60,162	569	35,072	870	2,481	10,743,447	66,485
대기업 외	1,650	2,781,464	5,839	210	2,772,787	5,702	206	32,316	528	1,634	2,813,780	6,368
소비자대상 유담보대부업체	314	63,982	1,699	2,655	28,926	72	249	3,023	233	7,708	67,005	1,933
소비자대상 주택대상대부업체	78	66,171	6,069	9,172	5,801	63	1,086	250	89	35,600	66,421	6,158
사업자대상 대부업체	1,184	603,388	5,467	906	580,031	1,909	329	241,825	163,078	67,436	845,213	168,546
어음환인업체	206	2,077	10	481	1,778	6	337	39,764	950	2,389	41,841	961
신용카드회사	154	15,449,936	20,173	131	15,441,610	19,588	127	11,208	4,462	39,811	15,461,144	24,635
신용판매회사	112	33,522,366	45,402	135	33,507,534	44,307	132	23,004	9,031	39,258	33,545,370	54,434
유통/제조업체 관련회사	60	242,037	630	260	241,392	617	256	1,809	3,687	203,814	243,846	4,317
건설/부동산업체	202	11,198	531	4,742	4,686	22	469	7,956	4,431	55,694	19,154	4,962
전달포	65	11,547	38	329	4,840	12	248	1,477	94	6,364	13,024	132
리스회사	96	123,695	5,802	4,691	81,741	234	286	22,350	33,632	150,479	146,045	39,435
일수대부업체	157	-	-	-	-	-	-	25,810	95	368	25,810	95
합계	4,293	63,586,236	157,281	247	63,250,747	132,699	210	445,864	221,186	49,608	64,032,100	378,467

(주1) 대부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중 ‘대기업’이란 대출잔고가 500억 엔을 넘는 업체를 말한다.

(※2) 대부업체 수는 업무보고서 제출업체(5,113) 중 대출잔고가 없는 업체(820)를 제외한 수이다.

(※3) ‘건수’는 각 업체 분을 단순히 합계한 수이다. 건수를 집계할 경우 각 업체의 계약형태나 채권관리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대출잔고 등에 대해서 업태간의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다.

(※4) 대출잔고는 억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5) 대출잔고 규모별 대출잔고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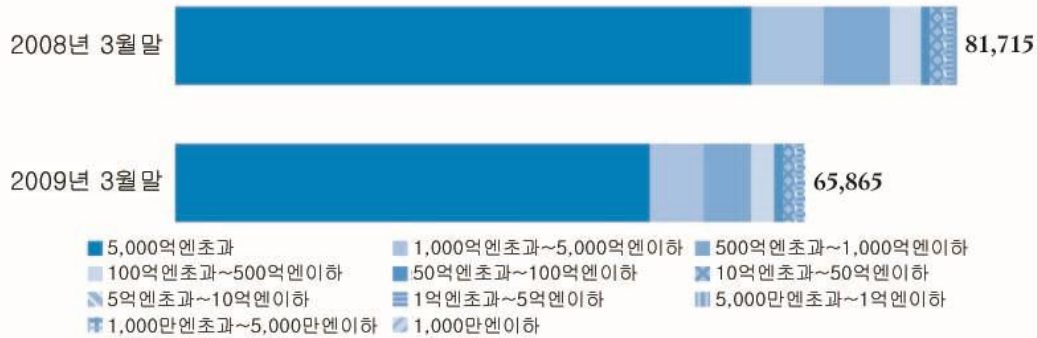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2008년 3월말부터 2009년 3월말까지 1년간의 대출잔고 총액이 약 1조 5,900억 엔 감소했다.

도표 1-9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부업체의 대출잔고(대출잔고 규모별)

대출잔고규모	2008년 3월말							2009년 3월말						
	해당업체수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잔고					해당업체수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잔고				
	구성비 (%)	잔고 (억엔) (*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구성비 (%)	잔고 (억엔) (*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5,000억엔 초과	6	0.3%	60,225	73.7%	10,332,129	64.8%	583	6	0.4%	49,579	75.3%	8,849,447	66.3%	560
1,0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	0.2%	7,565	9.3%	1,178,345	7.4%	642	3	0.2%	5,660	8.6%	974,452	7.3%	581
500억엔초과~1,000억엔이하	9	0.4%	6,911	8.5%	1,557,681	9.8%	444	6	0.4%	4,922	7.5%	755,722	5.7%	651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6	0.7%	3,255	4.0%	1,471,463	9.2%	221	11	0.7%	2,437	3.7%	1,442,836	10.8%	169
50억엔초과~100억엔이하	13	0.6%	940	1.2%	317,698	2.0%	296	13	0.8%	948	1.4%	378,829	2.8%	250
10억엔초과~50억엔이하	57	2.4%	1,374	1.7%	434,230	2.7%	316	53	3.2%	1,166	1.8%	425,743	3.2%	274
5억엔초과~10억엔이하	46	1.9%	334	0.4%	148,569	0.9%	225	40	2.4%	284	0.4%	122,087	0.9%	233
1억엔초과~5억엔이하	293	12.4%	677	0.8%	290,747	1.8%	233	242	14.5%	550	0.8%	245,397	1.8%	224
5,000만엔초과~1억엔이하	253	10.7%	181	0.2%	73,931	0.5%	245	174	10.5%	123	0.2%	53,318	0.4%	231
1,000만엔초과~5,000만엔이하	849	36.0%	211	0.3%	105,448	0.7%	200	655	39.3%	169	0.3%	88,260	0.7%	191
1,000만엔이하	814	34.5%	37	0.0%	25,771	0.2%	144	462	27.7%	22	0.0%	16,317	0.1%	135
합계	2,360	100.0%	81,715	100.0%	15,936,012	100.0%	513	1,665	100.0%	65,865	100.0%	13,352,408	100.0%	493

■ 대출잔고 규모별 대출잔고(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단위:억엔)



(주 1) 상기의 표는 각 업체의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잔고를 규모별로 분류한 표이다.

(주 2) 대부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대출잔고는 억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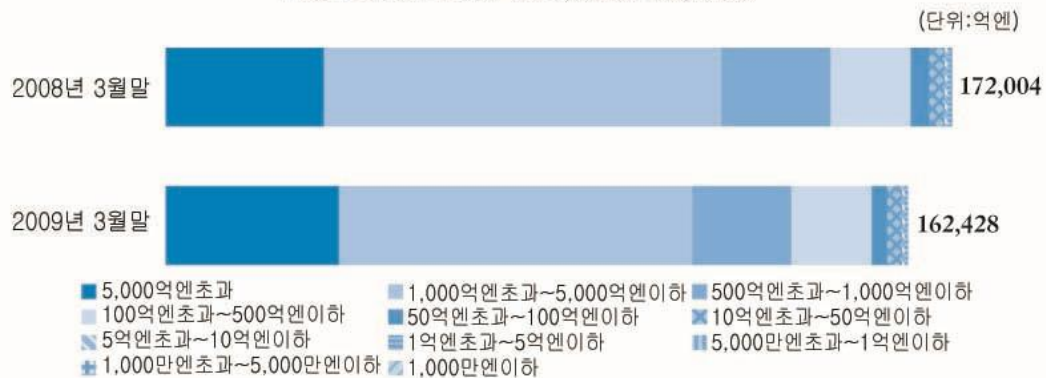
② 사업자 대상 대부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 2008년 3월말부터 2009년 3월말까지 1년간의 대출잔고 총액이 약 9,600억엔 감소했다.

도표 1-10 사업자대상 대부업체의 대출잔고(대출잔고 규모별)

대출잔고규모	2008년 3월말							2009년 3월말						
	해당업체수		사업자대상 대출잔고					해당업체수		사업자대상 대출잔고				
	구성비 (%)	잔고 (억엔) (*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구성비 (%)	잔고 (억엔) (*1)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 대출잔고 (천엔)	
5,000억엔초과	5	0.3%	34,550	20.1%	37,671	9.5%	91.7	5	0.4%	37,854	23.3%	31,110	13.5%	121.7
1,0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0	2.8%	86,998	50.6%	102,195	25.7%	85.1	37	3.1%	77,361	47.6%	7,423	3.2%	1042.2
500억엔초과~1,000억엔이하	35	2.4%	23,852	13.9%	151,876	38.1%	15.7	32	2.7%	21,552	13.3%	48,305	21.0%	44.6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77	5.3%	17,498	10.2%	57,305	14.4%	30.5	76	6.4%	17,665	10.9%	100,112	43.6%	17.6
50억엔초과~100억엔이하	55	3.8%	4,028	2.3%	8,901	2.2%	45.3	46	3.9%	3,298	2.0%	4,382	1.9%	75.3
10억엔초과~50억엔이하	144	10.0%	3,426	2.0%	16,183	4.1%	21.2	138	11.7%	3,281	2.0%	11,896	5.2%	27.6
5억엔초과~10억엔이하	103	7.1%	752	0.4%	3,421	0.9%	22.0	93	7.9%	679	0.4%	7,920	3.4%	8.6
1억엔초과~5억엔이하	284	19.7%	676	0.4%	11,016	2.8%	6.1	235	19.8%	550	0.3%	9,059	3.9%	6.1
5,000만엔초과~1억엔이하	170	11.8%	125	0.1%	4,033	1.0%	3.1	152	12.8%	110	0.1%	4,962	2.2%	2.2
1,000만엔초과~5,000만엔이하	322	22.3%	85	0.0%	4,406	1.1%	1.9	251	21.2%	67	0.0%	3,733	1.6%	1.8
1,000만엔이하	207	14.4%	9	0.0%	1,243	0.3%	0.7	119	10.1%	6	0.0%	873	0.4%	0.7
합계	1,442	100.0%	172,004	100.0%	398,250	100.0%	43.2	1,184	100.0%	162,428	100.0%	229,775	100.0%	70.7

■ 대출잔고 규모별 대출잔고(사업자 대상 대출)



(주 1) 상기 표 외의 대출로 어음할인이 약 649억 엔 있다.

(주 2) 상기 표는 각 업체의 사업자대상 무담보 대출잔고를 규모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 3) 대부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대출잔고는 억엔 미만을 생략하였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6) 민원, 상담·조회 건수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의 경우, 민원건수가 33.6%(4,411건) 감소했으며, 상담·조회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표 1-11 2007년 4월 이후 민원 등의 건수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민원 등의 접수건수		14,864	11,841	11,888	11,042	49,635	11,615	11,083	11,486	10,744	44,928
예외민원	이 중 무등록업체와 관련된 건수	4,141	3,683	3,671	3,447	14,942	4,107	3,690	3,449	2,997	14,243
	추심행위	650	462	567	381	2,060	378	431	691	350	1,850
	계약내용	194	196	214	119	723	154	163	185	120	622
	금리	411	399	297	246	1,353	203	155	154	124	636
	연금담보	13	16	9	22	60	5	8	6	22	41
	장부의 공개	1,256	1,101	827	820	4,004	774	552	481	586	2,393
	과잉대출	22	11	16	4	53	8	8	6	2	24
	행정당국사칭, 등록업체사칭	67	54	101	182	404	151	129	147	74	501
	보증계약	41	26	31	29	127	38	47	18	17	120
	광고 /권유(사칭 이외)	88	86	194	103	471	69	93	58	34	254
	기타	1,259	914	768	926	3,867	656	540	520	554	2,270
	민원 합계		4,001	3,265	3,024	2,832	13,122	2,436	2,126	2,266	1,883
상담·조회 내용	채무정리 등	2,404	1,809	1,875	1,547	7,635	1,540	1,551	1,625	1,423	6,139
	금리	206	121	123	142	592	187	165	209	153	714
	상담처	324	207	279	290	1,100	205	193	263	289	950
	등록확인(무등록 가능성 있음)	2,440	2,188	2,482	2,397	9,507	2,922	2,983	3,088	2,979	11,972
	제도개정요망	65	21	47	15	148	28	19	14	26	87
	법령해석 등	410	234	586	508	1,738	307	325	365	390	1,387
	기타	5,014	3,996	3,472	3,311	15,793	3,990	3,721	3,656	3,601	14,968
상담/조회 합계		10,863	8,576	8,864	8,210	36,513	9,179	8,957	9,220	8,861	36,217

(주 1) 2006년 7월부터 법령위반·부적절한 행위 등을 ‘민원’으로, 그 외를 ‘상담·조회’로 분류했다.

(출처 : 금융청 대부업 관련 통계 자료집)

2.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1) 협회원 수의 추이

협회가 설립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의 협회원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협회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가입률(등록업체 가운데 협회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도표 1-12 협회원 수와 가입률의 추이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2) 협회원의 구성

협회원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형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업태별 협회원의 구성

가입된 회원을 12개 업태로 분류할 경우 대부업체 수 및 대출잔고는 다음과 같다.

도표 1-13 업태별 대부업체 수 및 대출잔고

업태명	대부업체수(*1)		대출잔고(*2)	
	(사)	(%)	(백만엔)	(%)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부업체	1,048	44.6%	7,562,471	37.7%
소비자대상 유담보 대부업체	212	9.0%	164,756	0.8%
소비자대상 주택대상 대부업체	39	1.7%	316,859	1.6%
사업자대상 대부업체	535	22.8%	2,440,717	12.1%
어음할인업체	78	3.3%	64,297	0.3%
신용카드회사	170	7.2%	3,384,369	16.8%
신용판매회사	54	2.3%	3,425,420	17.0%
유통/제조업 관련 신용카드회사	33	1.4%	1,644,047	8.2%
건설/부동산업체	64	2.7%	99,203	0.5%
전당포	4	0.2%	1,512	0.0%
리스회사	45	1.9%	1,005,198	5.0%
알수대부업체	69	2.9%	7,363	0.0%
합계	2,351	100.0%	20,116,212	100.0%

(*1) 대부업체 수는 2009년 12월말 시점 수치.

(*2) 대출잔고는 2007년도 말 시점 수치.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② 규모별 협회원의 구성

가입된 회원을 규모별(자본금 및 대출잔고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4 자본금 규모별 협회원의 현황

	대부업체수(*1)		대출잔고(*2)	
	(사)	(%)	(백만엔)	(%)
개인	786	33.4%	46,317	0.2%
법인	1,565	66.6%	20,069,895	99.8%
2,000만엔미만	722	30.8%	434,941	2.2%
5,000만엔미만	344	14.6%	404,028	2.0%
5,000만엔이상	499	21.2%	19,230,926	95.6%
합계	2,351	100.0%	20,116,212	100.0%

(*1) 대부업체 수는 2009년 12월말 시점 수치.

(*2) 대출잔고는 2007년도 말 시점 수치.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도표 1-15 대출잔고규모별 협회원의 현황

	대부업체수(*1)		대출잔고(*2)	
	(사)	(%)	(백만엔)	(%)
1,000만엔미만	396	16.8%	719	0.0%
1억엔미만	837	35.6%	35,958	0.2%
500억엔미만	1,062	45.2%	2,655,709	13.2%
5,000억엔미만	47	2.0%	8,310,866	41.3%
5,000억엔이상	9	0.4%	9,112,960	45.3%
합계	2,351	100.0%	20,116,212	100.0%

(*1) 대부업체 수는 2009년 12월말 시점 수치.

(*2) 대출잔고는 2007년도 말 시점 수치.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3) 대출잔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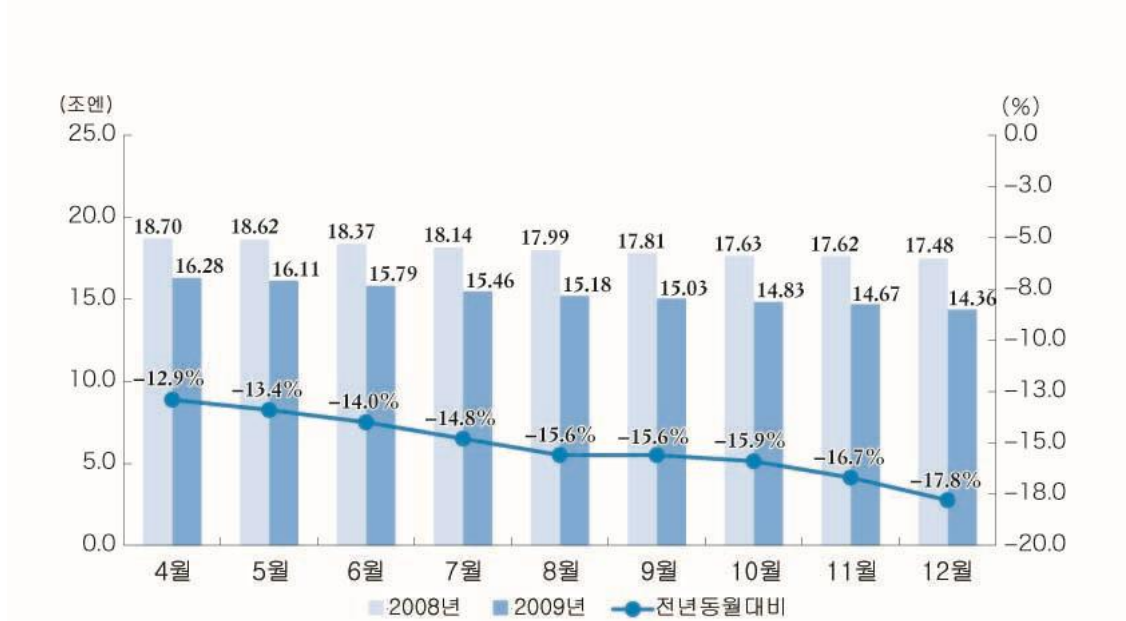
① 대출잔고의 추이(전체)

2008년과 2009년의 대출잔고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5.2%^(*)가 감소했으며, 2009년 4월 시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2.9%가 감소한 데 이어 12월 시점의 경우는 전년동월대비 17.8%까지 감소하는 등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표 1-16 월말 대출잔고의 추이

(단위: 백만 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18,703,139	18,621,856	18,372,675	18,145,392	17,992,023	17,814,936	17,638,315	17,623,276	17,481,201
2009년	16,287,582	16,118,727	15,798,199	15,463,451	15,189,021	15,037,861	14,836,483	14,676,608	14,366,963
전년동월대비	-12.9%	-13.4%	-14.0%	-14.8%	-15.6%	-15.6%	-15.9%	-16.7%	-17.8%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② 업태별 대출잔고의 추이

업태별 대출잔고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비자금융업 업태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출잔고가 약 2조 2,800억 엔 감소했으며, 전년동월의 대출잔고와 비교해도 평균 약 1조 4,600억 엔이 감소하는 등 세 업태 중 특히 대출잔고의 감소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17 업태별 월말 대출잔고의 추이

(단위: 백만엔)

	200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소비자금융업태	8,085,763	8,020,615	7,916,809	7,821,257	7,752,240	7,672,208	7,556,004	7,540,771	7,325,266
사업자금융업태	1,966,104	1,919,010	1,841,840	1,798,502	1,749,610	1,691,773	1,673,576	1,659,880	1,571,287
신용카드업태 등	8,651,272	8,682,232	8,614,026	8,525,633	8,490,173	8,450,955	8,408,735	8,422,625	8,584,648
전체	18,703,139	18,621,856	18,372,675	18,145,392	17,992,023	17,814,936	17,638,315	17,623,276	17,481,201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소비자금융업태	6,715,919	6,617,153	6,494,787	6,378,582	6,280,000	6,184,979	6,092,671	5,978,454	5,800,779
사업자금융업태	1,569,769	1,533,878	1,443,402	1,405,551	1,376,393	1,387,725	1,368,892	1,358,045	1,325,211
신용카드업태 등	8,001,894	7,967,696	7,860,009	7,679,318	7,532,628	7,465,157	7,374,920	7,340,108	7,240,973
전체	16,287,582	16,118,727	15,798,199	15,463,451	15,189,021	15,037,861	14,836,483	14,676,608	14,366,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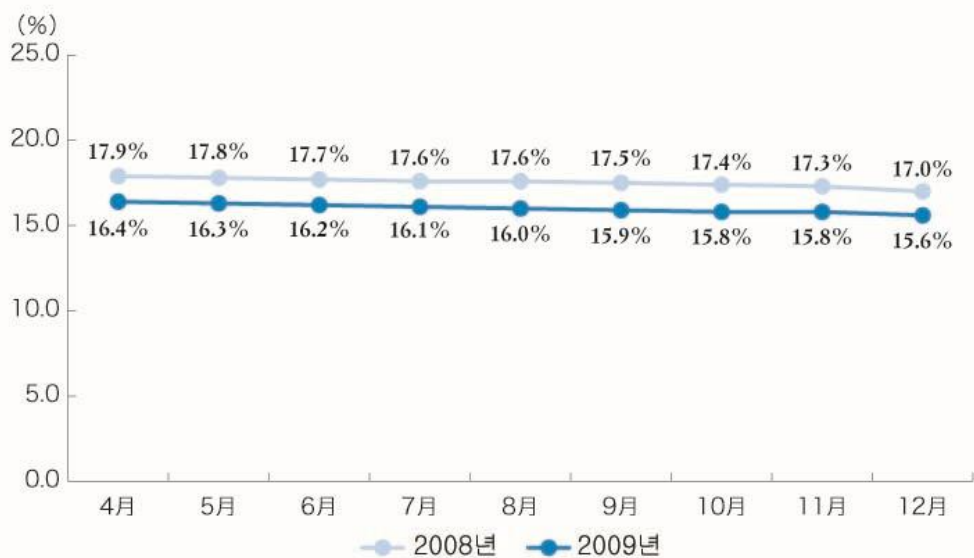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③ 월말 평균 약정금리의 추이

2009년 4월 이후 월말 평균 약정금리는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같은 해 12월말 시점의 경우 15.6%로 나타났다.

도표 1-18 월말 평균 약정금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상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17.9%	17.8%	17.7%	17.6%	17.6%	17.5%	17.4%	17.3%	17.0%
2009년	16.4%	16.3%	16.2%	16.1%	16.0%	15.9%	15.8%	15.8%	15.6%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④ 대출종별 대출 잔고의 최근 2년간 추이

2008년과 2009년의 대출종별 대출잔고를 비교해 보면, 소비자 대상 대출잔고는 평균 15.1%(*1), 사업자 대상 대출잔고는 평균 15.5%(*1)가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를 살펴봐도 2009년 4월 시점의 경우 소비자 대상 대출이 13.2%, 사업자 대상 대출이 11.7% 감소한 데 이어 12월 시점의 경우 소비자 대상 대출이 16.8%, 사업자 대상 대출이 21.5%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19 소비자 대상 대출의 월말 대출잔고 추이

(단위: 백만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14,867,632	14,779,476	14,631,469	14,477,896	14,368,773	14,290,385	14,160,483	14,151,618	13,796,328
2009년	12,900,958	12,777,765	12,600,011	12,352,822	12,170,727	12,034,262	11,901,071	11,774,709	11,474,148
전년동월대비	-13.2%	-13.5%	-13.9%	-14.7%	-15.3%	-15.8%	-16.0%	-16.8%	-16.8%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도표 1-20 사업자 대상 대출의 월말 대출잔고 추이

(단위: 백만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3,835,507	3,842,380	3,741,206	3,667,496	3,623,250	3,524,551	3,477,832	3,471,658	3,684,873
2009년	3,386,623	3,340,962	3,198,187	3,110,629	3,018,294	3,003,598	2,935,412	2,901,898	2,892,815
전년동월대비	-11.7%	-13.0%	-14.5%	-15.2%	-16.7%	-14.8%	-15.6%	-16.4%	-21.5%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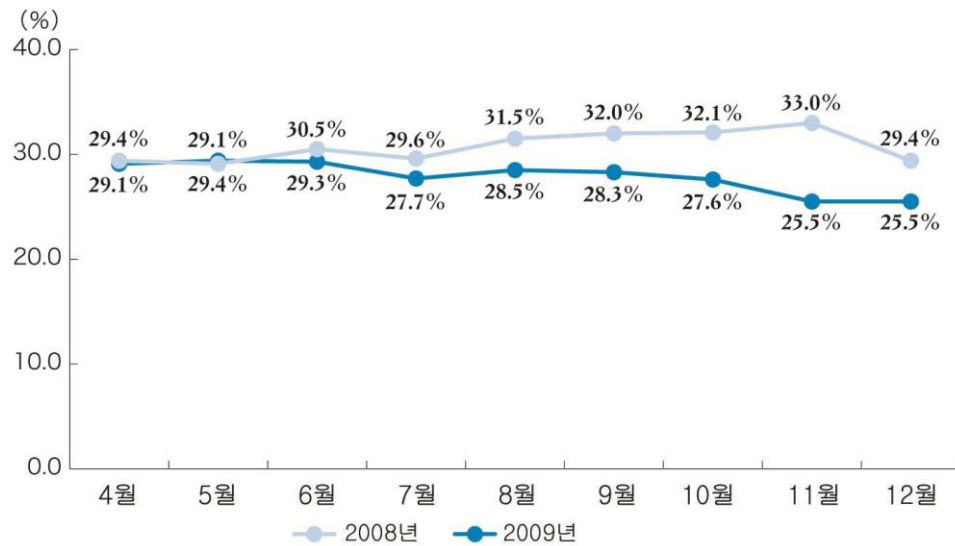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4) 성악률의 추이

2009년 4월 이후, 성악률은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같은 해 12월말 시점의 경우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21 성악률(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29.4%	29.1%	30.5%	29.6%	31.5%	32.0%	32.1%	33.0%	29.4%
2009년	29.1%	29.4%	29.3%	27.7%	28.5%	28.3%	27.6%	25.5%	25.5%



(주 1) 소비자금융업체 중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성악률(당월 계약수/당월 신청수)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5) 대출종별 월간 계약 수

① 소비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수의 추이

2008년과 2009년의 소비자대상 대출 월간계약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 8.9%^(*)의 계약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를 보더라도 2009년 4월 시점에서 작년보다 계약건수는 많았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2월 시점에서는 22.1%가 감소했다.

도표 1-22 소비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수의 추이

(단위: 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1,194,227	1,296,757	1,233,787	1,192,336	1,062,254	1,160,305	1,278,019	1,171,499	1,207,360
2009년	1,295,718	1,232,030	1,197,328	1,104,792	1,028,845	1,055,509	1,019,015	949,331	940,767
전년동월대비	8.5%	-5.0%	-3.0%	-7.3%	-3.1%	-9.0%	-20.3%	-19.0%	-22.1%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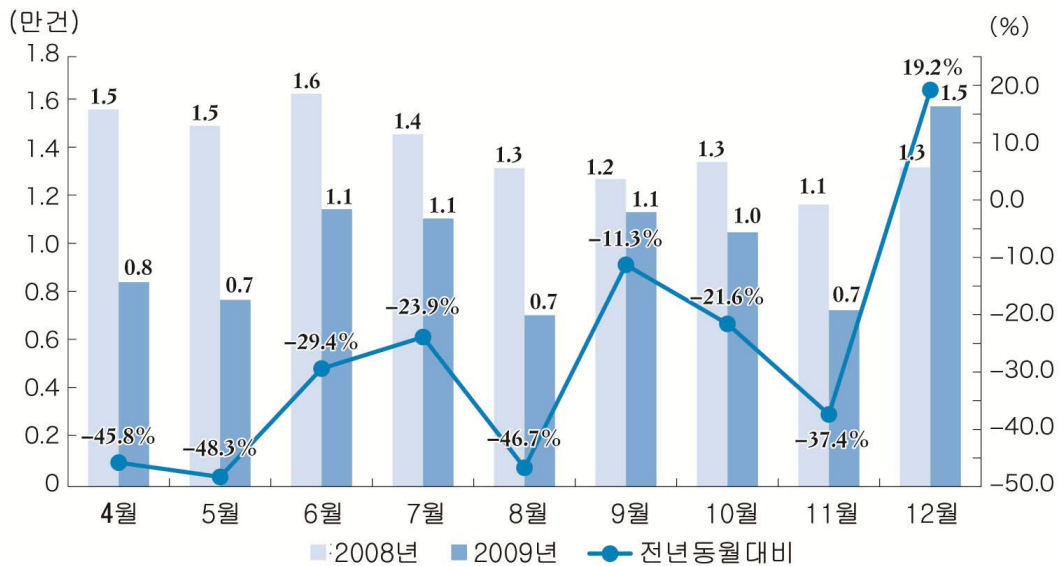
② 사업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수의 추이

2008년과 2009년의 사업자대상 대출 월간 계약 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 27.2%^(*)의 계약 수가 감소했다.

도표 1-23 사업자 대상 대출 월간 계약 수의 추이

(단위: 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15,787	15,106	16,446	14,754	13,335	12,865	13,591	11,809	13,363
2009년	8,558	7,817	11,617	11,224	7,111	11,409	10,649	7,390	15,924
전년동월대비	-45.8%	-48.3%	-29.4%	-23.9%	-46.7%	-11.3%	-21.6%	-37.4%	19.2%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6) 점포 수의 추이

① 유인·무인 점포 수의 추이

2008년과 2009년의 점포 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평균 19.2%^(*)의 점포 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의 점포 수를 점포 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유인 점포 수의 경우 평균 24.8%^(*), 무인 점포 수의 경우 평균 17.8%^(*)가 감소했다.

도표 1-24 점포 수의 추이(유인 · 무인점포)

(단위: 점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유인점포수	2,647	2,649	2,580	2,522	2,511	2,454	2,410	2,371	2,352
	무인점포수	10,570	10,531	10,482	10,187	9,678	9,552	9,378	9,087	8,962
	합계	13,217	13,180	13,062	12,709	12,189	12,006	11,788	11,458	11,314
2009년	유인점포수	1,874	1,971	1,911	1,896	1,890	1,849	1,850	1,882	1,783
	무인점포수	8,375	8,266	8,235	8,208	8,144	8,071	7,904	7,677	7,654
	합계	10,249	10,237	10,146	10,104	10,034	9,920	9,754	9,559	9,437
전년동월대비	유인점포수	-29.2%	-25.6%	-25.9%	-24.8%	-24.7%	-24.7%	-23.2%	-20.6%	-24.2%
	무인점포수	-20.8%	-21.5%	-21.4%	-19.4%	-15.9%	-15.5%	-15.7%	-15.5%	-14.6%
	합계	-22.5%	-22.3%	-22.3%	-20.5%	-17.7%	-17.4%	-17.3%	-16.6%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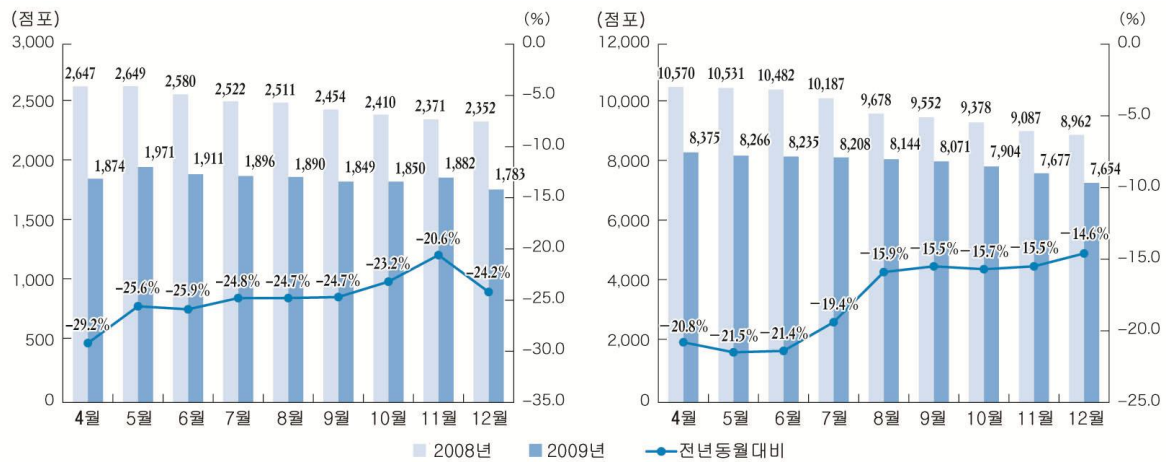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도표 1-25 유인 · 무인점포 수의 추이

■ 유인 점포 수의 추이

■ 무인 점포 수의 추이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1)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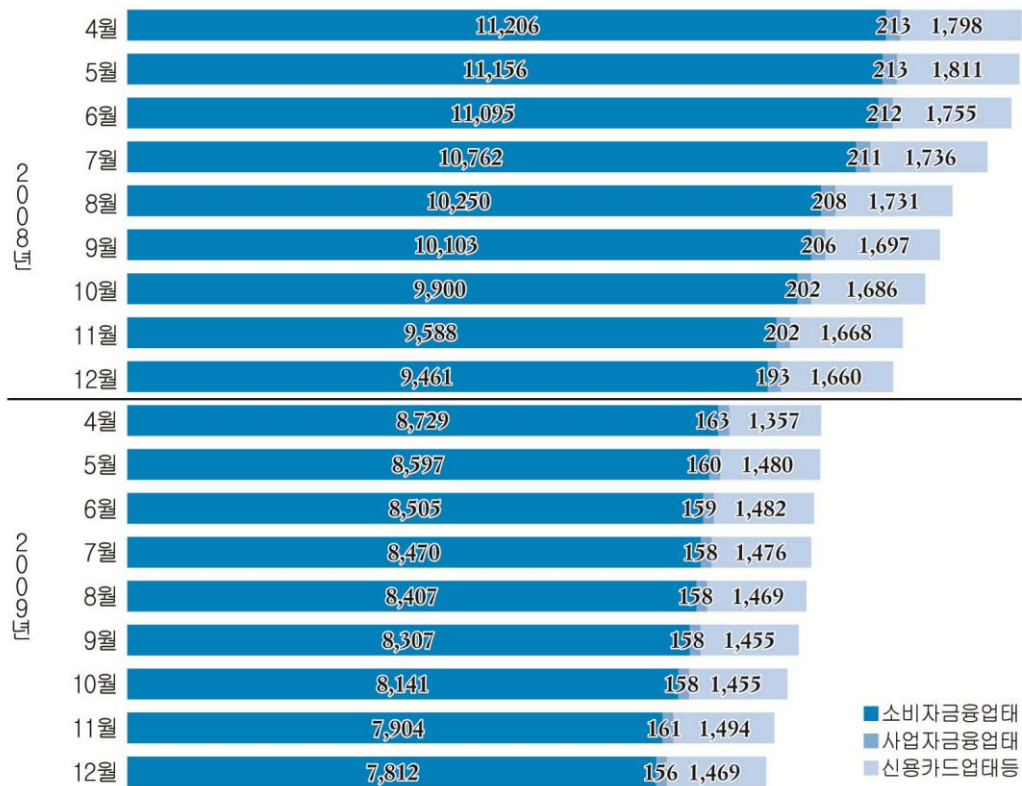
② 업태별 점포 수

2008년과 2009년의 점포 수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점포 수가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금융업태의 경우 평균 23.0%^(*)가 감소해 가장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26 업태별 점포 수 추이(유인·무인점포)

(단위: 점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소비자금융업태	11,206	11,156	11,095	10,762	10,250	10,103	9,900	9,588	9,461
	사업자금융업태	213	213	212	211	208	206	202	202	193
	신용카드업태등	1,798	1,811	1,755	1,736	1,731	1,697	1,686	1,668	1,660
2009년	소비자금융업태	8,729	8,597	8,505	8,470	8,407	8,307	8,141	7,904	7,812
	사업자금융업태	163	160	159	158	158	158	158	161	156
	신용카드업태등	1,357	1,480	1,482	1,476	1,469	1,455	1,455	1,494	1,469
전년대비증감률	소비자금융업태	-22.1%	-22.9%	-23.3%	-21.3%	-18.0%	-17.8%	-17.8%	-17.6%	-17.4%
	사업자금융업태	-23.5%	-24.9%	-25.0%	-25.1%	-24.0%	-23.3%	-21.8%	-20.3%	-19.2%
	신용카드업태등	-24.5%	-18.3%	-15.6%	-15.0%	-15.1%	-14.3%	-13.7%	-10.4%	-11.5%



(*)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를 가산하여 9(4월~12월)로 나눈 값

(출처: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7) 보증잔고의 추이

2008년과 2009년의 월말 보증잔고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표 1-27 월말보증잔고의 추이

(단위: 백만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69사	68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67사
2008년	4,419,675	4,414,081	4,427,861	4,412,969	4,416,630	4,425,496	4,452,014	4,460,457	4,449,058
2009년	4,495,611	4,428,098	4,422,061	4,403,595	4,401,338	4,593,230	4,604,248	4,607,561	4,592,031
전년동월대비	1.7%	0.3%	-0.1%	-0.2%	-0.3%	3.8%	3.4%	3.3%	3.2%



(주 1) 2009년 9월 이후의 월말 보증잔고가 증가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무담보 카드론의 신용보증 사업을 승계한 점이 원인이다.

(출처 : 일본대부업협회 월차 통계자료)

제2장 대부업계를 둘러싼 환경 및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1. 대부업계를 둘러싼 환경

1) 대부업계 연혁

‘금전의 대출 및 금전대차의 매개(어음할인, 매도담보, 기타 이에 준하는 금전의 교부 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금전수수의 매체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업태’라고 정의된 대부업(대부업법 제2조)은 1955년대 오사카에서 ‘샐러리맨 신용대출’ 및 ‘단지금융(소비자금융)’ 등의 명칭으로 ‘무담보·무보증’, ‘즉시융자’라는 명목으로 탄생했다. 대부업 초기의 이용자는 일부 상장회사의 샐러리맨이었으며, 일본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으로 인해 대부업계 시장도 성장하였다.

1975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자본의 논뱅크(비은행 금융기관)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기 시작하여 시장경쟁이 격화되었다.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일부 대부업체의 ‘과잉대출과 고금리, 가혹한 추심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매스컴에 의한 ‘샐러리맨 금융 비판 캠페인’이 실시되는 등 업계의 사회적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당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한 규제나 추심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1979년 5월, 각 당(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공산당)이 공동으로 대부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83년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부업 규제법)’ 및 ‘출자의 방법,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개정 출자법)’이 성립됐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는 과잉대출 및 추심행위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대출 상한금리도 연 109.5%에서 연 73.0%로 인하되어 많은 업체가 경영위기에 처해, 1983년에는 약 23만사였던 대부업체가 거의 1년 만에 약 3만사로 격감했다.

이러한 대부업체에게 전환점이 된 것이 1993년에 도입된 자동계약기이다. 이 자동계약기의 도입으로 신청 채널이 증가함으로써 편리성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1995년부터 텔레비전 광고가 심야시간대 이외에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추심행위 및 과잉대출, 고금리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2000년 6월, 출자법에 규정된 대출 상한금리가 인하됨과 동시에 개인재생수속 및 소비자계약법, 채권관리회수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대부업체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가 제정되었으며, 2003년 7월에는 ‘불법사금융 대책법(대부업규제법 및 출자법의 일부 개정법)’이 성립되었다.

2) 대부업법 개정

① 대부업 규제법의 공포 및 시행

‘대부업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부업 규제법)’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대부업체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절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13일에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1983년 법률 제32호).

② 2003년 개정

당시 사회문제화되어 있던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의 단속을 목적으로 2003년 8월 1일에 규제를 강화한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부업 규제법) 및 출자 방법,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3년 법률 제136호, 통칭 ‘불법사금융 대책법’)이 성립되었으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③ 2006년 개정

2006년의 개정에는 대해서는

- (1) 상기 ②의 2003년 개정의 부칙에는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간주상환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 (3) 특히 다중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인 것으로 여겨져, 이른바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의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이후, 금융청에서 ‘대부업 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좌장·요시노 나오키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안이 제출되었는데 특례금리의 도입과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6년 4월에 중간정리가 제시되었고 금리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 수준에 맞춰 인하할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이 ‘중간정리’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 후 내각회의가 결정되었고,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을 포함한 내각제안법안(‘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이 2006년 10월 31일에 제165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이른바 개정 대부업법이 가결·성립되었으며 12월 20일에 공포되었다(2006년 법률 제115호).

그리고 개정 대부업법이 성립되면서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출자의 방법,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2007년 11월 7일에 공포되었다.

법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법률안 요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중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대부업이 일본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감안하여 대부업의 등록요건의 강화, 대부업협회 및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와 관련된 제도의 확충을 비롯한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창설과 함께 대부업체에 의한 과잉대출의 규제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간주상환제도의 폐지, 업으로 금전대출을 영위하는 자의 대출 상한금리의 인하, 업

으로 실시하는 과도한 고금리에 대한 처벌의 창설, 이자로 간주되는 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을 실시하기로 한다.’

④ 개정 대부업법 시행 스케줄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4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될 예정이며, 대략적인 시행 스케줄은 도표 2-1과 같다.

그리고 2조 개정의 본체 시행일(2007년 12월 19일)부터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대부업법’으로 개정되었다.



3) 이자 반환 청구의 급증

2006년 1월 13일, 대법원이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주상환 규정)에 관하여 ‘임의금리존(이른바 ‘그레이트 존 금리’)의 이자 지불의 임의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 후 이자 반환 청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22일, 대법원이 과불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거래종료시라고 판단함으로써 이자 반환 청구의 수습이 불투명해지면서 대부업체에서는 이자반환 관련 코스트가 적립되어 수익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 대부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자반환청구 관련 코스트의 증가와 총량규제 및 상한금리의 인하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의 완전시행(2010년 6월까지로 예상되고 있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어 자금을 융통하는 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산이나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부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무국이나 도도부현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수는 4,477사(2009년 12월말 시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20~30%의 페이스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은 개인(소비자)이나 중소기업 사업자 등의 자금수요에 응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대부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대부업체에게 크나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

① 설치 경위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67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시행으로부터 2년 반 이내에 ‘개정 후의 실시상황, 대부업체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후의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거한 금리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2009년 11월 13일에 금융청의 정무삼역(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이 발표).

② 주된 검토 내용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주된 검토내용으로 다음의 5항목을 들고 있다.

- (1) 대부업 이용자의 실태(이용자의 실태, 다중채무자의 상황 등)
- (2) 대부업체의 실태(경영상태, 과불금 반환청구의 실정 등)
- (3) 각국의 대부업 실태
- (4) 개정 대부업법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
- (5) 기타

③ 사무국회의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에는 세 명의 정무관으로 이루어진 ‘사무국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회의에서는 검토재료가 되는 조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참고로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한 내에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④ 사무국회의의 개최상태

사무국회의는 2010년 2월 25일 현재, 제1회(2009년 11월 30일)를 시작으로 제13회(2010

년 2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009년 12월의 제1회부터 제7회 사무국회의까지의 공청회 결과를 ‘중간논점정리’란 명목으로 정리했다.

각 회의의 의제와 공청회 참가자는 도표 2-2와 같다.

도표2-2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 사무국회의의 의제와 공청회 대상

	의제	공청회 대상
제1회 (2009년 11월 30일)	·멤버 소개 ·PT, 사무국회의의 진행방식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 등의 개요에 대해 ·업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일본대부업협회 ·일본소비자금융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2회 (2009년 12월 4일)	·업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일본크레디트협회 ·협동조합연합회 일본전문점회연맹 ·전국은행협회 ·전국크레디트·샐러리맨금융피해자연락협의회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제3회 (2009년 12월 7일)	·업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주일본신용정보기구 ·주CIC ·하마다상공회의소 ·지바현상공회연합회 ·전국NPO뱅크연합회 ·경찰청
제4회 (2009년 12월 8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池尾 和人씨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筒井 義郎씨(오사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5회 (2009년 12월 14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石川 和男씨 (도쿄재단 수석연구원) ·藤井 良広씨 (조치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학연구과) ·大畑 章씨 (도쿄도 산업노동국 금융부 대부업대책과장)
제6회 (2009년 12월 15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飯田 隆雄씨 (삿포로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宇都宮 健児씨(변호사)
제7회 (2009년 12월 21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吉野 直行씨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堂下 浩씨 (도쿄정보대학교 종합정보학부 부교수)
제8회 (2010년 1월 7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小島 茂씨 (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 종합정책국장) ·上田 正씨 (이와테현 소비자신용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小澤 敏郎씨(미야기현 구리하라시 시민생활부장)

제9회 (2010년 1월 14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窪田 順生씨 (논픽션작가) ·浪川 攻씨(저널리스트)
제10회 (2010년 1월 21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有田 宏美씨 (NPO법인 여성자립회 이사장) ·荻原 博子씨 (경제저널리스트) ·高橋 伸子씨(생활경제저널리스트)
제11회 (2010년 1월 28일)	·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금융청 ·영국 포리시스 연구원 아나 애리슨씨
제12회 (2010년 2월 4일)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津田 武寛씨 (시티그룹증권) ·大槻 奈那씨 (UBS증권회사) ·小林 節씨(게이오기주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제13회 (2010년 2월 18일)	·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대부업이용자 (3명)

(출처: 금융청)

2. 개정 대부업법의 내용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정 대부업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될 예정인 개정 내용을 시행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조 개정(2007년 1월 20일 시행)

①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무등록 영업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비롯하여 제49조, 제51조 관계).

② 초 고금리 대출에 대한 벌칙 강화

금전 대출을 실시하는 자가 업으로써 금전의 대출을 실시할 경우,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로 처벌하며, 초과이자를 수령하거나 초과이자를 요구하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처벌한다(출자법 제5조 제3항 관계).

2) 2조 개정 (2007년 12월 19일 시행)

①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부업법’으로 개정하고, 목적 규정의 첫머리에 ‘대부업이 일본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감안하여’를 추가했다(대부업법 제1조 관련).

② 대부업체 등록요건의 강화

대부업체 등록거부요건에 ‘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외에 ‘대부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자’ 등이 추가되었다(대부업법 제6조 관계).

③ 행위 규제의 강화

대부업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 (1) 야간은 물론 주간에 실시되는 집요한 추심행위 등의 규제도 강화(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 (2) 대부업체가 채무자 등의 자살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대부업법 제12조 7)
- (3)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의 취득을 금지. 이자제한법의 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 시, 공정증서의 작성 위탁을 금지(대부업법 제20조).
- (4) 연대보증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대부업법 제16조의 2 제1항, 제17조 제3항).

④ 대부업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

대부업협회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으로 하고, 대부업체의 가입을 확보함과 아울러 각 도도부현에 지부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대부업협회가 설립되었다(대부업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일본대부업협회는 광고의 빈도나 과잉대출 방지 등에 대해 자율규제룰을 제정하고 이를 당국이 인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3) 3조 개정(2009년 6월 18일 시행)

① 재산적 기초요건 인상

대부업체가 대부업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적당한 최저순자산은 지금까지 ‘개인 300만엔, 법인 500만엔’이었는데, 이를 ‘2,000만 엔을 하한으로 하는 정령(개정 정령 제2조)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다(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4항). 그리고 NPO뱅크(지역사회의 복지 및 환경보전활동 등을 실시하는 NPO나 시민단체, 개인 등에게 융자를 하는 소규모 비영리뱅크)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규정되었다(개정부령 제2조).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이어야 한다.
- (2) 순자산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한다.
- (3) 특정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사업(NPO법 17개분야)에 대한 대출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취지를 정관이나 기부행위에 규정해야 한다.
- (4) 잉여금의 배분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을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규정해야 한다.

(5) 사업보고서 등을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②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창설

기존에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할 경우, 임의로 개인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하여 참고로 했었다. 하지만 미가입업체도 많을뿐더러 잔고 등의 경우 개인신용정보기관간에 정보교류가 없어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총 대출잔고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개인신용정보기관의 지정제도가 창설됨과 동시에 지정요건, 임원의 겸직 인가제,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기타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었다(대부업법 제41조의 13 및 14. 임원의 겸직 인가제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41조의 15,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41조의 16).

그리고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업무와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 (1) 겸업의 제한(승인제)(대부업법 제41조의 18)
 - (2) 업무규정의 인가를 받을 의무(대부업법 제41조의 20)
 - (3) 가입대부업체가 신용정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대부업법 제41조의 23)
 - (4) 타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대부업법 제41조의 24)
- 등의 규정이 설치되었다(대부업법 제41조의 17부터 제41조의 26까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는

- (1) 보고징수 및 입회검사(대부업법 제41조의 30)
 - (2) 업무개선명령(대부업법 제41조의 31)을 비롯한 지정의 취소(대부업법 제41조의 33)
- 등의 규정이 설치되었다(대부업법 제41조의 27부터 제41조의 34까지).

가입대부업체에 관해서는

- (1) 대부업체가 가입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대부업법 제41조의 35)
- (2) 정보제공 시 자금수요자 등의 동의를 구할 의무(대부업법 제41조의 36)
- (3) 제공을 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대부업법 제41조의 38)

등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었다(대부업법 제41조의 35부터 제41조의 38까지).

③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제도의 창설

기존에도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란 제도가 있었으며, 일본대부업협회 등의 연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라고 불렀다. 3조 개정에 따라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제도가 창설되었으며, 국가자격이 되었다.

우선, 3조 개정의 내용은

- (1) 내각총리대신은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2) 내각총리대신이 시험 실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등록을 신청하고 내각총리대신이 등록한다

이며, 완전시행(4조 시행) 시에는 개정 대부업법에 의거한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대부업법 제24조의 7부터 제24조의 50 관계).

4) 4조 개정 (2010년 6월까지 시행 예정)

단계적으로 시행될 대부업법은 4조 개정의 시행으로 완전시행된다.

①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

대부업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등록거부요건으로 한다(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호, 제12조의 3 관련).

그리고 영업소 등에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수의 비율은 50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다(개정부령 제3조).

②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대부업체가 대부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한 최저순자산을 '5,000만 엔을 하한으로 하는 정령(개정 정령 제3조)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4항).

③ 행위규제의 강화 등

(1) 이자제한을 초과하는 계약의 금지 등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령하거나 그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등으로 한다(대부업법 제12조의 8 관계).

(2) 서면교부 의무의 강화

대부업체는 대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등과 같은 서면교부의무를 강화한다(대부업법 제16조의 2 관계)

④ 과잉대출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

(1) 상환능력의 조사의무

(가) 대부업체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고객 등의 상환능력(재정상태 또는 신용, 대출상황, 상환계획 등)에 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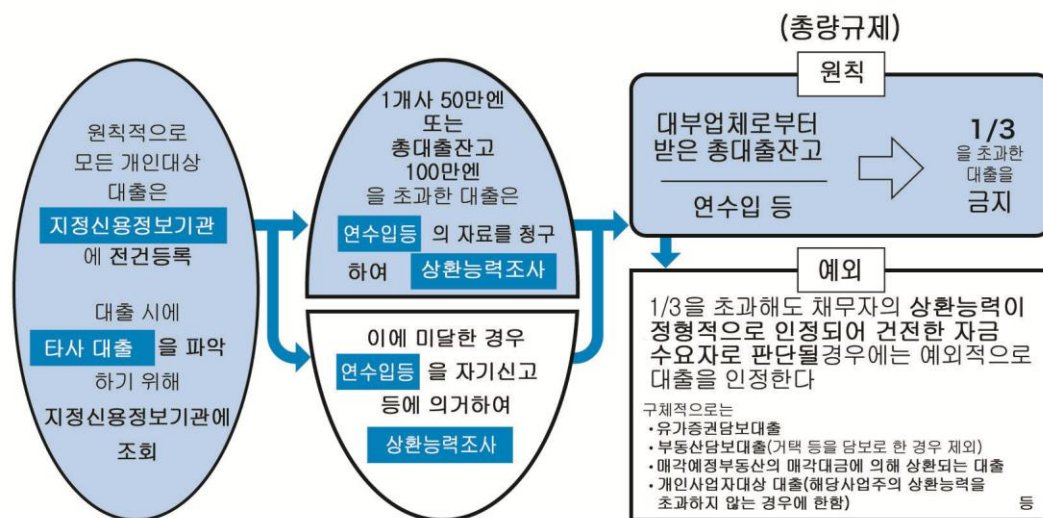
(나) 대부업체가 개인인 고객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정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이용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다) 대부업체에 대해 자사가 고객에게 대출한 금액이 50만 엔을 초과하는 계약 또는 자사가 대출한 금액과 다른 대부업체가 대출한 금액의 총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한다(대부업법 제13조 관계).

(2) 과잉대출의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 (가) 대부업체에 대해 고객 등의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한다.
- (나) 대부업체에 대해 자사가 고객에게 대출한 대출잔고의 합계가 연 수입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 최고한도방식 기본계약(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고한도방식 대출의 상환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상환능력을 조사하고, 자사 대출금액과 타사 대출금액의 잔고 합계가 연 수입 등의 1/3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최고한도방식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대부업법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 4 관련).

도표2-3 총량규제의 도입



(주 1) 주택용자는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신용정보기관의 다른 대출에 관한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별판단에 의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잉 대출을 일반적으로 금지)

(출처 : 금융청HP '개정 대부업법·다중채무자 대책에 대해')

⑤ 간주상환제도의 폐지

대부업체가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의 제한액과 출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자의 제한액 사이의 금리(이른바 그레이존 금리)를 임의로 지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계약서면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해당 지불은 유효한 채무의 상환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은 폐지된다(대부업법 제43조관계).

⑥ 제5조 : 이자제한법의 일부 개정(시행은 제4조와 동일).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일에 개정 이자제한법이 시행된다. 개정 후에도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원금이 10만엔 미만인 경우는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인 경우는 연 18%, 100만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하는 이자제한)의 구분 자체에는 실질적인 변경은

없지만, 영업적 금전소비대차(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특칙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된다.

(1) 원금액 구분의 적용 특례

이자 제한규율에 대해 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소비대차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수 있을 경우의 원금액 구분의 적용 특칙을 마련하기로 한다(이자제한법 제5조 관계).

(가)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해당 대출을 받은 원금과의 합계액에 따라 정해진다.

(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각의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원금의 합계액에 따라 결정된다.

(2) 영업적 금전소비대차상의 간주이자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특칙을 마련하고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다음 사항에 한한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가) 계약의 체결 또는 채무의 상환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에 열거한 비용

- 공조공과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비용, 기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속절차와 관련되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채무자가 금전의 수령 또는 상환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등(ATM)의 수수료(상한은 정령에 위임)

(나) 카드재발급수수료 및 기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가 실시하는 사무비용으로 정령에 규정된 비용(이자제한법 제6조 관계)

(3) 배상액의 예정 특칙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액의 예정 상한을 연 20%로 하고,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7조 관계).

(4) 보증료의 제한 등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에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료에 대해, 주된 채무의 이자와 합산하여 상한금리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 근보증 시의 보증료 특칙을 마련하도록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 관계).

⑦ 제7조 : 출자의 방법,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은 제4조와 동일)

출자법의 다음 조항은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일에 맞춰 개정된다.

(1) 금전대차 등의 매개수수료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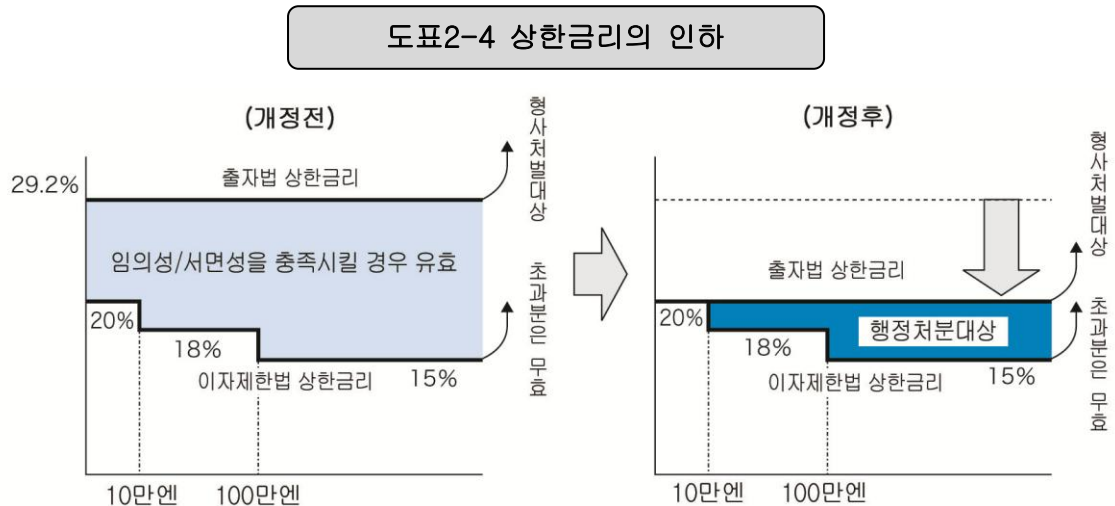
(가) 금전대차의 매개수수료 제한과 관련하여, 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차금액에 그 기간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수수료의 계약을 하거나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출자법 제4조 제1항 관계).

(나) 금전대차의 보증 매개에 대해서도 금전대차의 매개와 동등한 규제를 마련한다(출자법 제4조 제2항 관계).

(2) 업으로 실시하는 고금리위반의 처벌

업으로 실시하는 고금리위반의 처벌대상 금리를 연 29.2%(윤년의 경우 연 29.28%)에서 연 20%로 인하한다(출자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개정으로 개정 대부업법 완전시행 후의 대출 상한금리는 도표 2-4와 같이 된다.



(출처 : 금융청HP '개정 대부업법·다중채무자대책에 대해')

(3) 금전대차의 보증료 제한

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에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료에 대해 주된 채무의 이자와 합산하여 상한금리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증료가 있는 경우의 고금리 규제 특칙을 마련한다(출자법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 관계).

(4) 간주 이자

금전 대출을 실시하는 자가 그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명목에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한다.

(가) 계약의 체결 또는 채무의 상환에 드는 비용이면서 다음에 열거한 비용

- 공조공과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비용, 기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속절차와 관련되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채무자가 금전의 수령 또는 상환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등(ATM)의 수수료
- 대출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금전 대여를 하는 자가 실시하는 사무비용으로 정령에 규정된 비용(출자법 제5조의 4 제4항 관계)

⑧ 제8조 : 출자의 방법,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시행은 제4조와 동일)

일수대부업체 및 전화담보금융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한다(출자법 일부 개정법 부칙
제8항부터 제16항 관계).

제3장 대부업체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결과

1. 앙케트 조사 개요

1) 경영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① 조사 목적

앞으로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으로 인해 대부업체가 향후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② 조사 방법

조사대상	4,683개사 2009년 5월말 시점의 협회원(2,711개사) 및 2009년 6월 1일 시점으로 정보를 수집한 도도부현 지사등록 및 갱신회수 1회를 제외한 등록업체(=비협회원/1,972개사)
조사표 회수 수	1,371개사
유효응답자수 ^(*1)	1,230개사 조사표를 제출한 비협회원 가운데 업태나 잔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 제외
조사방법	우편송부조사법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조사
조사기간	2009년 7월 3일~8월 10일
조사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1) ‘업태’는 협회원 정보 및 각종 단체회원 등록정보 등의 공지정보, 응답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분했다. ‘잔고구분’은 2009년 융자잔고 및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구분한다.

③ 조사분석 시의 유의점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응답자 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앙케트 조사방법의 ‘유효 응답자수’에는 ‘무응답(=응답이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사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대상 외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없는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표본구성

▪ 유효 응답자

구분		발송수 (*1)	유효응답자수	유효 응답율 (*1)	잔고커버 리지 (*2)
협회원/비협회원 구분	협회원	2,711	1,028	37.9%	92.9%
	비협회원	1,972	202	10.2%	
법인/개인구분	법인사업주	2,805	976	34.8%	
	개인사업주	1,878	254	13.5%	
3업태구분	소비자금융업태		537		
	사업자금융업태		458		
	크레딧/신용판매 등		235		
대출잔고구분	5억엔이하		713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72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63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67		
	5,000억엔초과		15		
합계		4,683	1,230	26.3%	

(*1) 비협회원의 3업태 구분 및 대출잔고 구분은 응답자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업태 구분 및 대출잔고 구分的 발송수·응답율은 미산출.

(*2) 잔고 커버리지(coverage)는 협회원만으로 했으며, 응답자의 대출잔고를 전 협회원의 대출 잔고로 나눈 값을 산출.

▪ 비협회원

구분		발송수	유효응답자수	대출잔고 (단위:억엔)(*1)	잔고 구성비(*2)
법인/개인구분	법인사업주	1,066	169	75,775	100.0%
	개인사업주	906	33	12	0.0%
3업태구분	소비자금융업태		52	97	0.1%
	사업자금융업태		148	75,689	99.9%
	크레딧/신용판매 등		2	0	0.0%
대출잔고구분	5억엔이하		111	96	0.1%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47	1,052	1.4%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3	2,584	3.4%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5	24,199	31.9%
	5,000억엔초과		6	47,856	63.1%
합계		1,972	202	75,787	100.0%

(*1)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각 업체의 데이터 합계.

(*2) 유효 응답자 202개 업체의 대출잔고에 대한 구성비.

⑤ 비협회원의 특성

표본구성 중 비협회원에 의한 대출은 대체로 사업자대상 대출로(도표 3-1참조) 대출금리대는 5%이하이며(도표 3-2참조), 일반사업자의 금융자회사 등에 의한 그룹 내 대출 등이 잔고 구성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응답자수의 경우 대출잔고 규모가 5억엔 이하인 소규모 대부업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잔고 등에는 상당히 소규모인 업체나 영세 대부업체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전항 ④ 표본구성 비협회원 참조).

본문에 기재된 각종 분석결과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후 참고하기를 바란다.

도표3-1 (비협회원) 대출종별 대출잔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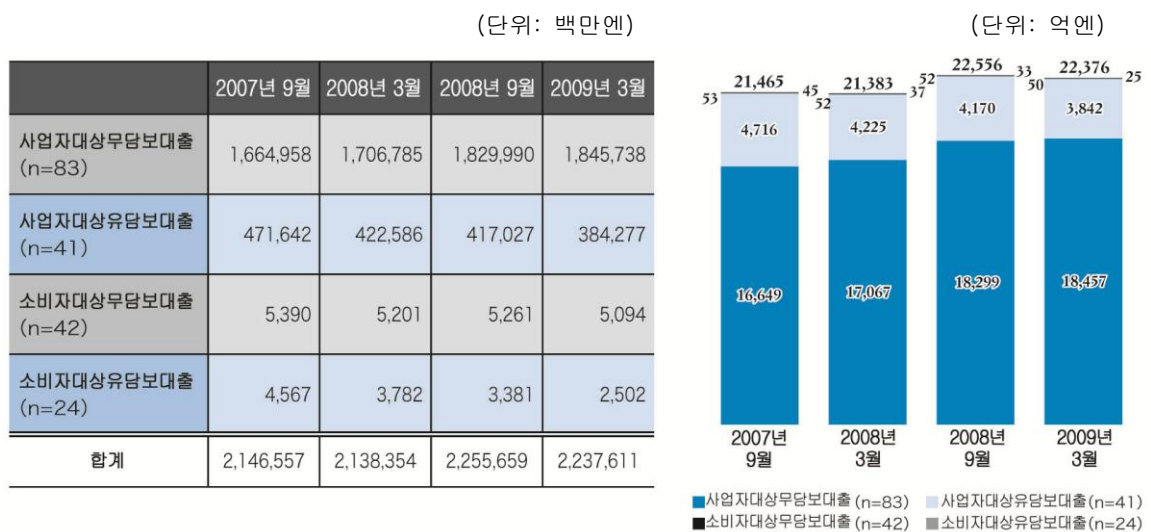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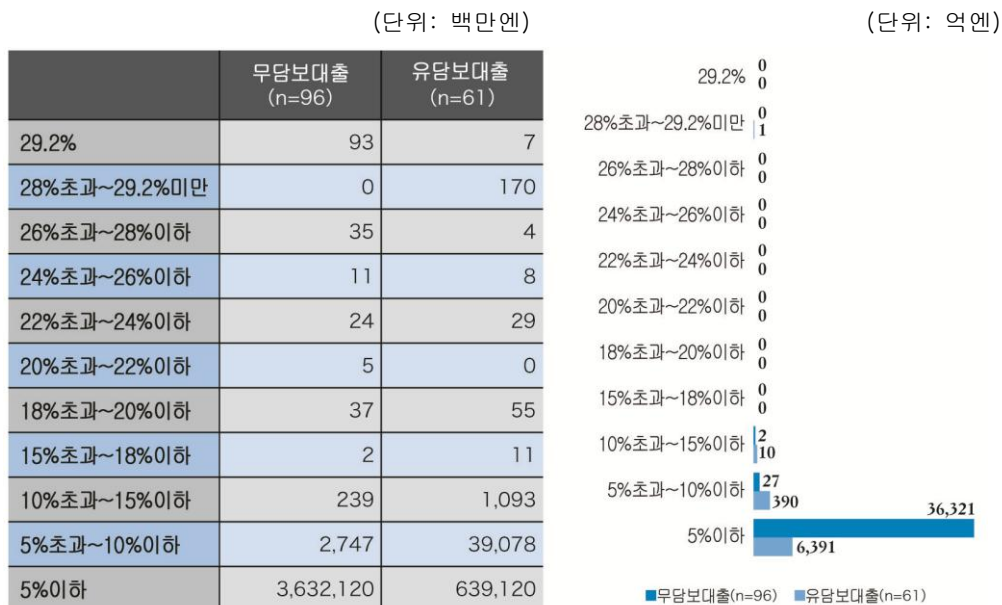


도표3-2 (비협회원) 사업자대상 대출의 금리대별 대출잔고



2) 완전시행에 대비한 대응상황 등에 관한 조사

① 조사방법

조사대상	일정한 규모의 대출잔고를 가지고 있는 특정 협회원 67사
응답자수	59사(회수율 88.1%)
조사방법	우편송부조사법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조사
조사기간	2009년 9월 18일~10월 2일
조사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주 1) 특정 협회원의 대출잔고 합계는 전 협회원의 대출잔고의 80%이상 커버리지를 확보.

② 조사분석 시의 유의점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 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 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전 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대부업계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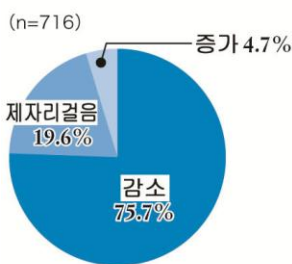
1) 대출잔고의 향후 전망

대출잔고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출잔고가 5,000 억 엔을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협회원)의 경우 모든 업체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대답해, 대출잔고의 감소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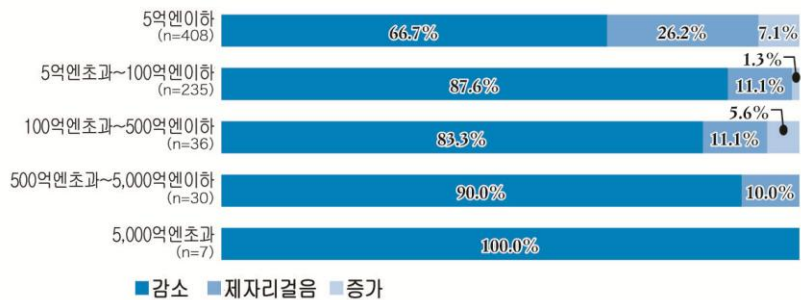
도표3-3 (협회원 조사) 대출잔고의 전망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감소	제자리걸음	증가	합계	감소	제자리걸음	증가	합계
전체	542 75.7%	140 19.6%	34 4.7%	716 100.0%	204 54.8%	145 39.0%	23 6.2%	372 100.0%
5억엔이하	272 66.7%	107 26.2%	29 7.1%	408 100.0%	121 51.7%	99 42.3%	14 6.0%	234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206 87.6%	26 11.1%	3 1.3%	235 100.0%	58 58.6%	34 34.3%	7 7.1%	99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30 83.3%	4 11.1%	2 5.6%	36 100.0%	12 60.0%	7 35.0%	1 5.0%	20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7 90.0%	3 10.0%	0 0.0%	30 100.0%	8 57.2%	5 35.7%	1 7.1%	14 100.0%
5,000억엔초과	7 100.0%	0 0.0%	0 0.0%	7 100.0%	5 100.0%	0 0.0%	0 0.0%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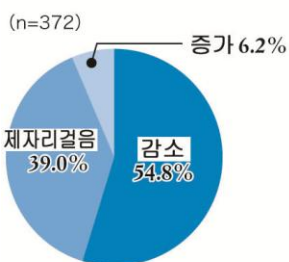
■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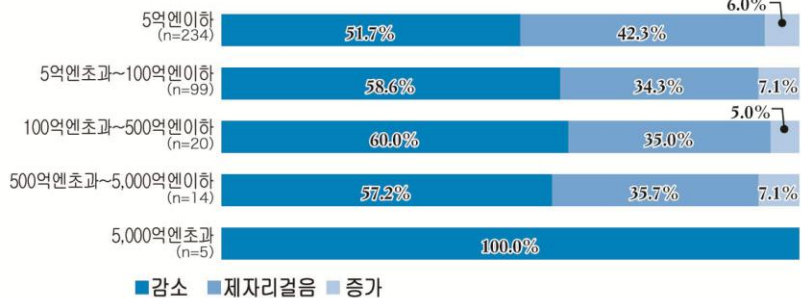
■ 대출잔고규모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 대출잔고규모별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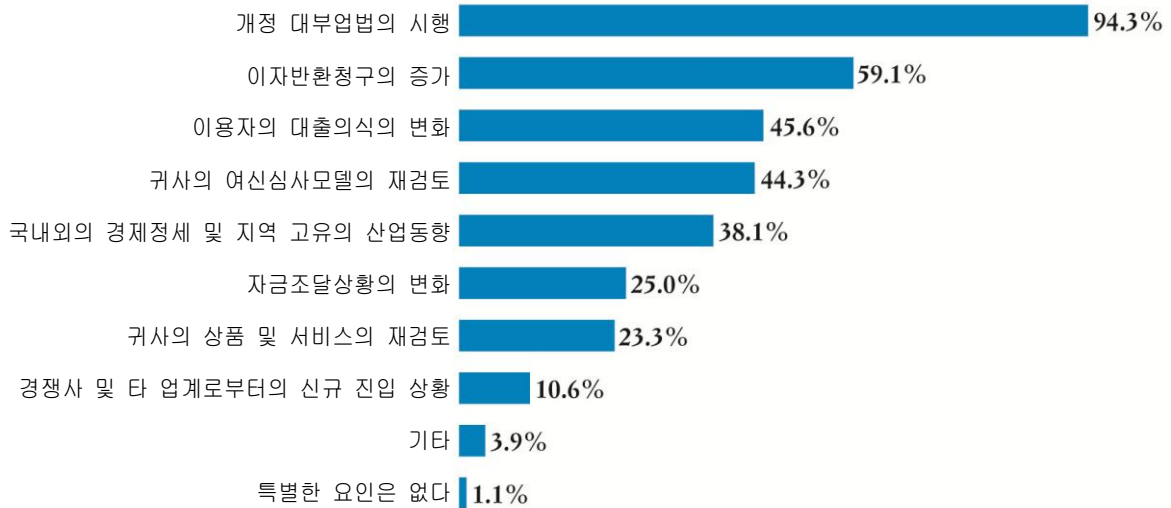


다음은 대출잔고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조사했는데,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94.3%)이 가장 많았으며, ‘이자반환청구의 증가’(59.1%)와 ‘이용자의 대출의식의 변화’(45.6%), ‘귀사의 여신심사 모델의 재검토’(44.3%)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3-4 (협회원조사) 대출잔고 감소 전망의 판단근거-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복수응답)

(N=540)

	응답자수	응답율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509	94.3%
이자반환청구의 증가	319	59.1%
이용자의 대출의식의 변화	246	45.6%
귀사의 여신심사모델의 재검토	239	44.3%
국내외의 경제정세 및 지역 고유의 산업 동향	206	38.1%
자금조달상황의 변화	135	25.0%
귀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재검토	126	23.3%
경쟁사 및 타 업계의 신규 진입 상황	57	10.6%
기타	21	3.9%
특별한 요인은 없다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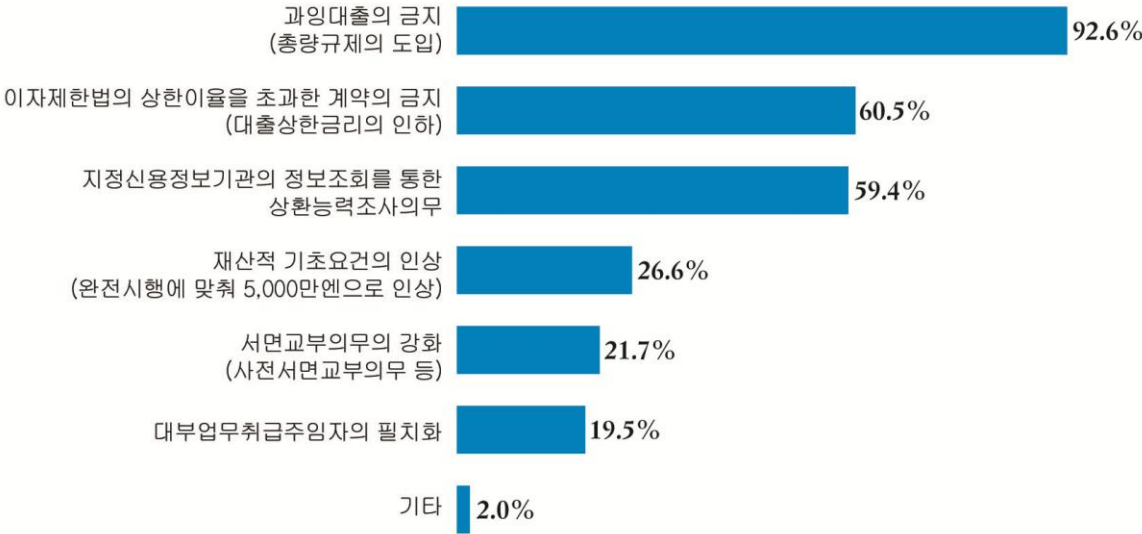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개정 대부업법의 어떠한 시행내용으로 인해 대출잔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조사한 결과 ‘과잉대출 금지’(92.6%)가 가장 높았으며,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60.5%),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정보조회를 통한 상환능력조사의무’(59.4%)의 순이었다.

도표3-5 (협회원 조사) 개정 대부업법 시행내용 중 대출잔고의 감소를 예측하게 된 판단근거-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복수응답)

(n=512)

	응답자수	응답율
과잉대출의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474	92.6%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대출상한금리의 인하)	310	60.5%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정보조회를 통한 상환능력 조사의무	304	59.4%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완전시행에 맞춰 5,000 만 엔으로 인상)	136	26.6%
서면교부의무의 강화(사전서면교부의무 등)	111	21.7%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	100	19.5%
기타	10	2.0%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대출금리의 실정

대출금리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대별 대출잔고를 조사했다.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협회원)의 경우, '15%초과~18%이하'(3.6 조 엔)이 가장 많았으며, '10%초과~15%이하'(1.5 조 엔)가 그 뒤를 이었다. 작년도부터 '20%초과~29.2%'의 금리대가 차지하는 대출잔고의 구성비가 53.3%에서 41.2%로 저하되는 한편, '20%이하'의 금리대는 46.7%에서 58.8%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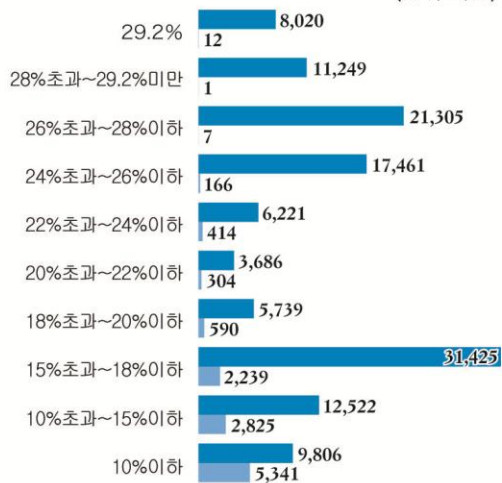
도표3-6 (협회원 조사) 소비자대상 대출의 대출금리대별 대출잔고

(단위: 백만엔)

	2007년도말				2008년도말			
	무담보대출 (n=667)	%	유담보대출 (n=207)	%	무담보대출 (n=508)	%	유담보대출 (n=206)	%
29.2%	802,031	6.3%	1,274	0.1%	489,402	4.7%	3,134	0.2%
28%초과~29.2%미만	1,124,932	8.8%	194	0.0%	1,297,302	12.4%	510	0.0%
26%초과~28%이하	2,130,541	16.7%	762	0.1%	915,270	8.7%	7	0.0%
24%초과~26%이하	1,746,139	13.7%	16,687	1.4%	959,362	9.2%	12,708	0.8%
22%초과~24%이하	622,140	4.9%	41,446	3.5%	397,317	3.8%	34,977	2.3%
20%초과~22%이하	368,686	2.9%	30,493	2.6%	247,657	2.4%	24,938	1.6%
18%초과~20%이하	573,933	4.5%	59,030	5.0%	237,065	2.3%	46,817	3.1%
15%초과~18%이하	3,142,585	24.7%	223,986	18.8%	3,613,118	34.4%	39,304	2.6%
10%초과~15%이하	1,252,242	9.8%	282,591	23.6%	1,559,486	14.9%	231,430	15.3%
10%이하	980,642	7.7%	534,181	44.9%	759,045	7.2%	1,118,802	74.1%
합계	12,743,871	100.0%	1,190,644	100.0%	10,475,024	100.0%	1,512,6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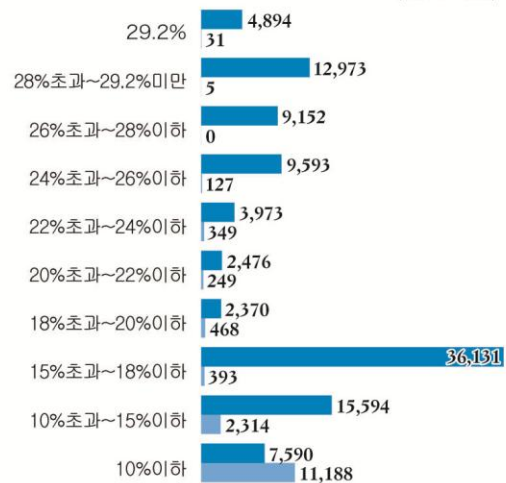
■ 2007년도말

(단위: 억엔)



■ 2008년도말

(단위: 억엔)



그리고 사업자대상 무담보 대출(협회원)의 경우는 '10%이하'(0.7 조 엔)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77.5%에 달했다. 2007 년도부터 '20%초과~29.2%'의 금리대가 차지하는 대출잔고의 구성비가 40.6%에서 8.7%로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20%이하'의 금리대는 59.4%에서 91.3%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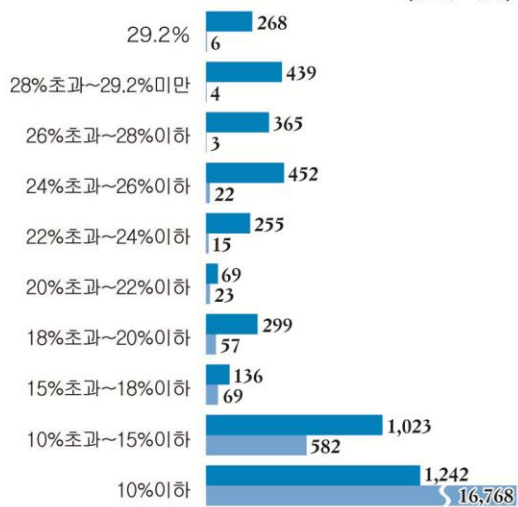
도표3-7 (협회원 조사) 사업자대상 대출의 대출금리대별 대출잔고

(단위: 백만엔)

	2007년도말				2008년도말			
	무담보대출 (n=229)	%	유담보대출 (n=205)	%	무담보대출 (n=200)	%	유담보대출 (n=185)	%
29.2%	26,811	5.9%	604	0.0%	7,021	0.7%	187	0.0%
28%초과~29.2%미만	43,987	9.7%	416	0.0%	25,208	2.6%	268	0.0%
26%초과~28%이하	36,546	8.0%	383	0.0%	18,216	1.9%	59	0.0%
24%초과~26%이하	45,223	9.9%	2,278	0.1%	19,453	2.0%	403	0.0%
22%초과~24%이하	25,591	5.6%	1,568	0.1%	10,813	1.1%	872	0.1%
20%초과~22%이하	6,927	1.5%	2,382	0.1%	3,665	0.4%	1,385	0.1%
18%초과~20%이하	29,995	6.6%	5,795	0.3%	17,867	1.9%	1,934	0.1%
15%초과~18%이하	13,640	3.0%	6,983	0.4%	5,000	0.5%	3,664	0.2%
10%초과~15%이하	102,352	22.5%	58,290	3.3%	109,012	11.4%	33,426	2.0%
10%이하	124,222	27.3%	1,676,810	95.7%	740,997	77.5%	1,617,670	97.5%
합계	455,294	100.0%	1,755,509	100.0%	957,252	100.0%	1,659,868	100.0%

■ 2007년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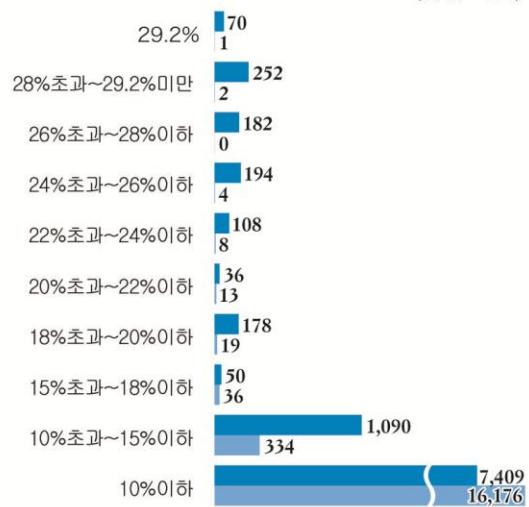
(단위:억엔)



■ 무담보대출 (n=229) ■ 유담보대출 (n=205)

■ 2008년도말

(단위:억엔)



■ 무담보대출 (n=200) ■ 유담보대출 (n=185)

3. 완전시행을 목전에 둔 법개정 내용에 대한 대응 상황

1) 완전시행에 대비한 대응 상황

① 각 개정 항목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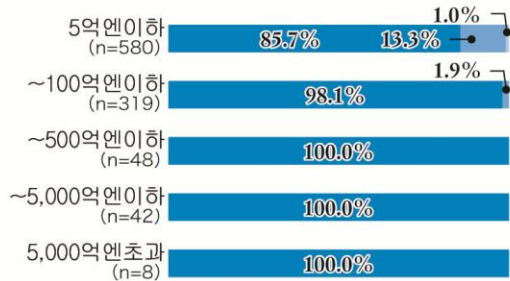
각 항목에 대해 현 시점과 완전시행 시(2010년 6월 예상)의 양 시점의 대응상황을 조사했다. 대출잔고가 5억엔 이하인 대부업체(협회원)의 경우, 2010년 6월까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특히 재산적 기초요건의 대응에 대해서는 31.8%가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도표3-8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내용의 대응상황과 전망-대출잔고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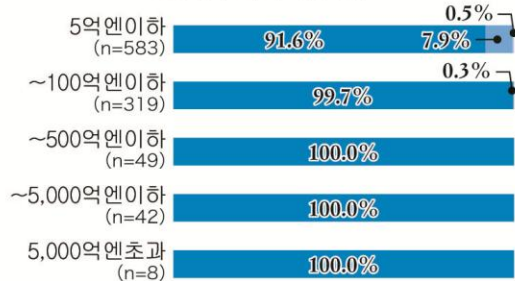
		현재 대응상황				2010년 6월(완전시행 기한)까지의 대응상황 전망			
		이미 대응함 대응준비중	대응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합계	이미 대응함 대응완료 예정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대응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합계
재산적 기초 요건의 인상 (순자산 5,000만엔)	5억엔이하	497 85.7%	77 13.3%	6 1.0%	580 100.0%	399 68.2%	159 27.2%	27 4.6%	585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13 98.1%	6 1.9%	0 0.0%	319 100.0%	307 95.4%	13 4.0%	2 0.6%	322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48 100.0%	0 0.0%	0 0.0%	48 100.0%	50 100.0%	0 0.0%	0 0.0%	50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2 100.0%	0 0.0%	0 0.0%	42 100.0%	42 100.0%	0 0.0%	0 0.0%	42 100.0%
	5,000억엔초과	8 100.0%	0 0.0%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8 100.0%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5억엔이하	534 91.6%	46 7.9%	3 0.5%	583 100.0%	501 86.6%	68 11.7%	10 1.7%	579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18 99.7%	1 0.3%	0 0.0%	319 100.0%	311 97.2%	8 2.5%	1 0.3%	320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49 100.0%	0 0.0%	0 0.0%	49 100.0%	49 100.0%	0 0.0%	0 0.0%	49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2 100.0%	0 0.0%	0 0.0%	42 100.0%	42 100.0%	0 0.0%	0 0.0%	42 100.0%
	5,000억엔초과	8 100.0%	0 0.0%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8 100.0%
과잉대출의 금지	5억엔이하	497 85.9%	79 13.6%	3 0.5%	579 100.0%	461 80.2%	103 17.9%	11 1.9%	575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06 97.1%	9 2.9%	0 0.0%	315 100.0%	301 95.3%	14 4.4%	1 0.3%	316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49 100.0%	0 0.0%	0 0.0%	49 100.0%	49 100.0%	0 0.0%	0 0.0%	49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1 100.0%	0 0.0%	0 0.0%	41 100.0%	41 100.0%	0 0.0%	0 0.0%	41 100.0%
	5,000억엔초과	8 100.0%	0 0.0%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8 100.0%
서면교부 의무의 강화	5억엔이하	487 83.8%	83 14.3%	11 1.9%	581 100.0%	471 81.6%	98 17.0%	8 1.4%	577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03 95.9%	13 4.1%	0 0.0%	316 100.0%	298 94.0%	19 6.0%	0 0.0%	317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49 100.0%	0 0.0%	0 0.0%	49 100.0%	48 98.0%	1 2.0%	0 0.0%	49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42 100.0%	0 0.0%	0 0.0%	42 100.0%	42 100.0%	0 0.0%	0 0.0%	42 100.0%
	5,000억엔초과	8 100.0%	0 0.0%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8 100.0%

■ 현재 대응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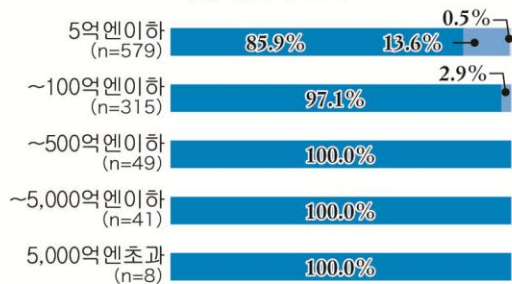
재산적기초요건의 인상
(순자산액 5,000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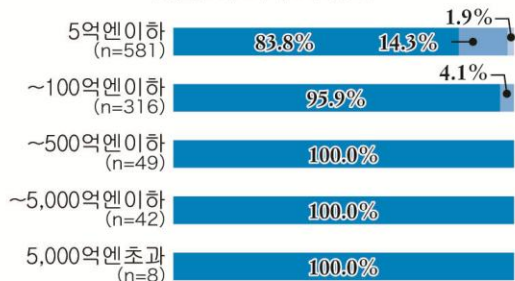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과잉대출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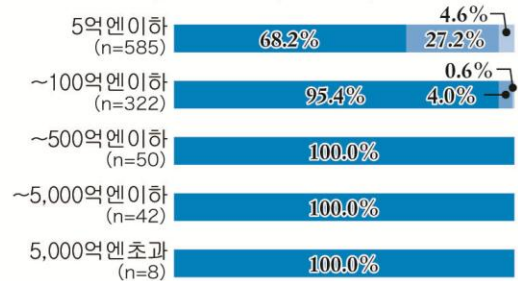
서면교부의무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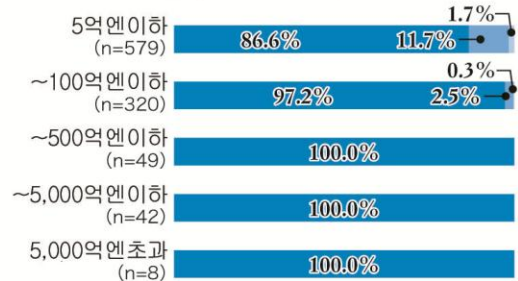
■ 이미대응함/대응 완료 예정 ■ 대응이 필요하지 모르겠다
■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 2010년 6월(완전시행의 기한)까지의 대응상황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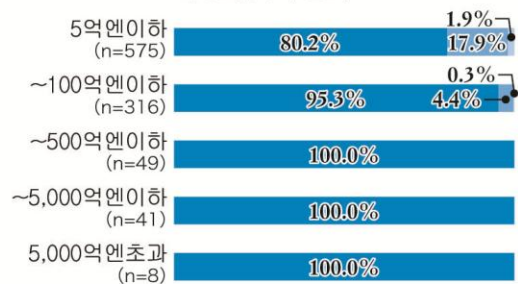
재산적기초요건의 인상
(순자산액 5,000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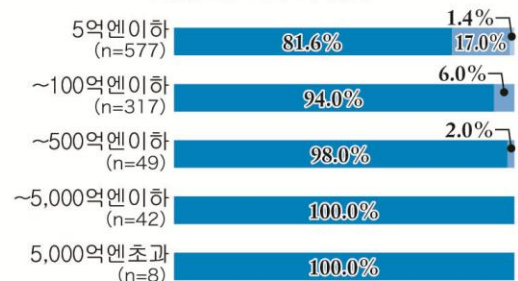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과잉대출의 금지



서면교부의무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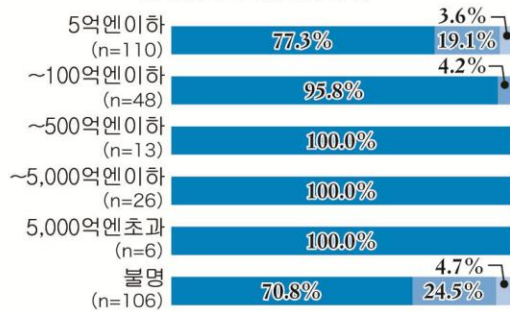
■ 이미대응함/대응 완료 예정 ■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도표3-9 (비협회원 조사) 완전시행내용의 대응상황과 전망-대출잔고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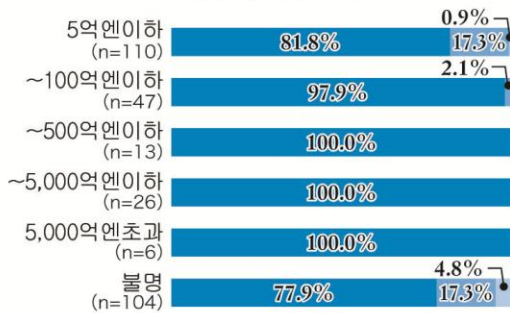
		현재 대응상황				2010년 6월(완전시행 기한)까지의 대응상황 전망			
		이미 대응함 대응준비중	대응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합계	이미 대응함 대응완료 예정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대응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합계
재산적 기초 요건의 인상 (순자산 5,000만엔)	5억엔이하	85 77.3%	21 19.1%	4 3.6%	110 100.0%	75 65.8%	29 25.4%	10 8.8%	114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46 95.8%	2 4.2%	0 0.0%	48 100.0%	45 93.7%	3 6.3%	0 0.0%	48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3 100.0%	0 0.0%	0 0.0%	13 100.0%	13 100.0%	0 0.0%	0 0.0%	13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6 100.0%	0 0.0%	0 0.0%	26 100.0%	26 100.0%	0 0.0%	0 0.0%	26 100.0%
	5,000억엔초과	6 100.0%	0 0.0%	0 0.0%	6 100.0%	6 100.0%	0 0.0%	0 0.0%	6 100.0%
	불명	75 70.8%	26 24.5%	5 4.7%	106 100.0%	65 60.2%	28 25.9%	15 13.9%	108 100.0%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5억엔이하	90 81.8%	19 17.3%	1 0.9%	110 100.0%	91 81.2%	18 16.1%	3 2.7%	112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46 97.9%	1 2.1%	0 0.0%	47 100.0%	46 97.9%	1 2.1%	0 0.0%	47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3 100.0%	0 0.0%	0 0.0%	13 100.0%	13 100.0%	0 0.0%	0 0.0%	13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6 100.0%	0 0.0%	0 0.0%	26 100.0%	26 100.0%	0 0.0%	0 0.0%	26 100.0%
	5,000억엔초과	6 100.0%	0 0.0%	0 0.0%	6 100.0%	6 100.0%	0 0.0%	0 0.0%	6 100.0%
	불명	81 77.9%	18 17.3%	5 4.8%	104 100.0%	74 71.9%	20 19.4%	9 8.7%	103 100.0%
과잉대출의 금지	5억엔이하	81 75.0%	25 23.1%	2 1.9%	108 100.0%	79 73.1%	26 24.1%	3 2.8%	108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40 88.9%	5 11.1%	0 0.0%	45 100.0%	40 88.9%	5 11.1%	0 0.0%	45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1 100.0%	0 0.0%	0 0.0%	11 100.0%	11 91.7%	0 0.0%	1 8.3%	12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2 95.7%	1 4.3%	0 0.0%	23 100.0%	22 95.7%	1 4.3%	0 0.0%	23 100.0%
	5,000억엔초과	3 100.0%	0 0.0%	0 0.0%	3 100.0%	3 100.0%	0 0.0%	0 0.0%	3 100.0%
	불명	73 72.2%	23 22.8%	5 5.0%	101 100.0%	68 66.7%	25 24.5%	9 8.8%	102 100.0%
서면교부 의무의 강화	5억엔이하	83 75.5%	22 20.0%	5 4.5%	110 100.0%	80 72.8%	25 22.7%	5 4.5%	110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8 79.1%	9 18.8%	1 2.1%	48 100.0%	40 85.1%	7 14.9%	0 0.0%	47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2 100.0%	0 0.0%	0 0.0%	12 100.0%	12 92.3%	0 0.0%	1 7.7%	13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3 92.0%	2 8.0%	0 0.0%	25 100.0%	23 92.0%	2 8.0%	0 0.0%	25 100.0%
	5,000억엔초과	5 100.0%	0 0.0%	0 0.0%	5 100.0%	5 100.0%	0 0.0%	0 0.0%	5 100.0%
	불명	69 67.0%	27 26.2%	7 6.8%	103 100.0%	66 65.4%	28 27.7%	7 6.9%	101 100.0%

■ 현재 대응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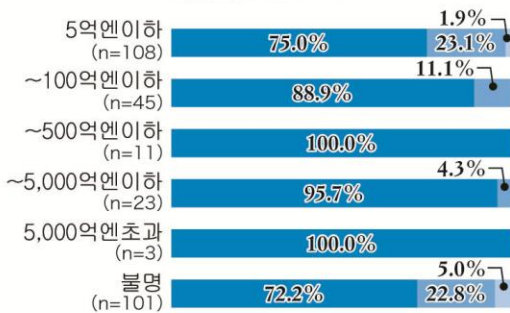
재산적기초요건의 인상
(순자산액 5,000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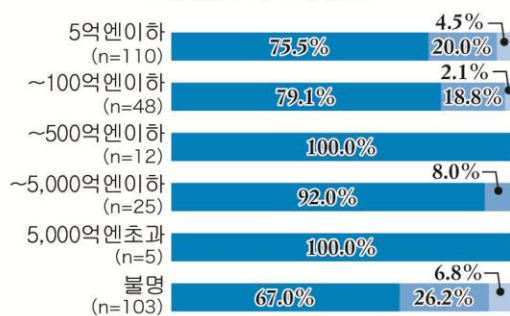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과잉대출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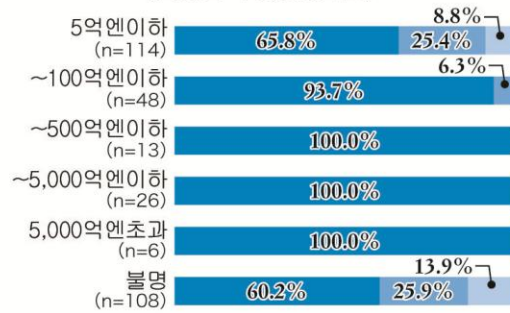
서면교부의무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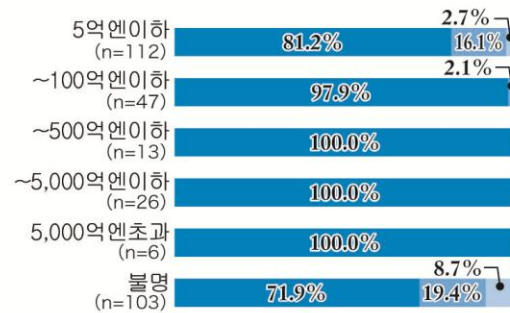
■ 이미대응함/대응 준비중 ■ 대응이 필요하지 모르겠다
■ 대응이 불가능할 지 모르겠다 ■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 2010년 6월(완전시행의 기한)까지의 대응상황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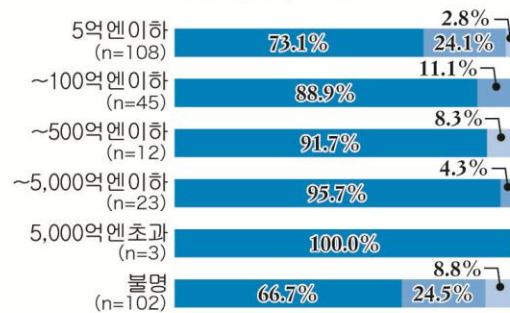
재산적기초요건의 인상
(순자산액 5,000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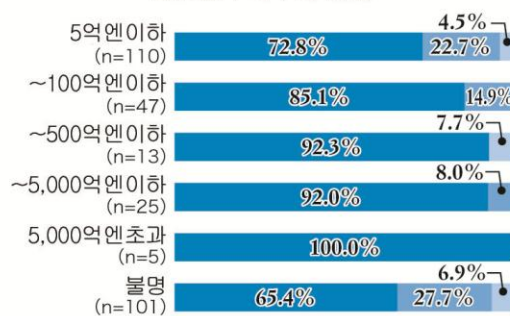
이자제한법의 상한이율을
초과한 계약의 금지



과잉대출의 금지



서면교부의무의 강화



■ 이미대응함/대응 완료예정 ■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②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한 대응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의무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을 희망하는 신용정보기관에 현재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출잔고가 5 억엔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협회원)의 경우 41.5%에 머물렀다. 그 다음으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 완전시행이 될 때까지의 가입 의향을 물었는데, 소규모 대부업체(협회원)의 경우, 48.5%가 “신용정보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도표3-10 (협회원 조사/비협회원 조사) 일본신용정보기구 및 CIC에
현재 가입율-대출잔고규모별

협회원			비협회원		
	현재 가입율	현재 가입율		현재 가입율	현재 가입율
5 억엔 이하 (n=602)	250	41.5%	5 억엔 이하 (n=119)	10	8.4%
5 억엔 초과 ~100 억엔 이하 (n=325)	253	77.8%	5 억엔 초과 ~100 억엔 이하 (n=48)	3	6.3%
100 억엔 초과 ~500 억엔 이하 (n=50)	42	84.0%	100 억엔 초과 ~500 억엔 이하 (n=13)	0	0.0%
500 억엔 초과 ~5,000 억엔 이하 (n=42)	39	92.9%	500 억엔 초과 ~5,000 억엔 이하 (n=26)	3	11.5%
5,000 억엔 초과 (n=9)	9	100.0%	5,000 억엔 초과 (n=6)	1	16.7%
			불명(n=131)	1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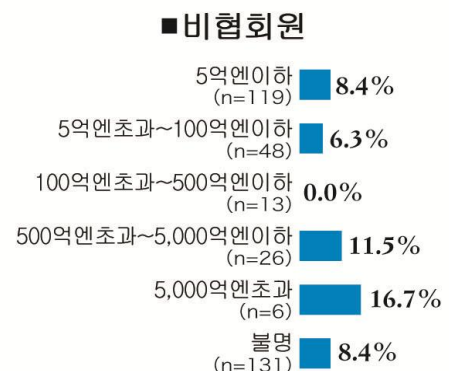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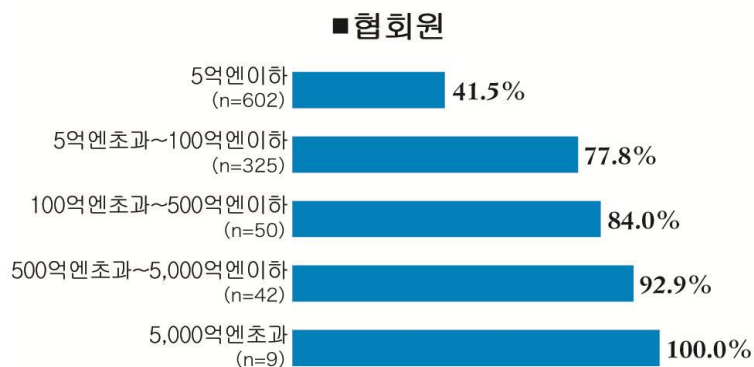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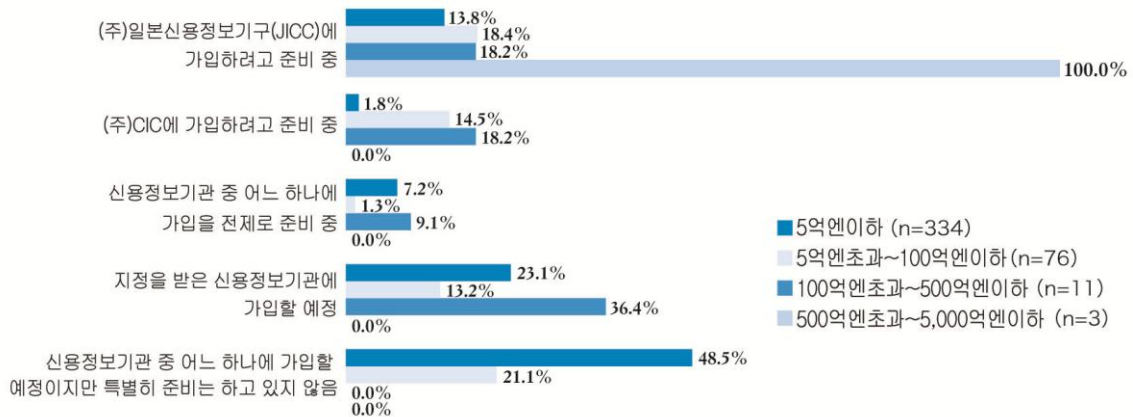


도표3-11 (협회원 조사) 신용정보기관 미가입 업체의 대응상태
-대출잔고규모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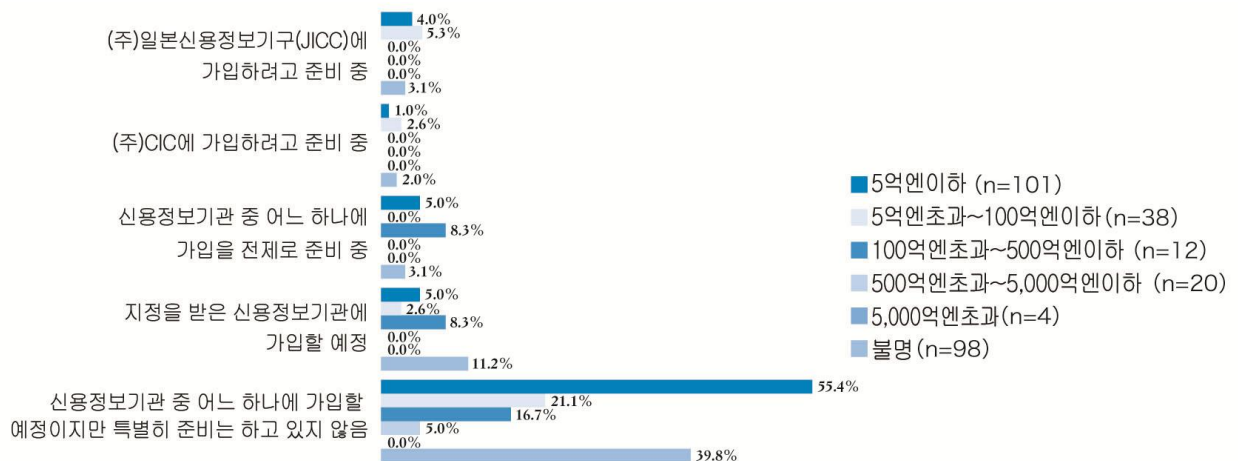
	협회원							
	5 억엔 이하 (n=334)		5 억엔 초과 ~100 억엔 이하 (n=76)		100 억엔 초과~ 500 억엔 이하 (n=11)		500 억엔 초과~ 5,000 억엔 이하 (n=3)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주)일본신용정보기구(JICC)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	46	13.8%	14	18.4%	2	18.2%	3	100.0%
(주)CIC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	6	1.8%	11	14.5%	2	18.2%	0	0.0%
신용정보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을 전제로 준비 중	24	7.2%	1	1.3%	1	9.1%	0	0.0%
지정을 받은 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할 예정	77	23.1%	10	13.2%	4	36.4%	0	0.0%
신용정보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음	162	48.5%	16	21.1%	0	0.0%	0	0.0%



(주 1)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에 n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표3-12 (비협회원조사) 신용정보기관 미가입업체의 대응상태
-대출잔고규모별(복수응답)

	비협회원											
	5 억엔 이하 (n=101)		5 억엔 초과 ~100 억엔 이하 (n=38)		100 억엔 초과 ~500 억엔 이하 (n=12)		500 억엔 초과 ~5,000 억엔 이하 (n=20)		5,000 억엔 초과 (n=4)		불명 (n=98)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주일본신용정보기구(JICC)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	4	4.0%	2	5.3%	0	0.0%	0.0%	0.0%	0	0.0%	3	3.1%
주CIC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	1	1.0%	1	2.6%	0	0.0%	0.0%	0.0%	0	0.0%	2	2.0%
신용정보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을 전제로 준비 중	5	5.0%	0	0.0%	1	8.3%	0.0%	0.0%	0	0.0%	3	3.1%
지정을 받은 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할 예정	5	5.0%	1	2.6%	1	8.3%	0.0%	0.0%	0	0.0%	11	11.2%
신용정보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음	56	55.4%	8	21.1%	2	16.7%	0.0%	5.0%	0	0.0%	39	39.8%



(주 1)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에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 가능성

완전시행 후에도 대부업 사업을 계속할 것인 지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협회원)의 72.2%가 “완전시행 후에도 지금과 변함없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18.9%가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에 대해서 모르겠다”, 8.5%가 “완전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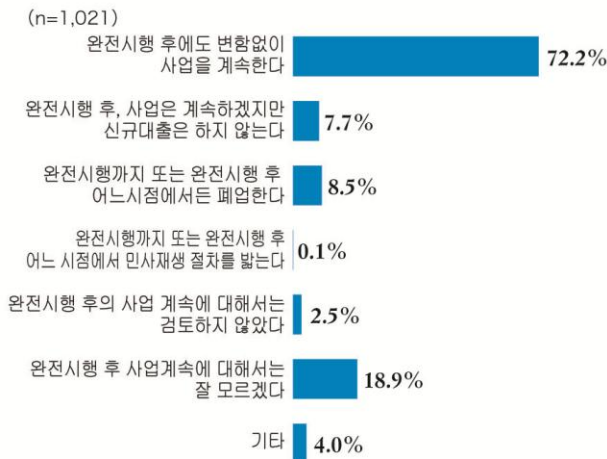
때까지나 완전시행 후 어느 시점에서 폐업할 것이다”, 7.7%가 “완전시행 후에도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 대출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폐업이나 신규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상한금리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었기(악화될 것이기) 때문에”가 가장 높았으며(58.3%), “총량규제의 도입으로 수익이 악화되었기(될 것이기) 때문에”(47.1%), “이자반환청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35.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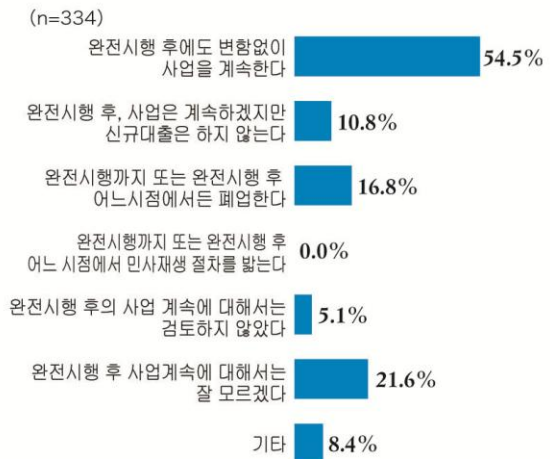
도표3-13 (협회원 조사/비협회원 조사)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 가능성(복수응답)

	협회원 (n=1,021)		비협회원 (n=334)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완전시행 후에도 변함없이 사업을 계속한다	737	72.2%	182	54.5%
완전시행 후,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대출은 하지 않는다	79	7.7%	36	10.8%
완전시행 또는 완전시행 후 어느 시점에서 폐업한다	87	8.5%	56	16.8%
완전시행 또는 완전시행 후 어느 시점에서 민사재생 절차를 밟는다	1	0.1%	0	0.0%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26	2.5%	17	5.1%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93	18.9%	72	21.6%
기타	41	4.0%	28	8.4%

■ 협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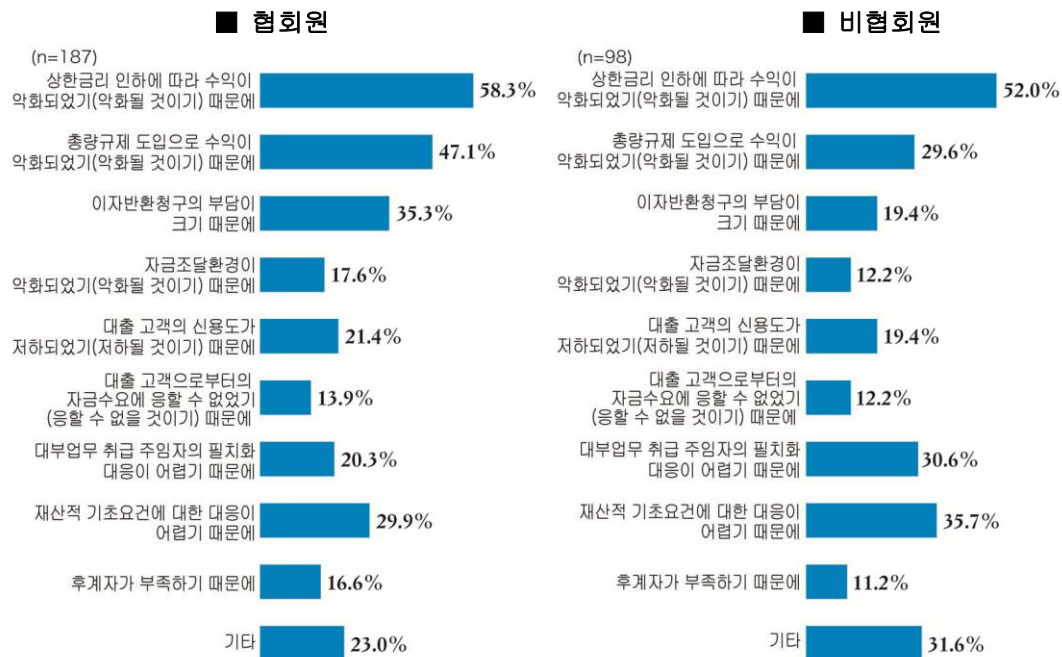
■ 비협회원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표3-14 (협회원 조사/비협회원 조사) 사업 계속이 어렵거나 신규대출 정지 이유(복수응답)

	협회원(n=187)		비협회원(n=98)	
	응답수	응답율	응답수	응답율
상한금리 인하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었기(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109	58.3%	51	52.0%
총량규제 도입으로 수익이 악화되었기(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88	47.1%	29	29.6%
이자반환청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66	35.3%	19	19.4%
자금조달환경이 악화되었기(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33	17.6%	12	12.2%
대출 고객의 신용도가 저하되었기(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40	21.4%	19	19.4%
대출 고객으로부터의 자금수요에 응할 수 없었기(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26	13.9%	12	12.2%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38	20.3%	30	30.6%
재산적 기초요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56	29.9%	35	35.7%
후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31	16.6%	11	11.2%
기타	43	23.0%	31	31.6%



(주 1)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에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3)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대부업체의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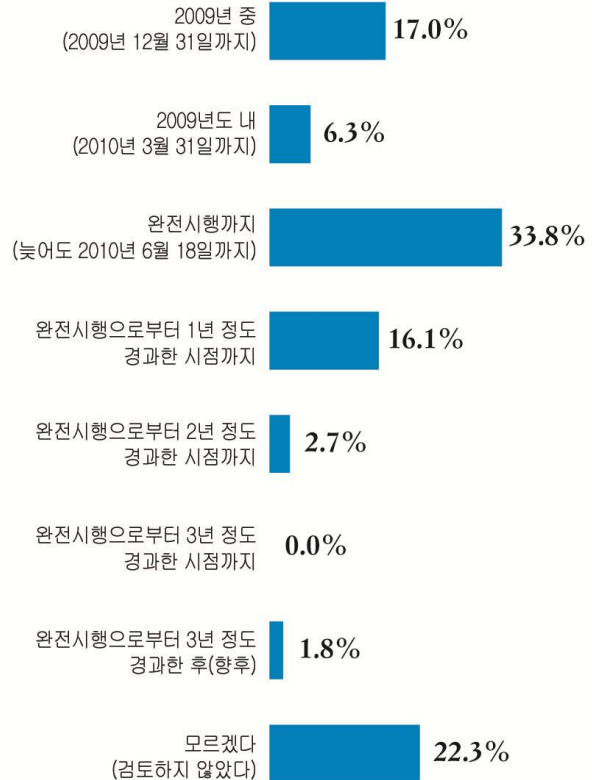
폐업이나 민사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업체(협회원, 약 9%)의 57.2%가 ‘완전시행 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또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 면에서도 67.4%가 “폐업 후에는 기존 채권의 회수만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대부업무를 하지 않는 ‘간주 대부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3-15 (협회원 조사) 폐업이나 민사재생절차의 실시 예정시기와
기존 채권에 대한 대응(기존채권에 대한 대응은 복수응답)

(n=112)

■ 폐업이나 민사재생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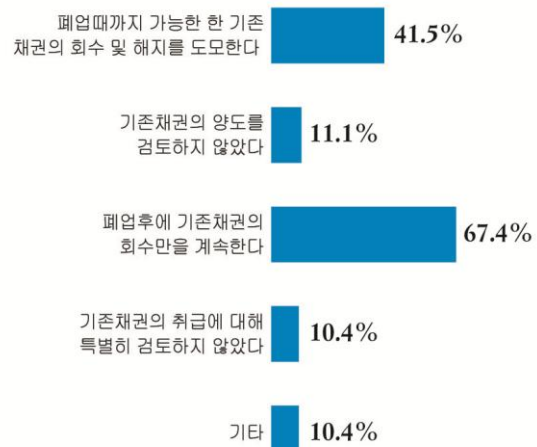
	폐업이나 민사재생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	
	응답자수	응답율
2009 년 중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19	17.0%
2009 년도 내 (2010 년 3 월 31 일까지)	7	6.3%
완전시행까지(늦어도 2010 년 6 월 18 일까지)	38	33.8%
완전시행으로부터 1 년 정도 경과한 시점까지	18	16.1%
완전시행으로부터 2 년 정도 경과한 시점까지	3	2.7%
완전시행으로부터 3 년 정도 경과한 시점까지	0	0.0%
완전시행으로부터 3 년 정도 경과한 후(향후)	2	1.8%
모르겠다(검토하지 않았다)	25	22.3%



(n=135)

■ 기존채권에 대한 대응

	기존채권에 대한 대응	
	응답자수	응답율
폐업때까지 가능한 한 기존채권의 회수 및 해지를 도모한다	56	41.5%
기존채권의 양도를 검토하고 있다	15	11.1%
폐업 후에 기존채권의 회수만을 계속한다	91	67.4%
기존채권의 취급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지 않았다	14	10.4%
기타	14	10.4%



(주 1)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에 n 이 일치하지 않는다.

4)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의견’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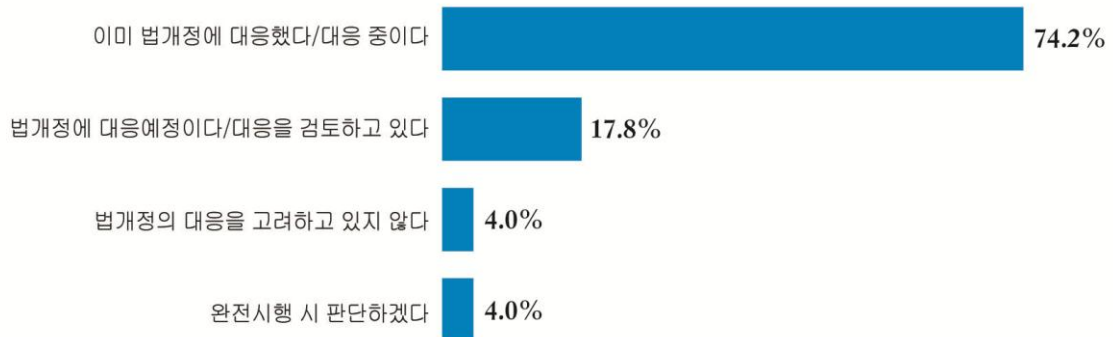
법개정에 대한 대응상황과 관련하여 기술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74.2%가 “이미 법개정에 대비했다/대비 중이다”라고 대답하여 전반적으로 법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법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했는데, “불법사금융이 확대한다”와 같은 자금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과 “대부업체의 업무실태 등을 감안한 ‘부칙 제 67 조’에 기재된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와 같은 법개정의 재검토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법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나 대책에 관해서는 5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환경의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3-16 법개정에 대한 대응상황(기술식 응답에 근거한 분석)

(n=101)

	응답자수	응답율
이미 법개정에 대응했다/대응 중이다	75	74.2%
법개정에 대응 예정이다/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8	17.8%
법개정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4.0%
완전시행 시 판단하겠다	4	4.0%



(주 1) 기술식 응답 분석 시, 비협회원의 집계대상은 업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출잔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답변 업체 343사이다.

도표3-17 법개정에 대한 의견(기술식 응답에 근거한 분석)

(n=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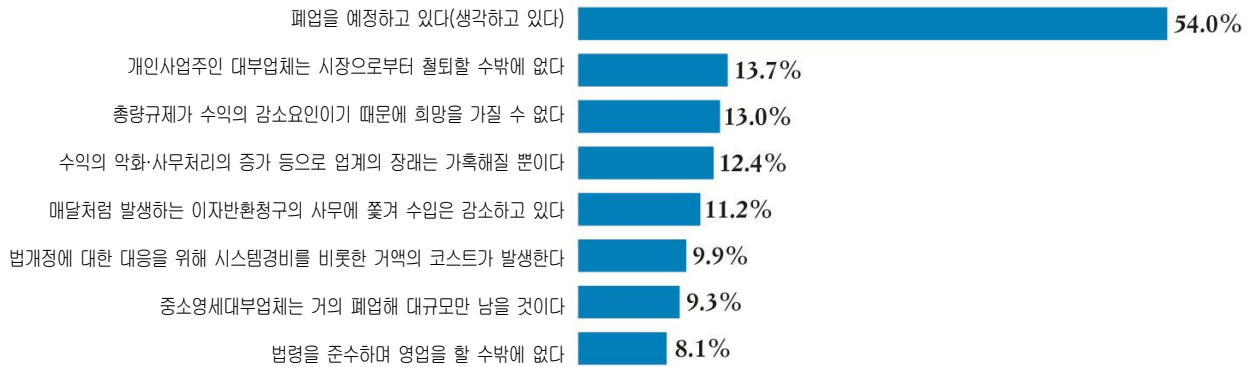
	응답자수	응답율
불법사금융이 확대된다	35	21.0%
대부업체의 업무실태 등을 감안한 '부칙 제 67 조'의 재검토를 기대한다	28	16.8%
총량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총량규제기준을 재고했으면 한다	26	15.6%
법개정은 실무를 모르는 학자 등 사회의 다수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2	13.2%
이자상한금리에 대해서는 변동제를 이용했으면 한다	21	12.6%
다중채무자의 재발·존속, 채무정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1	12.6%
자금수요자의 불량화가 증가하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21	12.6%
재산적 기초요건을 충족시키기는 것은 힘들다	18	10.8%
변호사 등이 이자반환청구의 성공보수명목으로 20%~30%의 이익을 내는 것은 의문이다	15	9.0%
그룹대출은 다중채무자문제 등의 대책인 법개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13	7.8%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9	5.4%
총량규제의 도입은 소비자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9	5.4%
이자반환청구 대상기간의 단축을 희망한다	9	5.4%
소비자대상과 사업자대상의 업태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기 바란다	4	2.4%
대부업을 부업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대응을 구별했으면 한다	2	1.2%



도표3-18 경영환경의 변화 및 대책(기술식 응답에 근거한 분석)

(n=161)

	응답자수	응답율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생각하고 있다)	87	54.0%
개인사업주인 대부업체는 시장으로부터 철퇴할 수밖에 없다	22	13.7%
총량규제가 수익의 감소요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21	13.0%
수익의 악화·사무처리의 증가 등으로 업계의 장래는 가혹해질 뿐이다	20	12.4%
매달처럼 발생하는 이자반환청구의 사무에 쫓겨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18	11.2%
법개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스템경비를 비롯한 거액의 코스트가 발생한다	16	9.9%
중소영세대부업체는 거의 폐업해 대규모만 남을 것이다	15	9.3%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13	8.1%



(주 1) 하나의 의견에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 2) 기술식 응답 분석 시, 비협회원의 집계대상은 업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출잔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답변 업체 343사이다.

4. 대부업체의 경영실태

1) 손익의 현황과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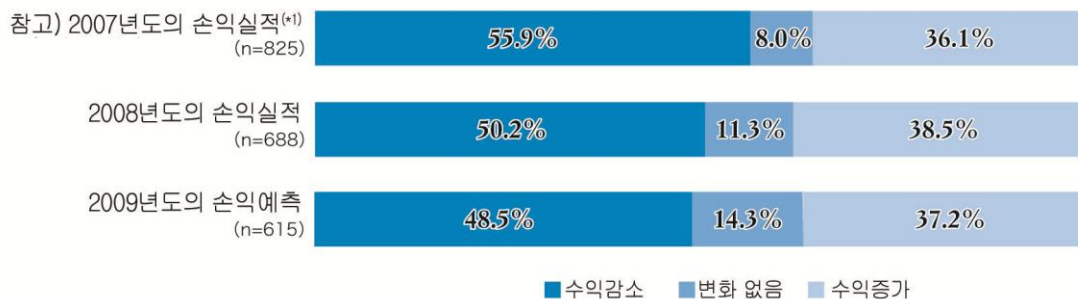
대부업체의 손익현황과 향후의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2007년도, 2008년도)간의 영업손익금액 및 2009년도의 영업손익금액 예측에 대해 조사했으며,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의 손익 증감금액도 산출했다.

산출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 손익실적의 경우, 688사 중 50.2%(345사)가 수익이 감소했으며, 38.5%(265사)가 수익이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이 증가한 265사의 내역을 보면, 123사는 2007년도가 적자(손익 ± 0 을 포함)였으며, 이 중 64사는 2008년도도 적자(손익 ± 0 포함)였다.

그리고 2009년도의 손익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협회원)의 48.5%가 '수익 감소(예측)', 37.2%가 '수익 증가(예측)'라고 대답했다(단, 대부업체의 손익은 '이자반환청구에 의한 손실과 관련된 충당금'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다).

도표3-19 (협회원 조사) 손익의 현황과 예측

	수익감소	변화 없음	수익증가	합계
참고) 2007년도의 손익실적 ^(*)	461	66	298	825
	55.9%	8.0%	36.1%	100.0%
2008년도의 손익실적	345	78	265	688
	50.2%	11.3%	38.5%	100.0%
2009년도의 손익예측	298	88	229	615
	48.5%	14.3%	3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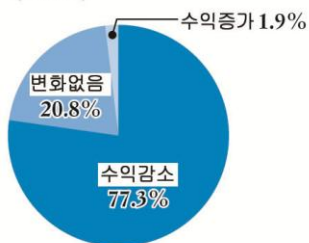
(*) 2007년도의 손익실적은 작년도 조사를 참고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이 완전시행된 후의 손익 예측을 2008년도 대비로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협회)의 77.3%가 그 중에서도 특히 대출잔고가 5,000억 엔이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의 88.9%가 수익이 감소하리라고 예측해 작년도 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으리라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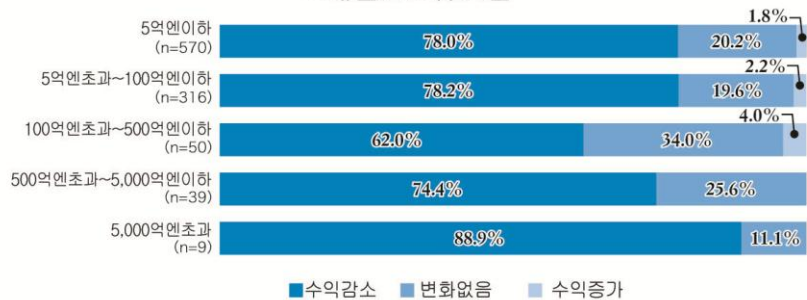
도표3-20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 후의 손익 예측

	수익감소	변화 없음	수익증가	합계
전체	760	205	19	984
	77.3%	20.8%	1.9%	100.0%
5억엔 이하	445	115	10	570
	78.0%	20.2%	1.8%	100.0%
5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247	62	7	316
	78.2%	19.6%	2.2%	100.0%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31	17	2	50
	62.0%	34.0%	4.0%	100.0%
5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29	10	0	39
	74.4%	25.6%	0.0%	100.0%
5,000억엔 초과	8	1	0	9
	88.9%	11.1%	0.0%	100.0%

(n=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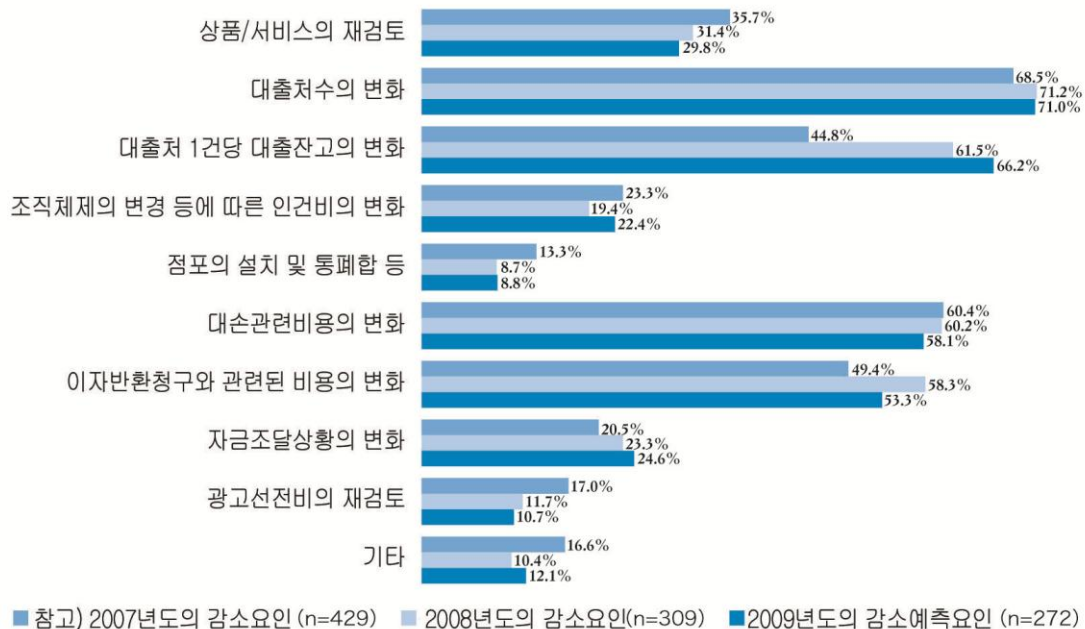
■ 대출잔고규모별



다음으로 ‘수익 감소’라고 대답한 대부업체(협회원)를 대상으로 감소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고객 수의 변화’(2008년도의 경우 71.2%, 2009년도의 경우 71.0%, 이하 동일)가 가장 많았으며, ‘대출고객 1건당 대출잔고의 변화’(61.5%, 66.2%), ‘대손 관련 비용의 변화’(60.2%, 58.1%) 및 ‘이자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의 변화’(58.3%, 53.3%)가 그 뒤를 이었다.

도표3-21 (협회원 조사) ‘수익감소’라고 대답한 대부업체의 수익감소요인(복수회답)

	참고)2007년도의 수익 감소요인 (*1) (n=429)		2008년도의 수익 감소요인(n=309)		2009년도의 수익감소 예측요인 (n=272)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상품/서비스의 재검토	153	35.7%	97	31.4%	81	29.8%
대출처수의 변화	294	68.5%	220	71.2%	193	71.0%
대출처 1건당 대출잔고의 변화	192	44.8%	190	61.5%	180	66.2%
조직체제의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	100	23.3%	60	19.4%	61	22.4%
점포의 설치 및 통폐합 등	57	13.3%	27	8.7%	24	8.8%
대손관련비용의 변화	259	60.4%	186	60.2%	158	58.1%
이자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의 변화	212	49.4%	180	58.3%	145	53.3%
자금조달상황의 변화	88	20.5%	72	23.3%	67	24.6%
광고선전비의 재검토	73	17.0%	36	11.7%	29	10.7%
기타	71	16.6%	32	10.4%	33	12.1%



(주 1) 복수회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2007년도의 수익감소요인은 작년도 조사를 참고로 했다.

2) 사업코스트의 구조

대부업체의 코스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기의 영업대출금잔고(평균잔고), 영업대출금이자 및 대부업의 영업비용으로 금융비용, 대손상각비용, 기타판매관리비, 이자반환비용(이자반환금)을 조사하여 ‘영업대출금이자의 영업대출금잔고에 대한 비율’, ‘영업비용총액(이자반환비용을 포함)의 영업대출금 잔고에 대한 비율’, ‘이자반환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의 영업대출금잔고에 대한 비율’의 추이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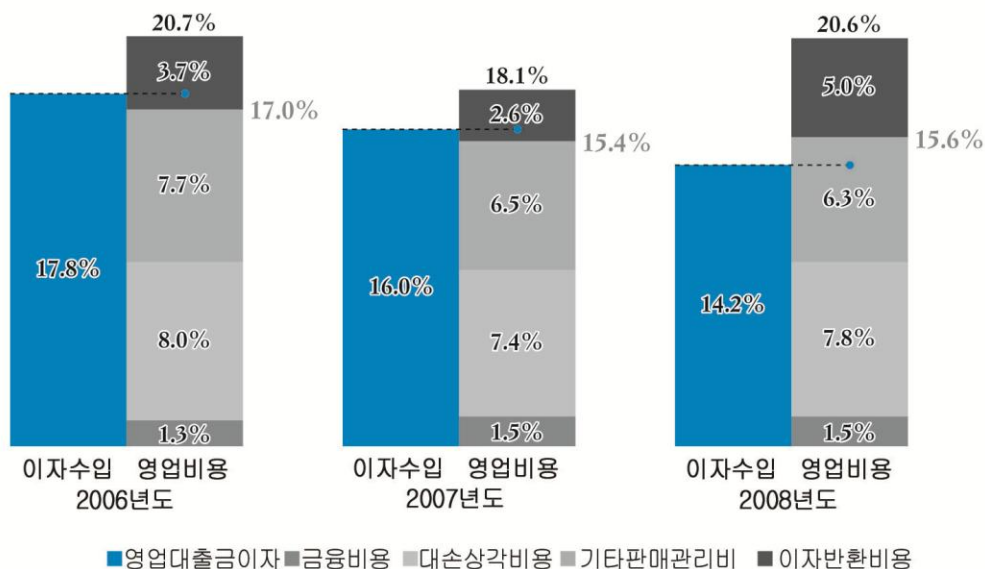
2년 사이 ‘영업대출금이자’의 비율이 17.8%에서 14.2%로 저하한 반면 ‘영업비용총액(이자반환비용을 포함)의 비율은 20.7%에서 20.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자반환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의 비율은 17.0%에서 15.6%로 저하되기는 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영업대출금이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표3-22 (협회원 조사) 수지항목의 영업대출금 잔고비율의 추이

(n=415)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액 (단위:백만엔)	비율	금액 (단위:백만엔)	비율	금액 (단위:백만엔)	비율
영업대출금잔고(평균잔고)		15,699,837	-	14,855,078	-	13,298,373	-
이자수입	영업대출금이자	2,788,001	17.8%	2,377,873	16.0%	1,889,084	14.2%
영업비용	금융비용	206,655	1.3%	227,152	1.5%	203,431	1.5%
	대손상각비용	1,252,235	8.0%	1,103,663	7.4%	1,036,141	7.8%
	기타판매관리비	1,212,721	7.7%	961,600	6.5%	841,053	6.3%
	이자반환비용	580,767	3.7%	390,155	2.6%	661,811	5.0%
	합계	3,252,378	20.7%	2,682,570	18.1%	2,742,436	20.6%
	합계(이자반환비용 제외)	2,671,611	17.0%	2,292,415	15.4%	2,080,625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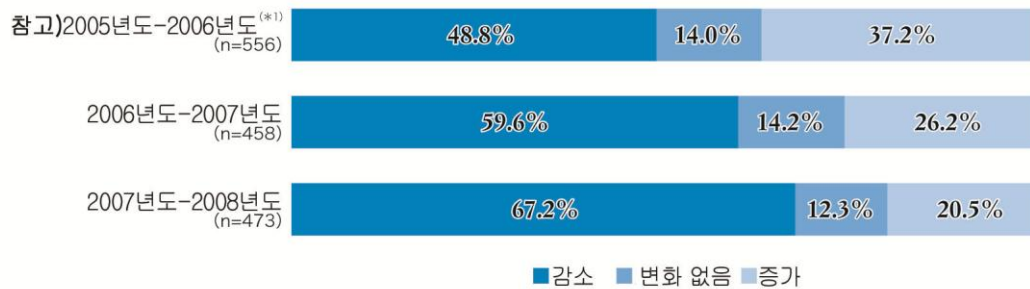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상황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기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조사하여 그 증감을 산출했다. ‘감소’라고 대답한 대부업체(협회원)의 비율은 59.6%에서 67.2%로 상승했다.

도표3-23 (협회원 조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증감 상황

	감소	변화 없음	증가	합계
참고)2005년도-2006년도 (*1)	271	78	207	556
	48.8%	14.0%	37.2%	100.0%
2006년도-2007년도	273	65	120	458
	59.6%	14.2%	26.2%	100.0%
2007년도-2008년도	318	58	97	473
	67.2%	12.3%	20.5%	100.0%



(*1) 2005년도-2006년도는 작년도 조사를 참고했다.

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잔고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의 증감 경향과 금융기관의 대출자세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대부업체(협회원)의 40.0%가 차입가능금액의 ‘대폭적인 감소’, ‘미량 감소’로 예측했으며, 43.9%가 금융기관의 대출 자세가 ‘엄격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업체별로 보면 소비자금융업체(협회원)의 경우 차입가능금액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감소’가 36.8%, 금융기관의 대출자세에 대해서는 ‘엄격해질 것이다’가 60.0%로 가장 어렵게 전망한 것을 알 수 있다.

도표3-24 (협회원 조사) 차입가능금액(차입한도)의 예측

	대폭감소	미량감소	변화없음	미량증가	대폭증가	합계
전체	88	90	252	12	3	445
	19.8%	20.2%	56.6%	2.7%	0.7%	100.0%
소비자금융업체	42	19	48	4	1	114
	36.8%	16.7%	42.1%	3.5%	0.9%	100.0%
사업자금융업체	30	27	76	4	1	138
	21.7%	19.6%	55.1%	2.9%	0.7%	100.0%
크레딧/신용판매 등	16	44	128	4	1	193
	8.3%	22.8%	66.3%	2.1%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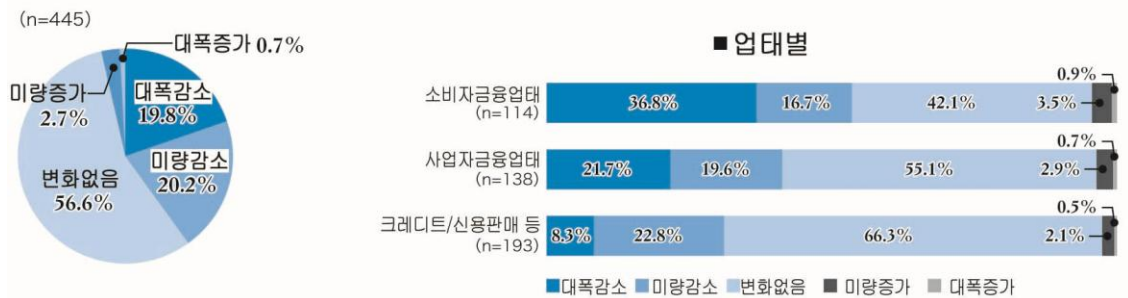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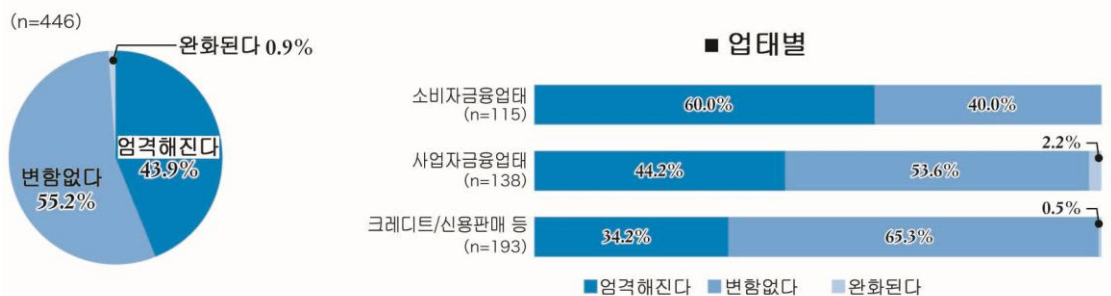


도표3-25 (협회원 조사) 금융기관의 대출자세 전망

	엄격해진다	변함없다	완화된다	합계
전체	196	246	4	446
	43.9%	55.2%	0.9%	100.0%
소비자금융업체	69	46	0	115
	60.0%	40.0%	0.0%	100.0%
사업자금융업체	61	74	3	138
	44.2%	53.6%	2.2%	100.0%
크레딧/신용판매 등	66	126	1	193
	34.2%	65.3%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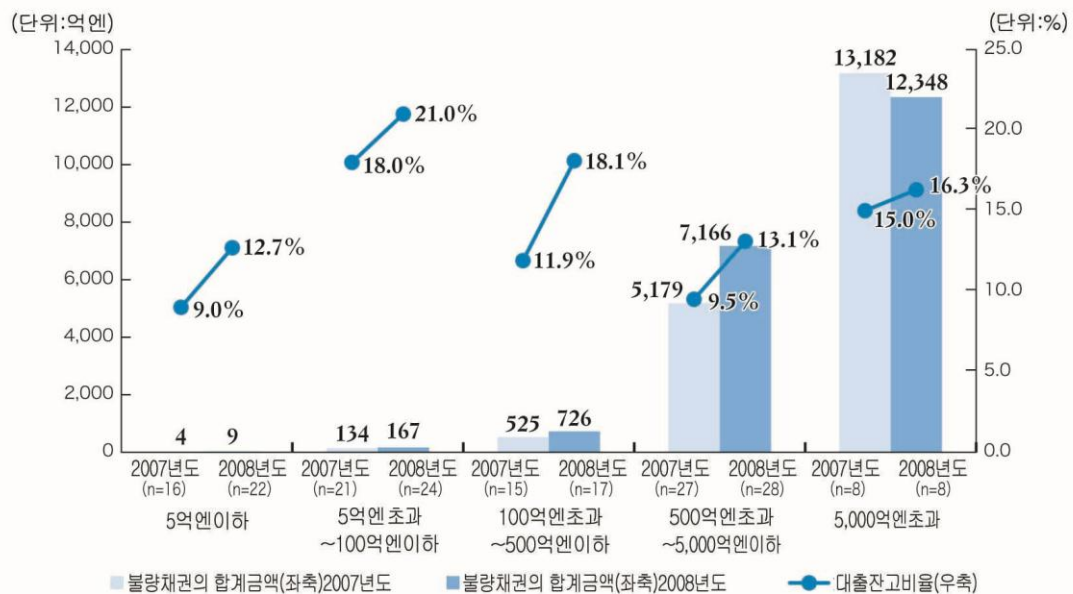
4) 불량채권의 현황

불량채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기의 불량채권금액(파산된 업체의 채권·연체채권·대출 조건 완화 채권의 합계)를 조사해 매 년도의 대출잔고에 대한 비율을 산출했다. 대출 잔고 규모별로 보면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 말까지 전반적으로 불량채권의 잔고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3-26 (협회원 조사) 불량채권의 합계금액과 대출잔고비율-대출잔고규모별

(단위: 백만엔)

		불량채권의 합계금액(좌측)	대출잔고비율(우측)
전체	2007년도 (n=87)	1,902,587	12.9%
	2008년도 (n=99)	2,041,886	15.1%
5억엔이하	2007년도 (n=16)	465	9.0%
	2008년도 (n=22)	941	12.7%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2007년도 (n=21)	13,454	18.0%
	2008년도 (n=24)	16,796	21.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2007년도 (n=15)	52,547	11.9%
	2008년도 (n=17)	72,650	18.1%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2007년도 (n=27)	517,908	9.5%
	2008년도 (n=28)	716,600	13.1%
5,000억엔초과	2007년도 (n=8)	1,318,213	15.0%
	2008년도 (n=8)	1,234,899	16.3%



5) 이자반환청구의 실태

이자반환청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2기의 ‘이자반환금(실제의 캐쉬아웃금액)’,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훼손금액’, ‘기말이자반환충당금잔고’를 조사했다. 작년도 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자반환금과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훼손금액의 합계금액의 추이(협회원)는 2006년도에 약 0.6조엔, 2007년도에 약 0.9조엔, 2008년도에 약 1.0조 엔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이자반환충당금잔고가 2조엔 전후로 추이됐다. 말하자면 이자반환청구의 영향은 과거 3년간 이자반환금 및 원금훼손금액의 합계로는 약 2.4조엔, 충당금 계상 코스트를 포함하면 약 4.4조 엔의 규모에 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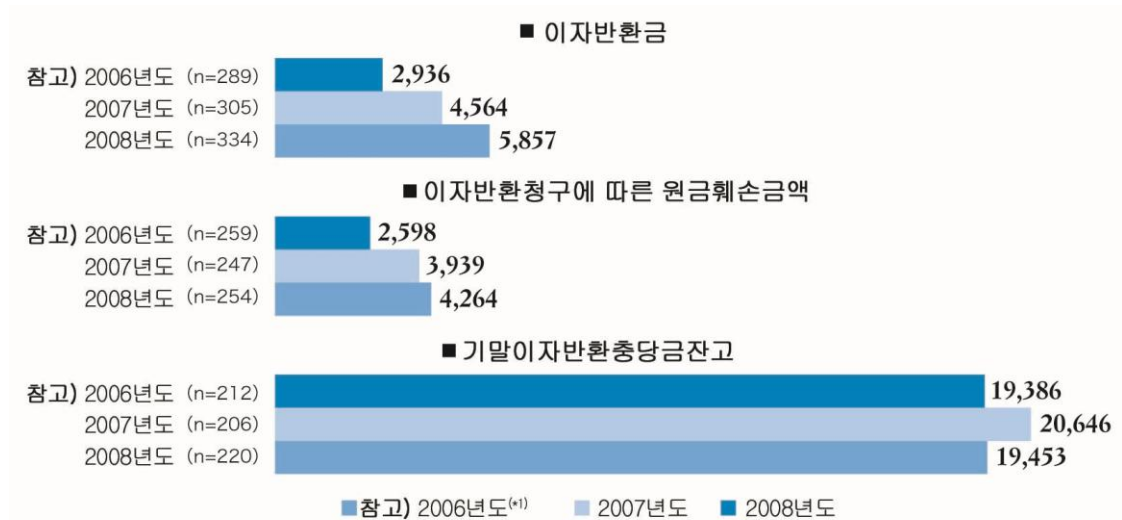
그리고 이자반환과 관련 각종 코스트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잔고가 500억엔 이하의 대부업체(협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자반환금 및 원본훼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표3-27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코스트의 추이

(단위: 백만엔)

	참고)2006년도 ^(*)	2007년도	2008년도
이자반환금	293,622	456,457	585,790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훼손금액	259,866	393,983	426,414
기말이자반환충당금잔고	1,938,637	2,064,659	1,945,370

(단위: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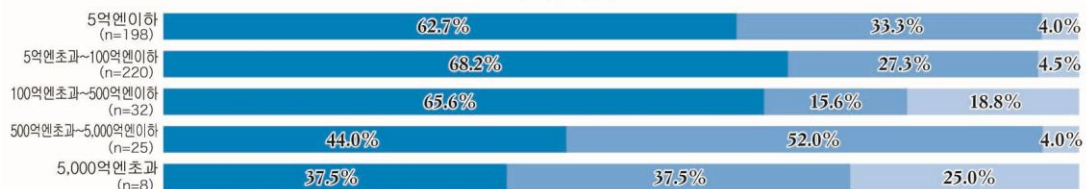


(*) 2006년도 결과는 작년 조사를 참조했다(모집단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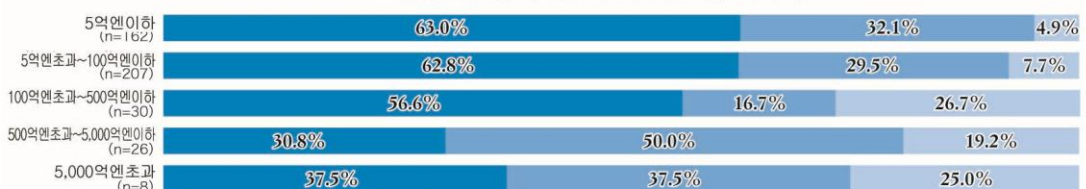
도표3-28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코스트의 전망-대출잔고규모별

		증가	변화없음	감소	합계
이자반환금	5억엔이하	124	66	8	198
		62.7%	33.3%	4.0%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150	60	10	220
		68.2%	27.3%	4.5%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21	5	6	32
		65.6%	15.6%	18.8%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11	13	1	25
		44.0%	52.0%	4.0%	100.0%
	5,000억엔초과	3	3	2	8
		37.5%	37.5%	25.0%	100.0%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훼손금액	5억엔이하	102	52	8	162
		63.0%	32.1%	4.9%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130	61	16	207
		62.8%	29.5%	7.7%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7	5	8	30
		56.6%	16.7%	26.7%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8	13	5	26
		30.8%	50.0%	19.2%	100.0%
	5,000억엔초과	3	3	2	8
		37.5%	37.5%	25.0%	100.0%
기말이자반환충당금잔고	5억엔이하	57	65	8	130
		43.8%	50.0%	6.2%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95	73	28	196
		48.5%	37.2%	14.3%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6	7	8	31
		51.6%	22.6%	25.8%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5	12	7	24
		20.8%	50.0%	29.2%	100.0%
	5,000억엔초과	1	2	5	8
		12.5%	25.0%	6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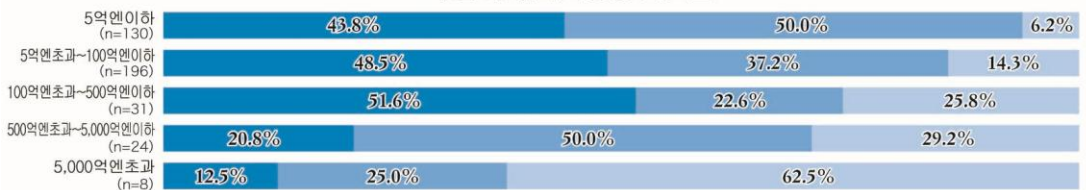
■ 이자반환금



■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훼손금액



■ 기말이자반환충당금잔고



■ 증가 ■ 변화없음 ■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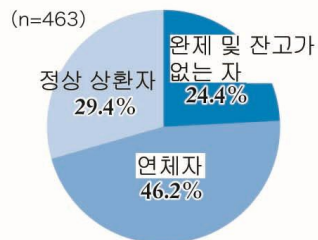
이어서 이자반환청구자의 프로필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채무자의 청구시점 채무자 구분과 청구원(請求元)에 대해 각각의 현재 인원수 비율과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채무자 구분의 조사(협회원)에서는 현재 원채무의 지불이 연체되어 있는 ‘연체자’의 청구가 가장 많은 46.2%를 차지했으며, 이미 거래가 종료된 ‘완제 및 잔고가 없는 자’의 청구는 24.4%로 작년도의 조사(22.2%)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향후 전망의 경우, 작년도에 이어 ‘완제 및 잔고가 없는 자’의 청구 증가가 68.0%로 가장 많았다.

도표3-29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청구시의 채무자 구분

	현재인원수비율 (n=463)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완제 및 잔고가 없는 자	24.4%	291	119	18	428
		68.0%	27.8%	4.2%	100.0%
연체자	46.2%	226	195	36	457
		49.4%	42.7%	7.9%	100.0%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29.4%	226	151	34	411
		55.0%	36.7%	8.3%	100.0%

■ 현재 인원수 비율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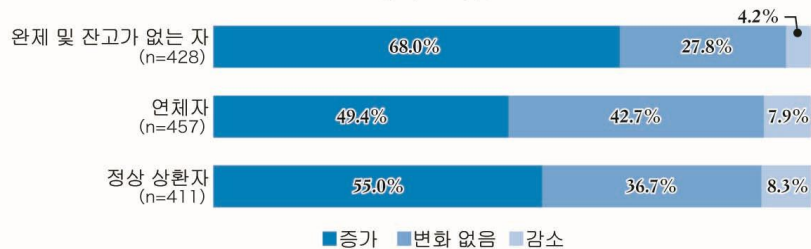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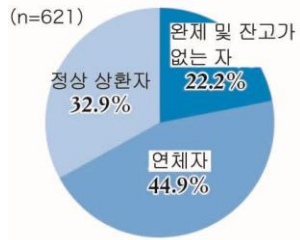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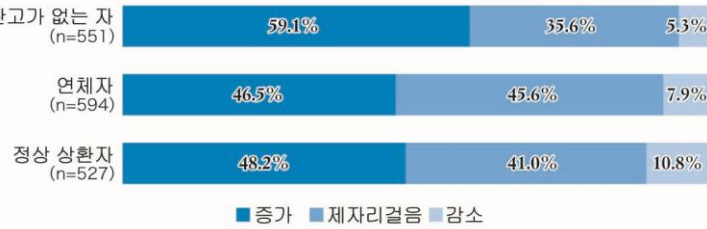
도표3-30 (작년도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청구시의 채무자 구분

	현재인원수비율 (n=621)	향후 전망			
		증가	제자리걸음	감소	합계
완제 및 잔고가 없는 자	22.2%	326	196	29	551
		59.1%	35.6%	5.3%	100.0%
연체자	44.9%	276	271	47	594
		46.5%	45.6%	7.9%	100.0%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32.9%	254	216	57	527
		48.2%	41.0%	10.8%	100.0%

■ 현재 인원수 비율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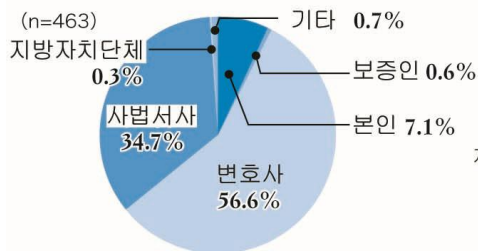


청구원에 관한 조사(협회원)에서는 현재, ‘변호사’가 56.6%, ‘사법서사’가 34.7%로 작년도에 이어 두 분야를 합하여 90%이상에 달했으며, ‘본인’이 청구한 경우는 7.1%에 머물렀다. 향후 전망으로는 ‘사법서사’의 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61.4%), 현재 거의 청구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2.6%에 달했다.

도표3-31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 청구원

	현재인원수비율 (n=463)	향후 전망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본인	7.1%	190 55.7%	139 40.8%	12 3.5%	341 100.0%
보증인	0.6%	44 21.4%	157 76.2%	5 2.4%	206 100.0%
변호사	56.6%	269 56.3%	182 38.1%	27 5.6%	478 100.0%
사법서사	34.7%	277 61.4%	155 34.4%	19 4.2%	451 100.0%
지방자치단체	0.3%	43 22.6%	142 74.8%	5 2.6%	190 100.0%
기타	0.7%	4 2.6%	135 86.5%	17 10.9%	156 100.0%

■ 현재 인원수 비율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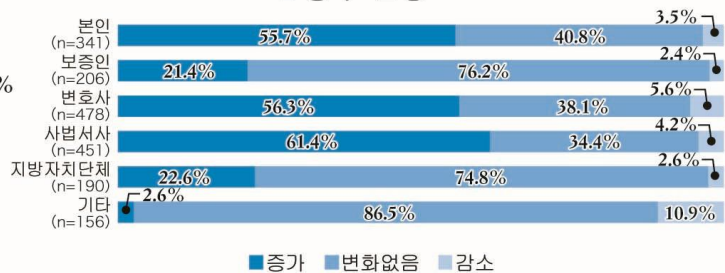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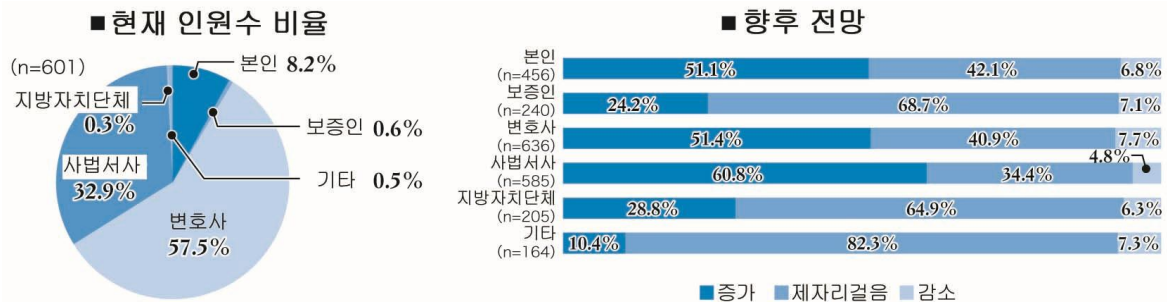


도표3-32 (작년도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 청구원

	현재인원수비율 (n=601)	향후 전망			
		증가	제자리걸음	감소	합계
본인	8.2%	233	192	31	456
		51.1%	42.1%	6.8%	100.0%
보증인	0.6%	58	165	17	240
		24.2%	68.7%	7.1%	100.0%
변호사	57.5%	327	260	49	636
		51.4%	40.9%	7.7%	100.0%
사법서사	32.9%	356	201	28	585
		60.8%	34.4%	4.8%	100.0%
지방자치단체	0.3%	59	133	13	205
		28.8%	64.9%	6.3%	100.0%
기타	0.5%	17	135	12	164
		10.4%	82.3%	7.3%	100.0%



이자반환청구를 받은 대출처 중 ‘파산처(면책 결정 및 제기 중인 대출처)’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각 업체(협회원) 모두 파산처로부터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파산처 비율이 0%이외의 응답비율을 보면 소비자 금융업체가 59.4%, 사업자 금융업체가 62.5%, 크레디트·신용판매 등이 74.3%). 그리고 소비자 금융업체와 사업자 금융업체에서는 대부업체(협회원)의 거의 절반이 파산처로부터 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표3-33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 청구처 중 파산처 비율-업태별

	파산처로부터 청구 없음	파산처 비율									합계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50%초과~ 100%	
소비자금융업 업태	63	20	6	5	14	21	15	5	2	4	155
	40.6%	59.4%									100.0%
사업자금융업 업태	24	5	2	1	4	5	6	4	6	7	64
	37.5%	62.5%									100.0%
크레딧/ 신용판매 등	43	15	11	5	18	36	20	9	6	4	167
	25.7%	7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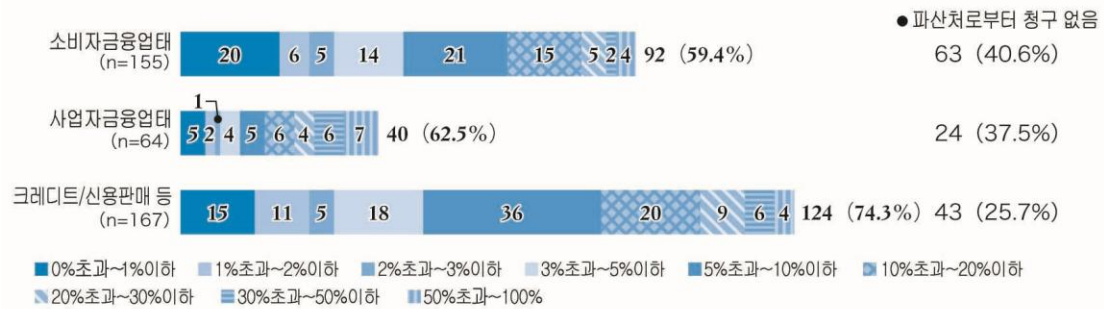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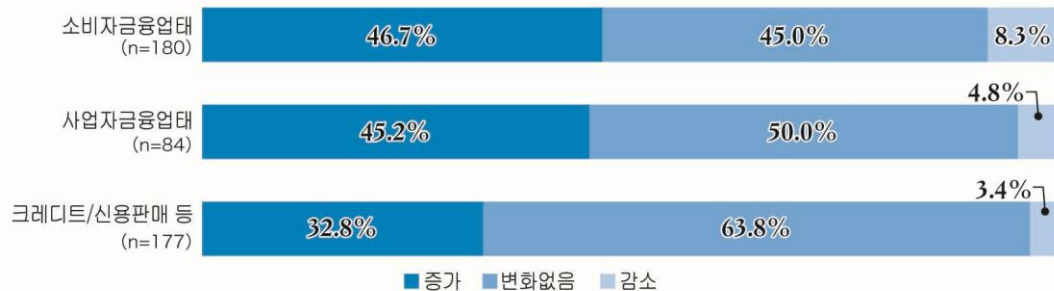


도표3-34 (협회원 조사) 이자반환 청구처 중 파산처 비율의 향후 전망-업태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합계
소비자금융업태	84	81	15	180
	46.7%	45.0%	8.3%	100.0%
사업자금융업태	38	42	4	84
	45.2%	50.0%	4.8%	100.0%
크레딧/신용판매 등	58	113	6	177
	32.8%	63.8%	3.4%	100.0%



5. 대출고객에 대한 여신자세의 변화

1) 신규대출 및 초기심사의 상황과 향후 전망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여신 자세를 파악하기 위해 대출의 실시상황과 차입신청에 대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2007년 1월) 후의 심사상황을 조사했다.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협회원)의 15.7%가 신규 대출을 정지했다고 대답했으며, 66.7%가 초기심사자세를 '엄격하게 했다'라고 대답했다.

도표3-35 (협회원 조사) 현시점의 신규대출 실시상황

	실시 중	정지했다	합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564 84.3%	105 15.7%	669 100.0%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228 75.2%	75 24.8%	3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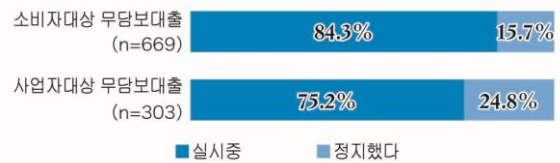


도표3-36 (협회원 조사) 2006년 12월 이후의 초기심사 상황

	엄격하게 했다	변화 없음	완화 했다	합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412 66.7%	204 33.0%	2 0.3%	618 100.0%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159 55.4%	125 43.6%	3 1.0%	2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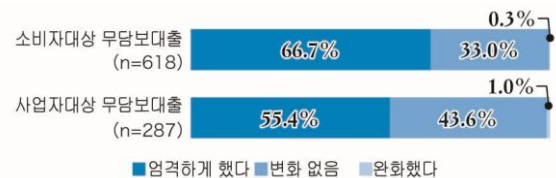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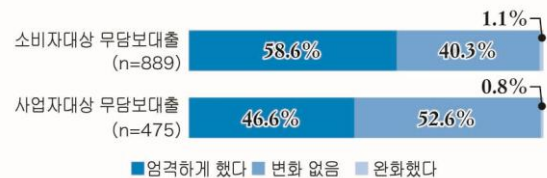


도표3-37 (작년도 협회원 조사) 2006년 12월 이후의 초기심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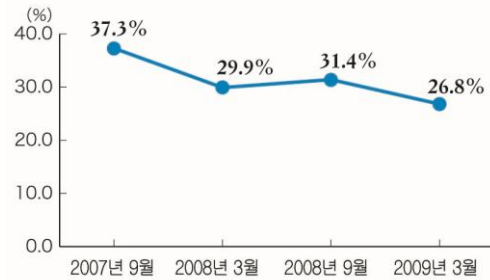
	엄격하게 했다	변화 없음	완화 했다	합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521 58.6%	358 40.3%	10 1.1%	889 100.0%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221 46.6%	250 52.6%	4 0.8%	475 100.0%



초기심사자세의 엄격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신청건수’와 ‘신규계약건수’의 실적 중 9 월과 3 월의 성악률을 산출한 결과(협회원, 소비자금융업체 중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37.3%(2007 년 9 월)에서 26.8%(2009 년 3 월)로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표3-38 (협회원 조사) 성악률의 추이-소비자금융업체,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2007 년 9 월	2008 년 3 월	2008 년 9 월	2009 년 3 월
신청건수	292,085	291,609	272,357	273,674
계약건수	108,830	87,164	85,609	73,255
성악률	37.3%	29.9%	31.4%	26.8%



이어서 초기심사에 관한 완전시행 후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의 경우, 대부업체(협회원)의 66.5%가 “엄격하게 하겠다”, 8.4%가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대답해 작년도(“엄격하게 하겠다”/61.4%) 보다 여신자세를 엄격화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

도표3-39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 후의 초기심사 상황의 전망

	엄격하게 하겠다	변화 없음	완화 예정	대출정지 예정	합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429 66.5%	158 24.5%	4 0.6%	54 8.4%	645 100.0%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162 51.6%	108 34.4%	1 0.3%	43 13.7%	3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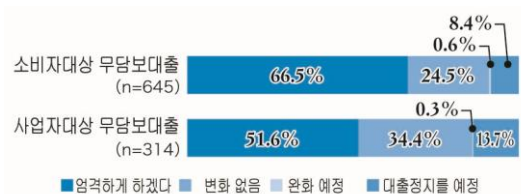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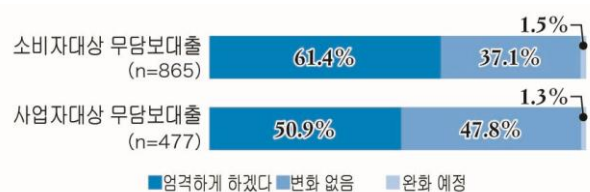


도표3-40 (작년도 협회원 조사) 향후 심사 상황의 전망

	엄격하게 하겠다	변화 없음	완화 예정	합계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531 61.4%	321 37.1%	13 1.5%	865 100.0%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243 50.9%	228 47.8%	6 1.3%	4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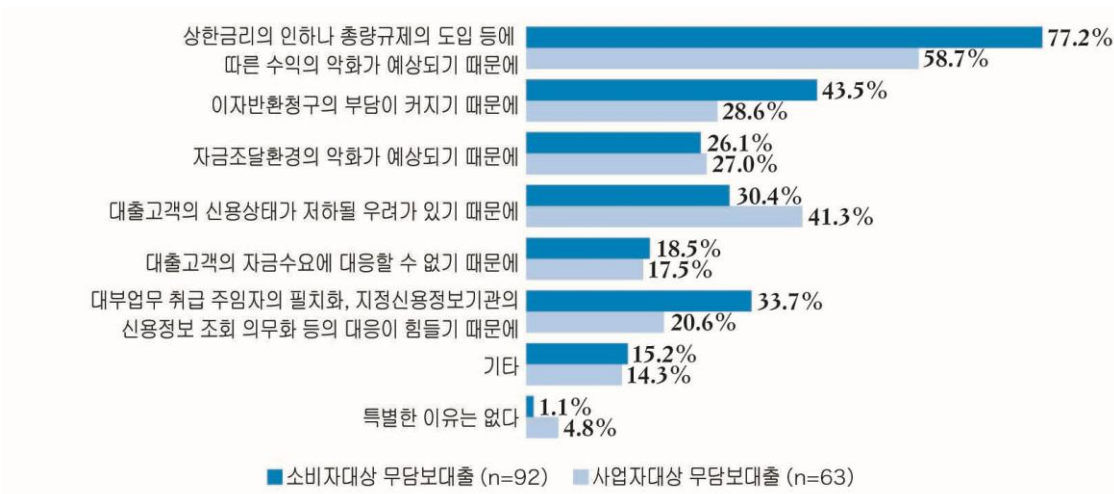


그리고 신규대출을 정지할 예정인 대부업체(협회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의 경우, “상한금리의 인하나 총량규제의 도입 등으로 수익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77.2%), “이자반환청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43.5%),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 및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의무화 등에 대한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33.7%)가 그 뒤를 이었다.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의 경우도 “상한금리의 인하나 총량규제의 도입 등에 의한 수익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58.7%),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41.3%)가 그 뒤를 이었다.

도표3-41 (협회원 조사) 신규대출을 정지하려는 이유(복수응답)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출(n=92)		사업자대상 무담보 대출(n=63)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상한금리의 인하나 총량규제의 도입 등에 따른 수익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71	77.2%	37	58.7%
이자반환청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40	43.5%	18	28.6%
자금조달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24	26.1%	17	27.0%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8	30.4%	26	41.3%
대출고객의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17	18.5%	11	17.5%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의무화 등의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31	33.7%	13	20.6%
기타	14	15.2%	9	14.3%
특별한 이유는 없다	1	1.1%	3	4.8%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① 대응이 필요한 채권비율의 현황

상한금리 인하의 도입과 함께 대출금리의 재조정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게 된 채권의 보유율(대출금리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대출고객의 비율)에 대해 ‘직전 월말의 신규 대출 고객’과 ‘2006 년 중간기말의 정상 대출고객’이라는 두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직전 월말시점의 신규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잔고 5 억엔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협회원) 중 37.5%가 ‘이미 대응 완료(대응이 필요한 채권의 보유율이 0%)’라고 대답한 반면 20.5%가 ‘대부분 미대응(대응이 필요한 채권의 보유율이 80% 초과)’라고 대답했다.

2006 년 중간기말시점의 정상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잔고 5 억엔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협회원) 중 33.4%가 ‘이미 대응 완료(대응이 필요한 채권의 보유율이 0%)’라고 대답한 반면 27.3%가 ‘대부분 미대응(대응이 필요한 채권의 보유율이 80% 초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출잔고가 5,000 억 엔이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협회원 8 개 업체) 중 이미 대응이 완료되었다고 대답한 대부업체는 한 개 업체(12.5%)에 지나지 않았으며, 네 곳(50.0%)이 ‘절반 이상이 미대응(대응이 필요한 채권의 보유율이 60% 초과)’이라고 대답했다.

도표3-42 (협회원 조사) 상한금리의 인하로 대응이 필요한 채권비율별 사업자수 구성비
<신규대출고객(직전 시점)>-대출잔고규모별-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0%	0%초과~5%이하	5%초과~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100%	합계
5억엔이하	33	3	6	9	5	5	9	18	88
	37.5%	3.4%	6.8%	10.2%	5.7%	5.7%	10.2%	20.5%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48	4	3	0	2	1	2	3	63
	76.1%	6.3%	4.8%	0.0%	3.2%	1.6%	3.2%	4.8%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4	0	0	2	2	0	0	0	18
	77.8%	0.0%	0.0%	11.1%	11.1%	0.0%	0.0%	0.0%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14	1	0	1	0	0	0	0	16
	87.5%	6.3%	0.0%	6.3%	0.0%	0.0%	0.0%	0.0%	100.0%
5,000억엔초과	6	0	0	1	0	0	0	1	8
	75.0%	0.0%	0.0%	12.5%	0.0%	0.0%	0.0%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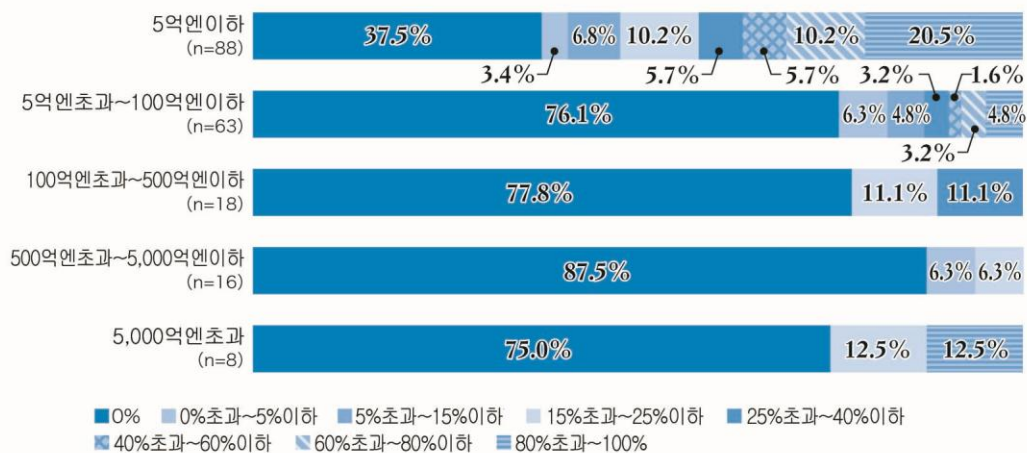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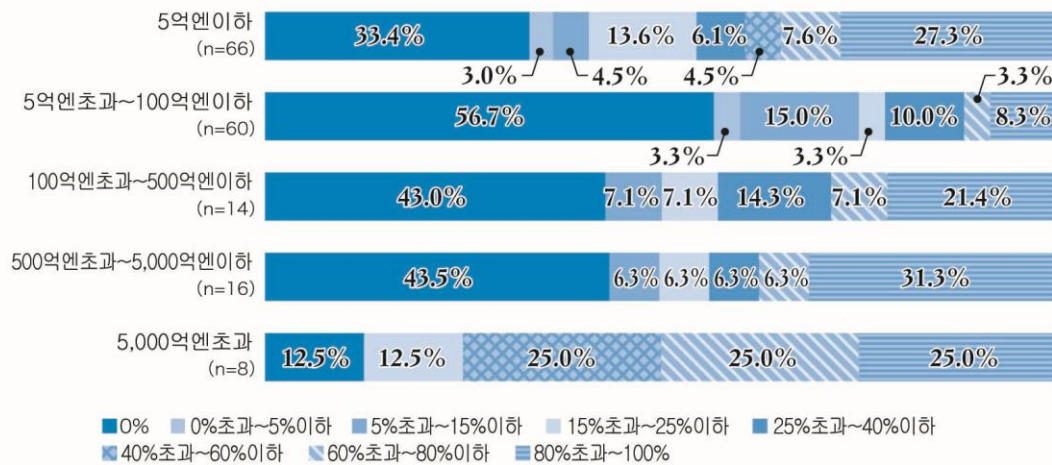


도표3-43 (협회원 조사) 상한금리 인하로 대응이 필요한 채권비율별 사업자수 구성비
 <기존대출고객(2006년 중간기말시점)>-대출잔고규모별-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0%	0%초과~5%이하	5%초과~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100%	합계
5억엔이하	22 33.4%	2 3.0%	3 4.5%	9 13.6%	4 6.1%	3 4.5%	5 7.6%	18 27.3%	66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34 56.8%	2 3.3%	9 15.0%	2 3.3%	6 10.0%	0 0.0%	2 3.3%	5 8.3%	60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6 43.0%	0 0.0%	1 7.1%	1 7.1%	2 14.3%	0 0.0%	1 7.1%	3 21.4%	14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7 43.5%	0 0.0%	1 6.3%	1 6.3%	1 6.3%	0 0.0%	1 6.3%	5 31.3%	16 100.0%
5,000억엔초과	1 12.5%	0 0.0%	0 0.0%	1 12.5%	0 0.0%	2 25.0%	2 25.0%	2 25.0%	8 100.0%



덧붙여 작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직전 월말시점의 신규대출고객의 경우, 대출잔고가 5 억엔이 넘는 대부업체(협회원)는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비해 대출잔고가 5 억엔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협회원)는 대응의 지연이 현저하다. 또 2006 년 중간기말시점의 정상 대출고객의 경우, 전체적으로 ‘직전 월말 신규대출고객’ 보다 대응이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표3-44 (작년도 협회원 조사) 상한금리 인하로 대응이 필요한 채권비율별 사업자수
구성비<신규대출고객(직전 시점)>-대출잔고규모별-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0%	0%초과~5%이하	5%초과~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100%	합계
5억엔이하	138	54	53	41	26	36	71	419
	33.0%	12.9%	12.6%	9.8%	6.2%	8.6%	16.9%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129	20	11	14	10	4	14	202
	63.9%	9.9%	5.4%	6.9%	5.0%	2.0%	6.9%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9	1	3	1	3	0	2	29
	65.7%	3.4%	10.3%	3.4%	10.3%	0.0%	6.9%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17	4	0	1	1	1	1	25
	68.0%	16.0%	0.0%	4.0%	4.0%	4.0%	4.0%	100.0%
5,000억엔초과	5	2	0	0	0	1	0	8
	62.5%	25.0%	0.0%	0.0%	0.0%	12.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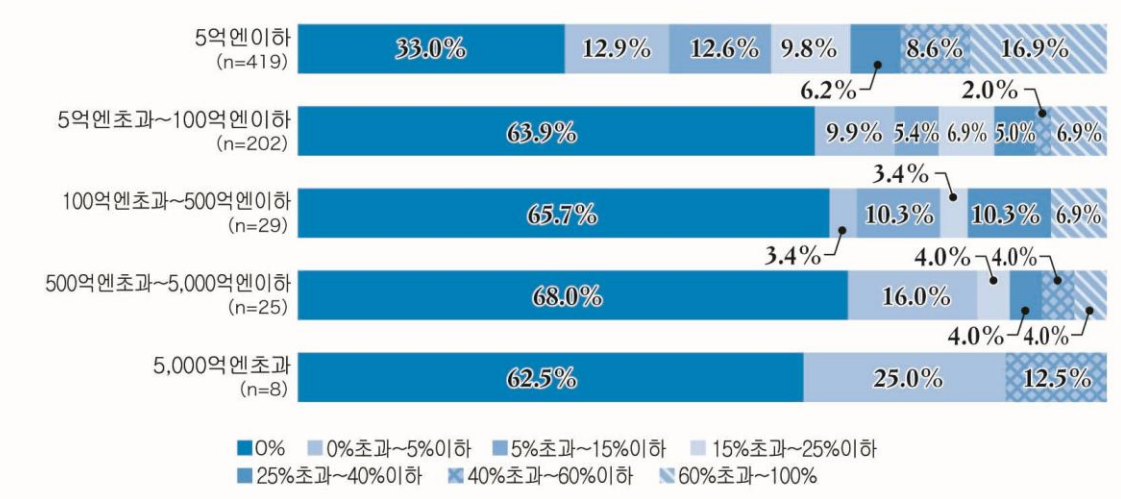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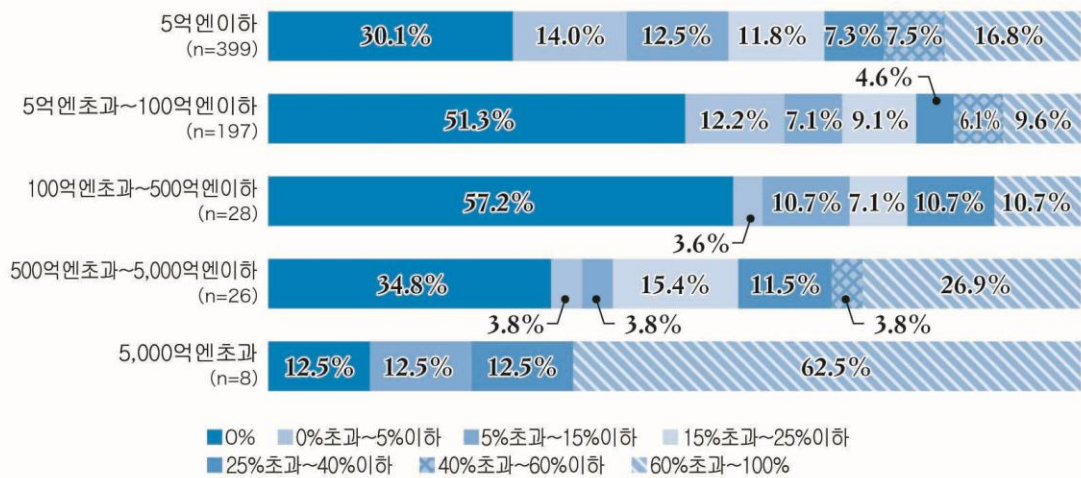


도표3-45 (작년도 협회원 조사) 상한금리 인하로 대응이 필요한 채권비율별 사업자수
구성비<기준대출고객(2006년 중간기말시점)>-대출잔고규모별-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0%	0%초과~ 5%이하	5%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100%	합계
5억엔이하	120 30.1%	56 14.0%	50 12.5%	47 11.8%	29 7.3%	30 7.5%	67 16.8%	399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101 51.3%	24 12.2%	14 7.1%	18 9.1%	9 4.6%	12 6.1%	19 9.6%	197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16 57.2%	1 3.6%	3 10.7%	2 7.1%	3 10.7%	0 0.0%	3 10.7%	28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9 34.8%	1 3.8%	1 3.8%	4 15.4%	3 11.5%	1 3.8%	7 26.9%	26 100.0%
5,000억엔초과	1 12.5%	0 0.0%	1 12.5%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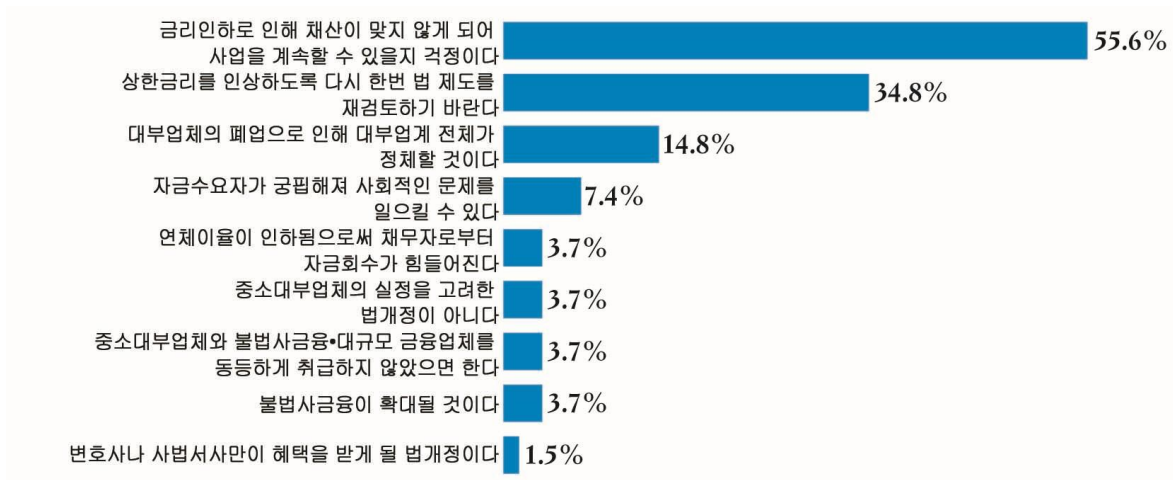
② 상한금리 인하에 관한 ‘의견’의 경향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금리인하로 인해 재산이 맞지 않게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상한금리를 인상하도록 다시 한번 법 제도를 재검토하기 바란다”와 같은 경영환경의 악화를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대부업계 전체가 정체될 것이다”, 자금수요자가 궁핍해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와 같은 대부업체나 자금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도표3-46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기술식 응답에 근거한 분석)

(n=135)

	응답자수	응답율
금리인하로 인해 재산이 맞지 않게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75	55.6%
상한금리를 인상하도록 다시 한번 법 제도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47	34.8%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대부업계 전체가 정체될 것이다	20	14.8%
자금수요자가 궁핍해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0	7.4%
연체이율이 인하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자금회수가 힘들어진다는	5	3.7%
중소대부업체의 실정을 고려한 법개정이 아니다	5	3.7%
중소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대규모 금융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5	3.7%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것이다	5	3.7%
변호사나 사법서사만이 혜택을 받게 될 법개정이다	2	1.5%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 2) 기술식 응답 분석 시, 비협회원의 집계대상은 업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출잔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답변 업체 343사이다.

3) 총량규제 도입에 대한 대응(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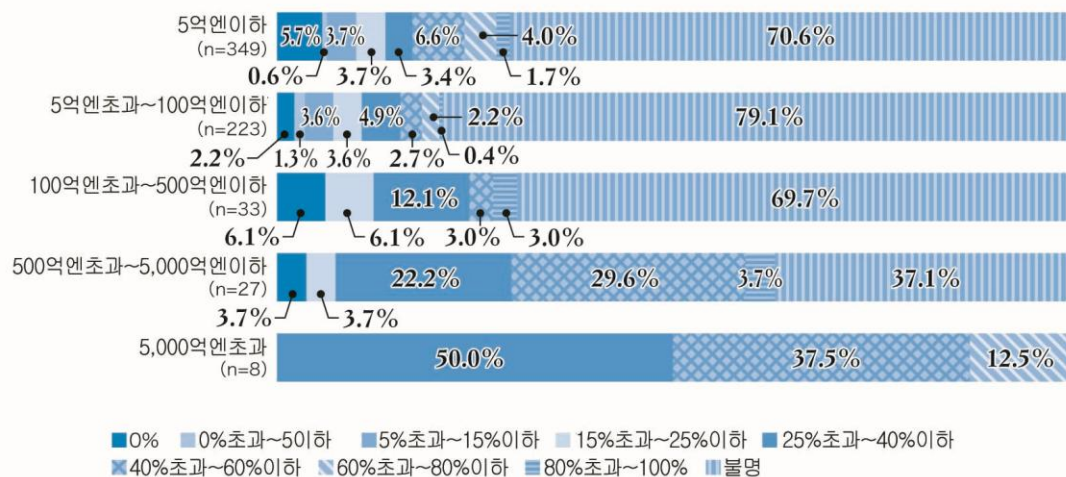
① 규제 해당 채권의 보유율 상황

총량규제의 도입에 따라 규제에 해당될 것 같은 채권의 보유율(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의 비율)에 대해 2008 년도 말의 정상 대출고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대출잔고가 5,000 억 엔이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협회원 8 사) 중 4 사(50.0%)가 ‘절반 정도가 미대응(규제해당채권의 보유율이 40% 초과)’이라고 답했으며, 4 사(50.0%)가 ‘대응 중(규제해당채권 비율이 25% 초과~40% 이하)’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출잔고가 500 억 엔 이하인 대부업체(협회원)는 약 70%가 ‘불명(규제 해당 채권의 보유율을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도표3-47 (협회원 조사) 총량규제 해당 채권 보유율별 사업자수 구성비
-대출잔고규모별-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

	0%	0%초과~5%이하	5%초과~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100%	불명	합계
5억엔이하	20	2	13	13	12	23	14	6	246	349
	5.7%	0.6%	3.7%	3.7%	3.4%	6.6%	4.0%	1.7%	70.6%	100.0%
5억엔초과~100억엔이하	5	3	8	8	11	6	5	1	176	223
	2.2%	1.3%	3.6%	3.6%	4.9%	2.7%	2.2%	0.4%	79.1%	100.0%
100억엔초과~500억엔이하	2	0	0	2	4	1	0	1	23	33
	6.1%	0.0%	0.0%	6.1%	12.1%	3.0%	0.0%	3.0%	69.7%	100.0%
500억엔초과~5,000억엔이하	1	0	0	1	6	8	0	1	10	27
	3.7%	0.0%	0.0%	3.7%	22.2%	29.6%	0.0%	3.7%	37.1%	100.0%
5,000억엔초과	0	0	0	0	4	3	1	0	0	8
	0.0%	0.0%	0.0%	0.0%	50.0%	37.5%	12.5%	0.0%	0.0%	100.0%



② 총량규제의 적용 제외 및 예외 대출에 대한 대응 상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적용 제외^(*1) 및 예외 대출^(*2)에 대한 법개정 전 취급상황과 완전시행 후의 취급 예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완전시행 후에도 “취급하겠다”나 “검토 중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법개정 전에도 취급을 하고 있던 대부업체의 비율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일정한 대환’을 제외한 모든 취급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전업주부(전업남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16.9%의 대부업체가 취급을 정지했으며, 현재 “취급하고 있다”나 “취급하고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정지했다”라고 한 대부업체의 비율은 54.2%인데 비해 완전시행 후에는 “취급하겠다”, “취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대답한 대부업체의 비율은 15.3%에 머물렀다. 그리고 개인사업주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 “취급하고 있다”, “취급하고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정지했다”라고 한 대부업체의 비율은 50.9%인데 비해 완전 시행 후에 “취급하겠다”, “취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는 39.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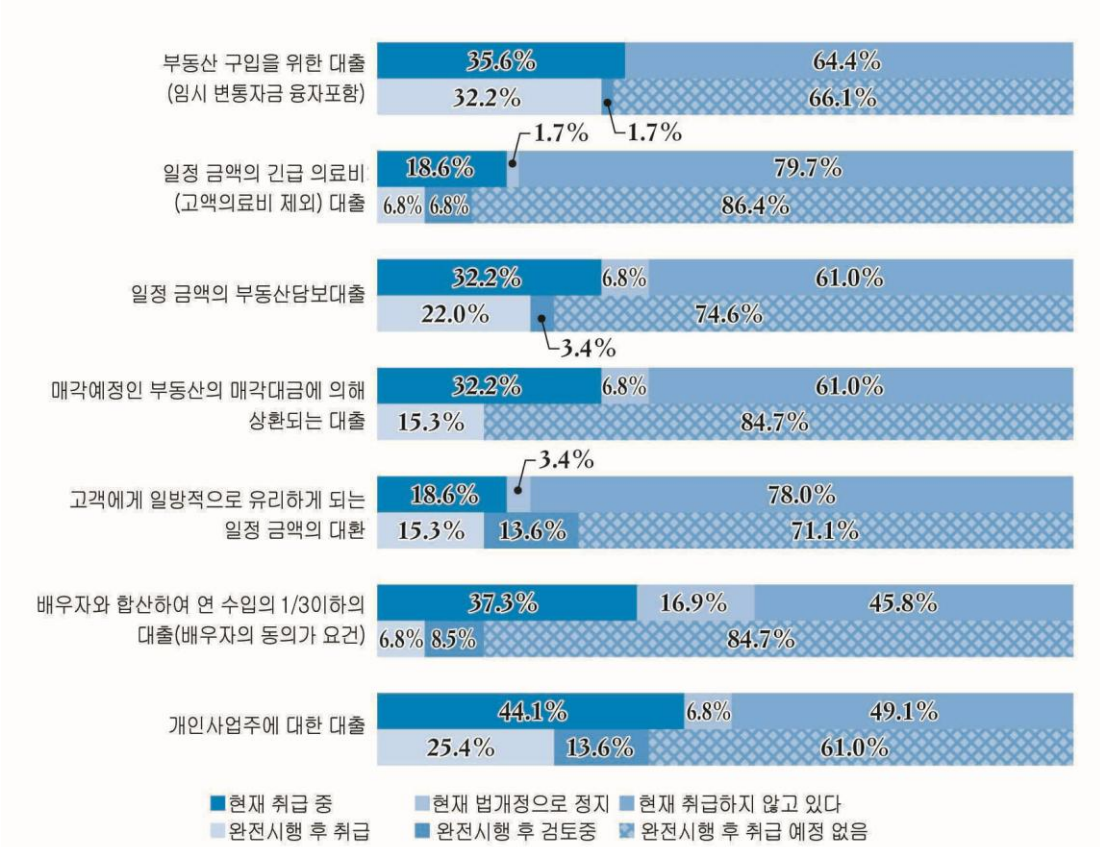
(*1) 주택의 신축 및 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용자계약의 경우, 개인인 채무자가 평상시 이용하는 대출과는 달리 통상 적절한 상환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저리에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며, 다중채무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총량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주택용자계약 이외에도 ①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한 대출, ②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동차 담보대출, ③ 일정금액 이른바 고액 의료비의 대출, ④ 어음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⑤ 금융상품 거래업체가 대출하는 500 만 엔을 넘는 일정 금액의 유가증권담보용자, ⑥ 금융상품 거래업체가 대출하는 500 만 엔을 넘는 일정금액의 투자신탁 수익증권담보용자, ⑦ 매개계약의 경우도 총량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2) 연 수입의 1/3 을 초과한 대출일지라도 ① 일정금액의 유가증권담보대출, ② 일정금액의 부동산담보대출, ③ 매각예정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되는 대출, ④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일정금액의 대환, ⑤ 일정금액의 긴급 의료비(고액의료비 제외) 대출, ⑥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 수입의 1/3 이하인 일정 금액의 대출(배우자의 동의, 부부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수입증명서류의 제출이 요건), ⑦ 일정 금액의 개인사업주에 대한 대출(실질 조사 및 결산서 등의 서류 제출에 의해 사업의 실태 확인, 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 요건), ⑧ 신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개인고객의 경우, ‘개인고객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계약’을 총량규제의 예외로 한다.

도표3-48 완전시행조사-총량규제의 적용제외 및 예외대출 대응의
법개정 전 취급과 완전시행 후의 취급

(n=59)

	개정 전의 취급			완전시행 후의 취급		
	현재 취급 중	현재 법개정 으로 정지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다	완전시행 후 취급하겠다	완전시행 후 검토 중	완전시행 후 취급예정 없음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임시 변동자금 용자 포함)	21 35.6%	0 0.0%	38 64.4%	19 32.2%	1 1.7%	39 66.1%
일정 금액의 긴급 의료비 (고액의료비 제외) 대출	11 18.6%	1 1.7%	47 79.7%	4 6.8%	4 6.8%	51 86.4%
일정 금액의 부동산담보대출	19 32.2%	4 6.8%	36 61.0%	13 22.0%	2 3.4%	44 74.6%
매각예정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의해 상환되는 대출	19 32.2%	4 6.8%	36 61.0%	9 15.3%	0 0.0%	50 84.7%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일정 금액의 대환	11 18.6%	2 3.4%	46 78.0%	9 15.3%	8 13.6%	42 71.1%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 수입의 1/3이하의 대출(배우자의 동의가 요건)	22 37.3%	10 16.9%	27 45.8%	4 6.8%	5 8.5%	50 84.7%
개인사업주에 대한 대출	26 44.1%	4 6.8%	29 49.1%	15 25.4%	8 13.6%	36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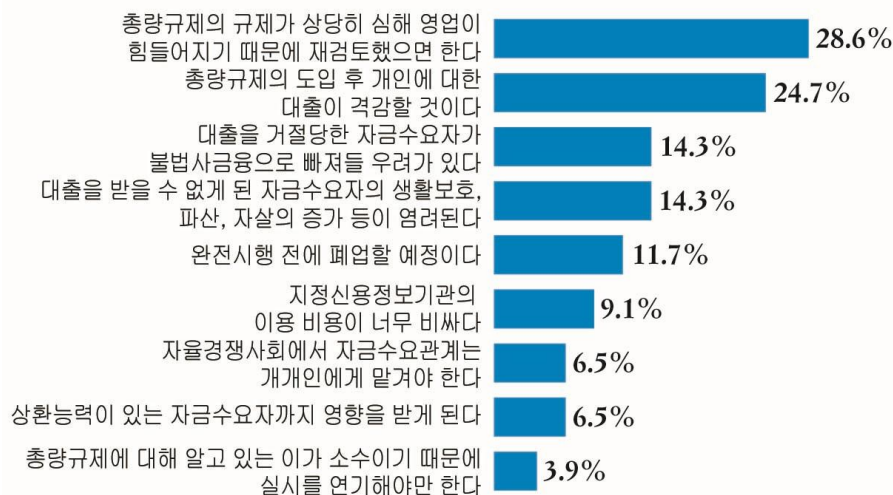
③ 총량규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의 경향

총량규제의 도입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총량규제가 상당히 규제가 심해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재검토했으면 한다”와 “총량규제가 도입되면 개인에 대한 대출이 격감할 것이다”와 같은 경영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총량규제에 의해 대출을 거절당한 자금수요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자금수요자의 생활보호, 파산, 자살의 증가 등이 염려된다”와 같은 자금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도표3-49 총량규제에 대한 의견(기술식 응답을 근거로 분석)

(n=77)

	응답자수	응답율
총량규제의 규제가 상당히 심해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재검토했으면 한다	22	28.6%
총량규제의 도입 후 개인에 대한 대출이 격감할 것이다	19	24.7%
총량규제에 의해 대출이 거절당한 자금수요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11	14.3%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자금수요자의 생활보호, 파산, 자살의 증가 등이 염려된다	11	14.3%
완전시행 전에 폐업할 예정이다	9	11.7%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이용 비용이 너무 비싸다	7	9.1%
자율경쟁사회에서 자금수요관계는 개개인에게 맡겨야만 한다	5	6.5%
상환능력이 있는 자금수요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5	6.5%
총량규제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소수이기 때문에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	3	3.9%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 2) 기술식 응답 분석 시, 비협회원의 집계대상은 업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출잔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답변 업체 343사이다.

4) 완전시행의 영향을 받는 자금수요자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에 따른 대부업체의 여신자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여신대상고객을 속성별로 분류하여(직전 월말의 고객 수 비율), 각 그룹의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가능성’을 조사했다. 소비자대상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협회원)의 60%가 넘는 업체가 법개정의 완전시행의 영향을 받는 개인으로 ‘자영업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주부(전업남편)’, ‘연 수입 400 만 엔 미만의 소득자 층’을 들었다.

도표3-50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가능성
<소비자 대상 대출-자금수요자의 직업별>

	직업별 구성비 (n=483)	완전시행의 영향 가능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르겠다	합계
공무원/비영리단체 직원	4.2%	159	58	131	348
		45.7%	16.7%	37.6%	100.0%
회사/단체의 경영자/임원	6.7%	168	60	132	360
		46.6%	16.7%	36.7%	100.0%
급여소득자	45.6%	300	57	144	501
		59.9%	11.4%	28.7%	100.0%
자영업자	21.8%	299	56	127	482
		62.1%	11.6%	26.3%	100.0%
교직원/의사/변호사 등	1.3%	138	54	116	308
		44.8%	17.5%	37.7%	100.0%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8.6%	261	38	93	392
		66.6%	9.7%	23.7%	100.0%
주부(전업남편)	6.6%	259	36	86	381
		68.0%	9.4%	22.6%	100.0%
무직/기타	5.2%	206	45	93	344
		59.9%	13.1%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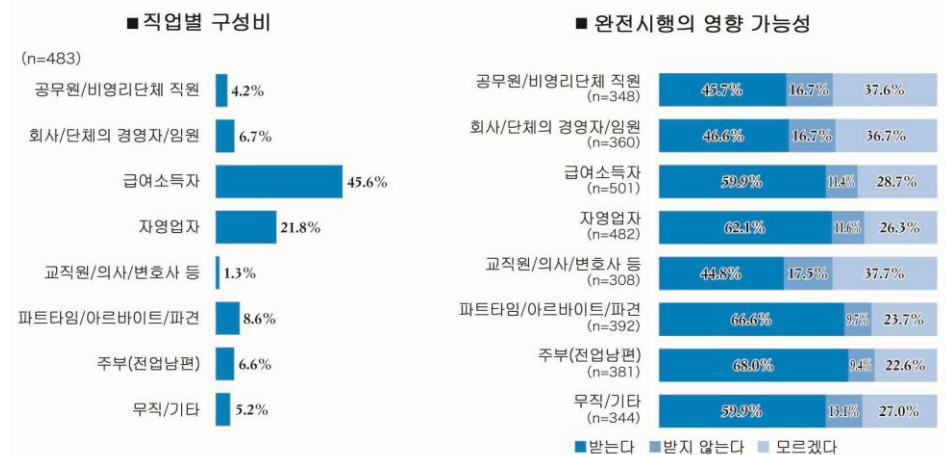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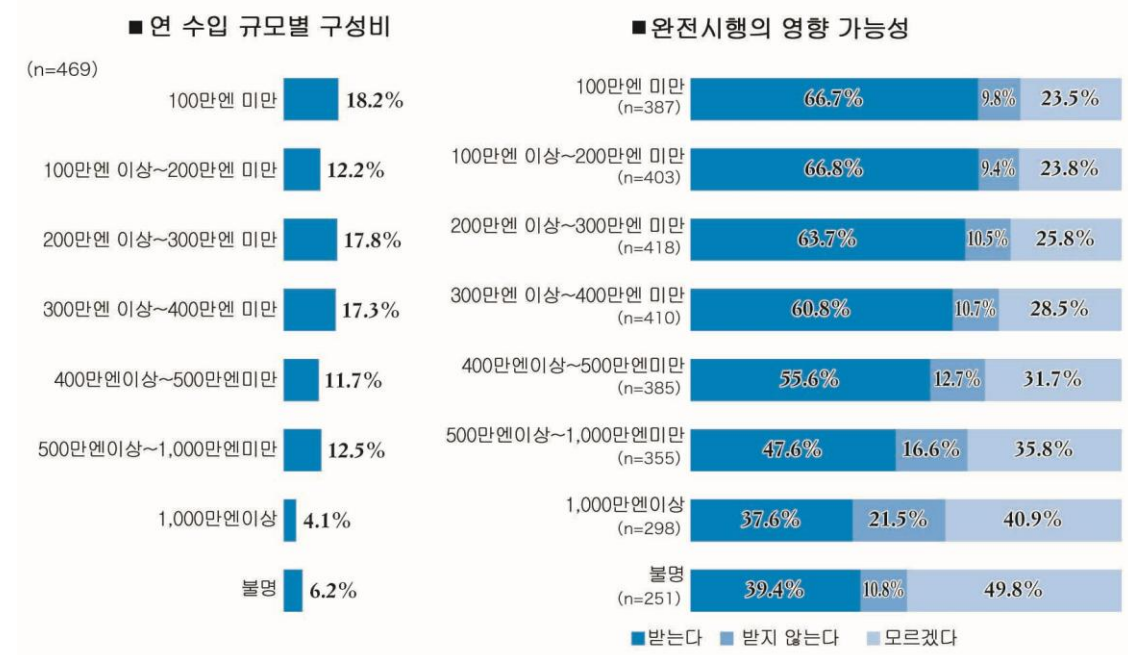


도표3-51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가능성
<소비자 대상 대출-자금수요자의 연 수입 규모별>

	연 수입 규모별 구성비(n=469)	완전시행의 영향 가능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르겠다	합계
100 만엔 미만	18.2%	258	38	91	387
		66.7%	9.8%	23.5%	100.0%
100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	12.2%	269	38	96	403
		66.8%	9.4%	23.8%	100.0%
200 만엔 이상 ~300 만엔 미만	17.8%	266	44	108	418
		63.7%	10.5%	25.8%	100.0%
300 만엔 이상 ~400 만엔 미만	17.3%	249	44	117	410
		60.8%	10.7%	28.5%	100.0%
400 만엔 이상 ~500 만엔 미만	11.7%	214	49	122	385
		55.6%	12.7%	31.7%	100.0%
5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	12.5%	169	59	127	355
		47.6%	16.6%	35.8%	100.0%
1,000 만엔 이상	4.1%	112	64	122	298
		37.6%	21.5%	40.9%	100.0%
불명	6.2%	99	27	125	251
		39.4%	10.8%	49.8%	100.0%



사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협회원)의 54.5%가 법개정의 완전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주’를 들었다. 또한 대부업체(협회원)의 50.5%가 ‘종업원수 10 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법개정의 완전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했다.

도표3-52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가능성
<사업자대상 대출-자금수요자의 회사 형태별>

	회사 형태별 구성비 (n=287)	완전시행의 영향 가능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르겠다	합계
상장주식회사	2.3%	31	37	65	133
		23.3%	27.8%	48.9%	100.0%
비상장주식회사	36.0%	95	71	90	256
		37.1%	27.7%	35.2%	100.0%
유한회사	13.5%	106	43	70	219
		48.4%	19.6%	32.0%	100.0%
합명/합자회사	1.3%	52	22	56	130
		40.0%	16.9%	43.1%	100.0%
개인사업주	32.2%	140	40	77	257
		54.5%	15.6%	29.9%	100.0%
기타	9.2%	57	36	72	165
		34.6%	21.8%	43.6%	100.0%
불명	5.5%	39	25	66	130
		30.0%	19.2%	5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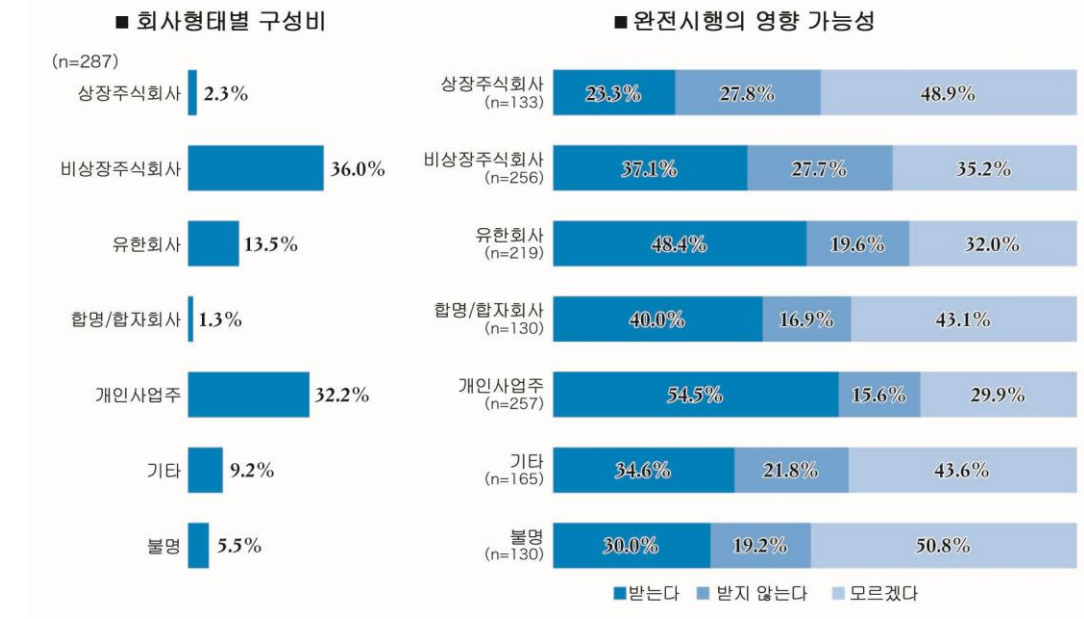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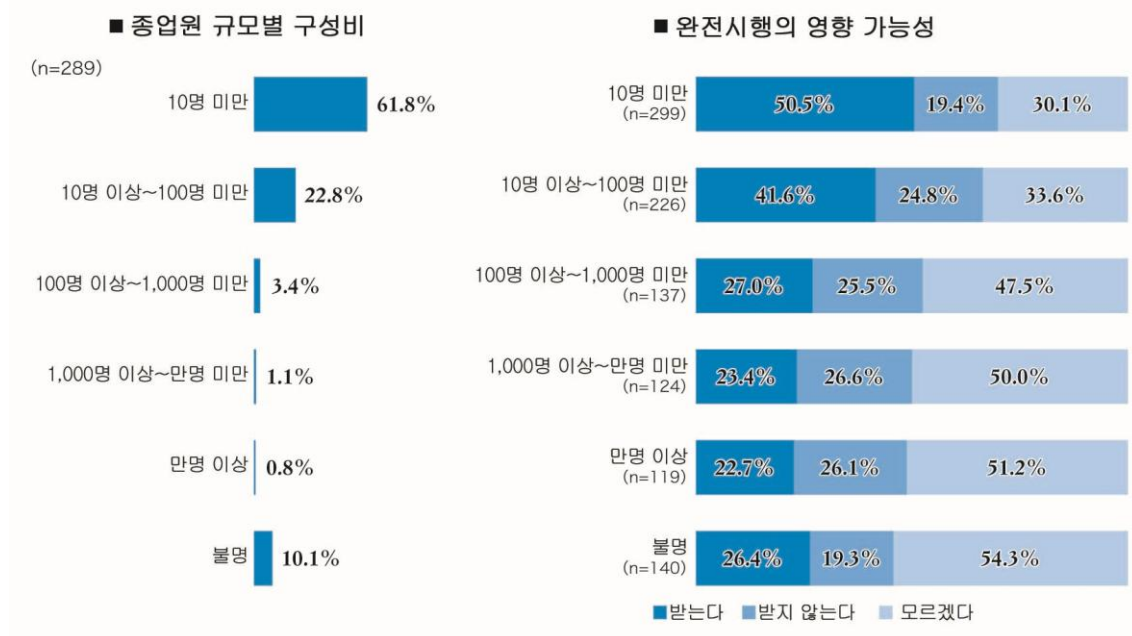


도표3-53 (협회원 조사)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가능성
<사업자 대상 대출-자금수요자의 종업원 규모별>

	종업원 규모별 구성비(n=289)	완전시행의 영향 가능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르겠다	합계
10명 미만	61.8%	151 50.5%	58 19.4%	90 30.1%	299 100.0%
10명 이상 ~100명 미만	22.8%	94 41.6%	56 24.8%	76 33.6%	226 100.0%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3.4%	37 27.0%	35 25.5%	65 47.5%	137 100.0%
1,000명 이상 ~만명 미만	1.1%	29 23.4%	33 26.6%	62 50.0%	124 100.0%
만명 이상	0.8%	27 22.7%	31 26.1%	61 51.2%	119 100.0%
불명	10.1%	37 26.4%	27 19.3%	76 54.3%	140 100.0%



6. 본 장의 요약

1) 대부업계의 실태

① 최근 동향

- 대출금리대별 잔고의 경우,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과 사업자대상 무담보대출 모두 20%이하의 금리대로 변경되기 시작하고 있다.

② 향후 전망

-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특히 총량규제의 도입을 주된 요인으로 대출잔고의 감소 경향이 향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2) 완전시행에 대한 대응상황

① 각 개정항목에 대한 대응

- 완전시행시의 대응에서는 대출잔고가 5 억엔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의 경우, 전반적인 개정항목에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한 대답이 눈에 띈다. 특히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한 가입률은 소규모 대부업체의 경우 41.5%에 머물렀다.

②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 가능성

- 대부업체의 72.2%가 완전시행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18.9%가 “완전시행 후의 사업 계속에 대해 모르겠다”, 8.5%가 “완전시행 때까지나 혹은 완전시행 후에 폐업하겠다”라고 대답했다.
- 폐업이나 민사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67.4%가 폐업 후에도 기존 채권의 회수를 계속할 의향이였으며, 향후 실질적으로 대부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간주 대부업체’의 증가가 예상된다.

3) 대부업체의 경영실태

① 손익의 현황과 예측

- 2008 년도의 손익실적의 경우, 대부업체의 50.2%가 수익이 감소했다고 했으며, 38.5%가 수익이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2009 년도의 손익 예측의 경우, 48.5%가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37.2%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완전시행 후의 손익 예측의 경우는 대부업체의 77.3%가 2008 년도 대비 수익이 감소하리라고 예측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상태가 계속되리라고 예측된다.

② 사업코스트의 구조

- 최근 3 기의 영업대출금 이자의 영업대출금 잔고에 대한 비율은 17.8%에서 14.2%로 저하됐다. 이자반환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의 비율은 17.0%에서 15.6%로 저하되었으며, 2008 년도에는 영업대출금 이자의 비율을 초과할 정도로 사업구조가 악화되었다.

③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상황

- 소비자 금융업태의 60.0%가 금융기관의 융자자세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앞으로도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④ 불량채권의 현황

- 최근 2 기의 대출잔고에 대한 불량채권의 잔고비율이 12.9%에서 15.1%로 상승해 채권의 불량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자반환청구의 실태

- 2006 년도 이후, 이자반환금과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본훼손금액의 합계금액은 약 0.6 조 엔, 약 0.9 조 엔, 약 1.0 조 엔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자반환청구의 영향은 과거 3 년간 이자반환금의 청구와 원본훼손금액이 약 2.4 조엔, 총당금계상 코스트를 포함하면 약 4.4 조 엔의 규모에 달했다.
- 대부업체의 68.0%가 완제 및 잔고가 없는 고객의 이자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구원은 '변호사'가 56.6%, '사법서사'가 34.7%로 두 부문을 합하면 90%이상에 이른다.

4) 대출고객에 대한 여신자세의 변화

① 신규대출 및 초기심사의 상황과 향후 전망

- 소비자대상 무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협회원)의 15.7%가 신규 대출을 정지했다고 대답했으며, 66.7%가 초기심사자세를 엄격하게 했다고 대답했다.
- 초기심사에 관한 완전시행 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66.5%가 “엄격하게 할 것이다”, 8.4%가 “대출을 정지할 예정이다”라고 대답해 여신자세를 엄격화할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

- 직전 월말 시점의 신규 대출 고객의 경우, 대출잔고가 5 억엔 이하인 소규모 대부업체의 20.5%가 ‘대부분 미대응’이라고 대답했으며, 2006 년 중간기말시점의 정상 대출 고객의 경우, 대출잔고가 5,000 억 엔을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의 50.0%가 ‘절반이상이 미대응’이라고 대답했다.

③ 총량규제의 도입에 대한 대응

- 대출 잔고가 5,000 억 엔을 넘는 대규모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대응 중이었으며, 총량규제의 도입에 따라 융자 정지와 같은 여신 재검토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총량규제의 적용 제외 및 예외 대출의 완전시행 후 취급에 대해서는 ‘취급하겠다’, ‘검토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법개정 전에 취급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비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④ 완전시행의 영향을 받는 자금수요자

- 대부업체의 60% 이상의 업체가 법개정의 완전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으로 ‘자영업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주부(전업남편)’, ‘연 수입이 400 만엔 미만의 소득자층’을 들었으며, 사업자의 경우는 54.5%가 ‘개인사업주’를 들었다.

제4장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에 대비한 대응상황 등에 관한 조사결과

1. 앙케트 조사 개요

1)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에 대비한 대응상황 등에 관한 조사

① 조사 목적

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에 대비한 대응상황 등을 대출 이용자와 대부업체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

② 조사 방법

(1) 대출 이용자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	조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인터넷 모니터 요원
응답자 수	·사전조사자수 : 105,848명 ·일반 소비자 : 1,000명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누고 성별 및 연령대를 인구 구성에 따른 비율로 추출 ·대출 이용자 : 1,000명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으면서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500명과 총량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500명을 추출 ·특정 이용자 : 전업주부(전업남편) : 500명 개인사업주 : 500명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 500명과 개인사업주 500명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09년 8월 25일~9월 4일
조사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가) 대상자별 조사 목적

사전조사	대출이용자, 전업주부(전업남편), 개인사업주를 추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일반소비자 대상 조사	일반적인 소비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대출 이용자 대상 조사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는 대출 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특정 이용자 대상 조사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전업주부(전업남편)와 개인사업주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나) 조사분석 시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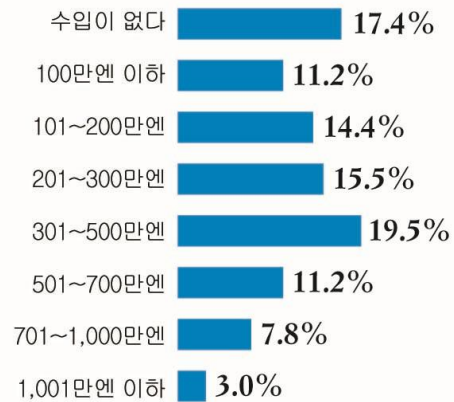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 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전 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표본구성: 개인 연 수입

■ 일반소비자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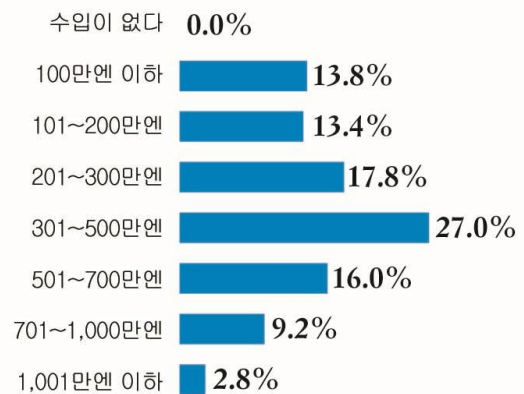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174	17.4%
100만엔 이하	112	11.2%
101~200만엔	144	14.4%
201~300만엔	155	15.5%
301~500만엔	195	19.5%
501~700만엔	112	11.2%
701~1,000만엔	78	7.8%
1,001만엔 이상	30	3.0%
합계	1,000	100.0%



■ 대출이용자(총량규제 ‘해당자’)

(n=500)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0	0.0%
100만엔 이하	69	13.8%
101~200만엔	67	13.4%
201~300만엔	89	17.8%
301~500만엔	135	27.0%
501~700만엔	80	16.0%
701~1,000만엔	46	9.2%
1,001만엔 이상	14	2.8%
합계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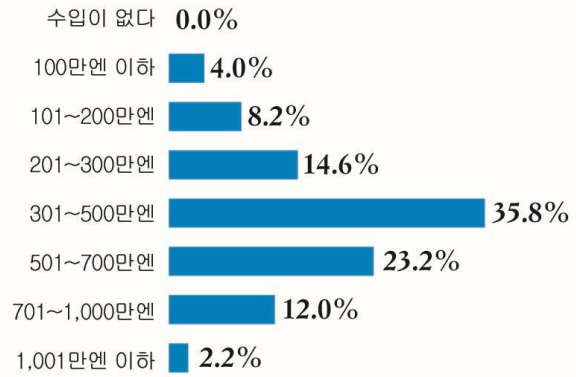
(n=500)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0	0.0%
100만엔 이하	20	4.0%
101~200만엔	41	8.2%
201~300만엔	73	14.6%
301~500만엔	179	35.8%
501~700만엔	116	23.2%
701~1,000만엔	60	12.0%
1,001만엔 이상	11	2.2%
합계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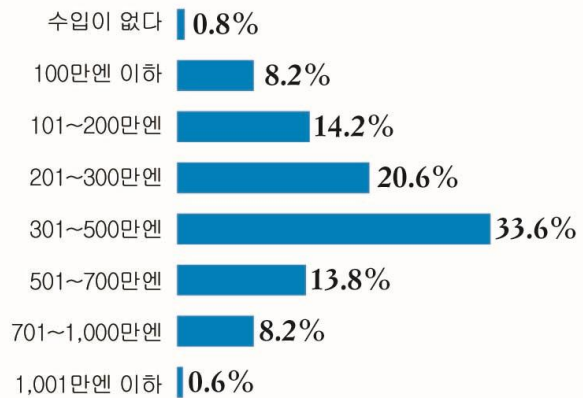
(n=500)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4	0.8%
100만엔 이하	41	8.2%
101~200만엔	71	14.2%
201~300만엔	103	20.6%
301~500만엔	168	33.6%
501~700만엔	69	13.8%
701~1,000만엔	41	8.2%
1,001만엔 이상	3	0.6%
합계	500	100.0%

■ 대출이용자(총량규제 '비해당자')



■ 개인사업주



(2)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조사대상	일정 금액의 대출잔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 특정 협회원 67사
응답자 수	59사(회수율 88.1%)
조사방법	우편송부조사법 및 전자메일에 의한 조사
조사기간	2009년 9월 18일~10월 2일
조자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주 1) 특정 협회원의 대출잔고 합계는 전 협회원의 대출잔고의 80%이상의 커버리지(coverage)를 확보.

(가) 조사분석 시 유의점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전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및 취득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

1) 대부업체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뢰의 유무 및 취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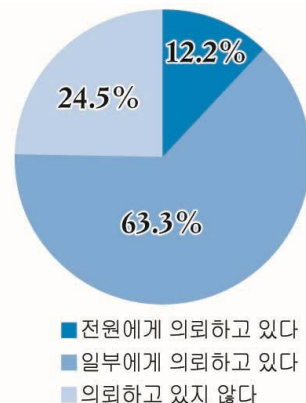
① 소비자대상 대출(기존고객)

소비자대상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 고객에게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75.5%가 제출을 의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부업체는 12.2%에 머물렀다.

도표4-1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유무 및 의뢰 대상(기존고객)

(n=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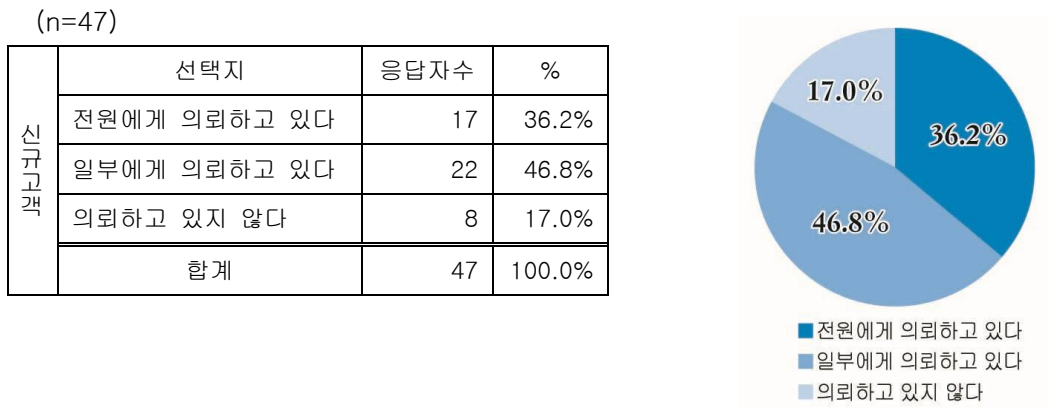
기 존 고 객	선택지	응답자수	%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	6	12.2%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	31	63.3%
	의뢰하고 있지 않다	12	24.5%
	합계	49	100.0%



② 소비자대상 대출(신규고객)

소비자대상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신규고객에게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83.0%가 제출을 의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부업체는 36.2%로 나타났다.

도표4-2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유무 및 의뢰 대상(기존고객)



③ 현재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및 취득률 전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율에 대해 ‘제출의뢰건수에 대한 취득률’과 ‘취득 필수 고객 수에 대한 취득률’을 확인한 결과, 각각 73.6%, 83.9%의 대부업체가 ‘취득률이 50%이하’라고 응답했으며, 완전시행 시(2010년 6월을 예정)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전망에 대해서는 ‘40%초과~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70%이하’, ‘70%초과~80%이하’가 각각 17.6%로 나타나 다른 선택지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응답이었지만 취득률 80%이상으로 응답한 업자의 경우 14.7%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청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42.4%가 제출을 하도록 요청 받았다고 응답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했다)”가 34.3%,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하지 않았다)”가 8.1%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아 제출한 비율이 80.9%를 차지해 대부업체에 실시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대출 이용자에 대해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도표4-3 제출을 의뢰한 건수에 대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n=34)

선택지	응답자수	%
90%초과~100%	3	8.8%
80%초과~90%이하	0	0.0%
70%초과~80%이하	1	2.9%
60%초과~70%이하	2	5.9%
50%초과~60%이하	3	8.8%
40%초과~50%이하	7	20.6%
30%초과~40%이하	7	20.6%
20%초과~30%이하	3	8.8%
10%초과~20%이하	4	11.8%
0%~10%이하	4	11.8%
합계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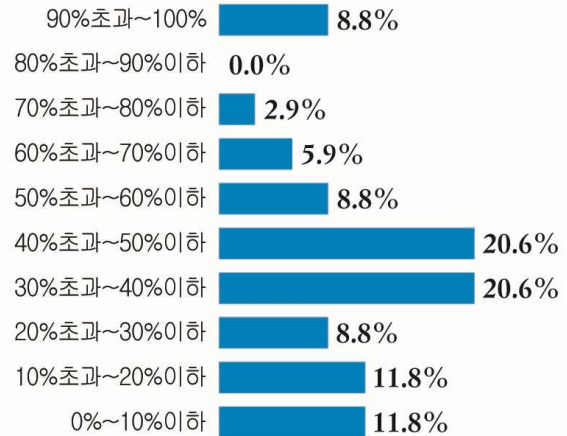


도표4-4 대출 이용자(전체)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뢰 유무

(n=1,00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했다)	343	34.3%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하지 않았다)	81	8.1%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없다	576	57.6%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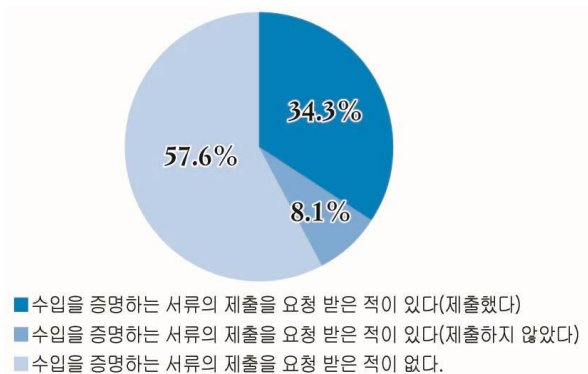


도표4-5 취득이 필수인 고객 수에 대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n=31)

선택지	응답자수	%
90%초과~100%	2	6.5%
80%초과~90%이하	0	0.0%
70%초과~80%이하	0	0.0%
60%초과~70%이하	1	3.2%
50%초과~60%이하	2	6.5%
40%초과~50%이하	6	19.4%
30%초과~40%이하	3	9.7%
20%초과~30%이하	5	16.1%
10%초과~20%이하	7	22.6%
0%~10%이하	5	16.1%
합계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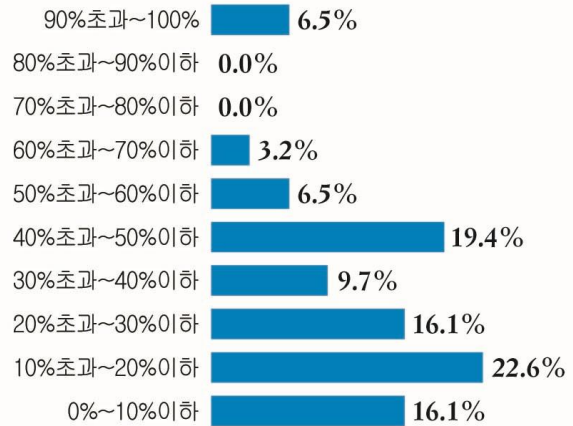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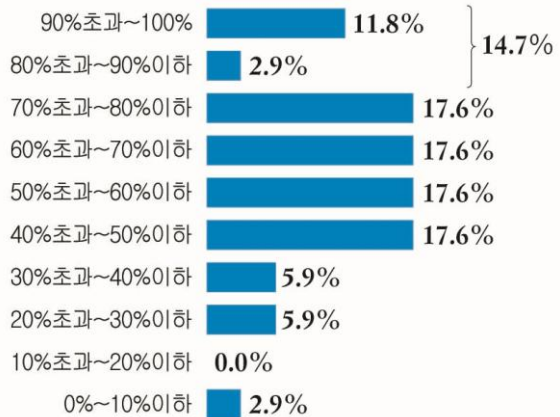


도표4-6 완전시행 시(2010년 6월 예정)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취득률 전망

(n=34)

선택지	응답자수	%
90%초과~100%	4	11.8%
80%초과~90%이하	1	2.9%
70%초과~80%이하	6	17.6%
60%초과~70%이하	6	17.6%
50%초과~60%이하	6	17.6%
40%초과~50%이하	6	17.6%
30%초과~40%이하	2	5.9%
20%초과~30%이하	2	5.9%
10%초과~20%이하	0	0.0%
0%~10%이하	1	2.9%
합계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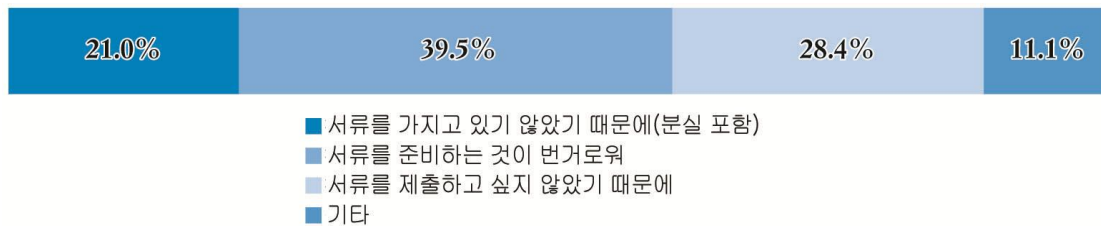
2) 대출 이용자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결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39.5%)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28.4%),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분실 포함)”(21.0%)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4-7 대출 이용자(전체)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n=81)

선택지	응답자수	%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분실 포함)	17	21.0%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	32	39.5%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23	28.4%
기타	9	11.1%
합계	81	100.0%



3)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

①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한 의견

대출 이용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52.0%를 차지했다. 그리고 대출 이용자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47.2%, 총량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도표4-8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대출 이용자의 의견 응답상황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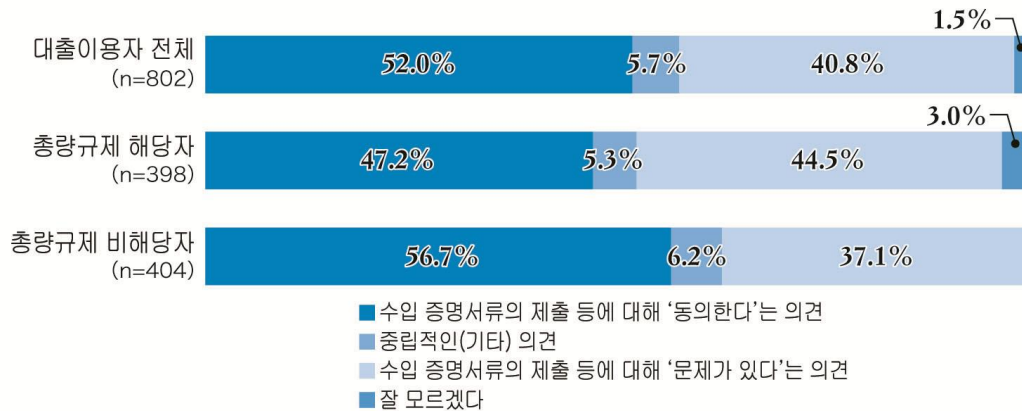
응답 유무	응답자수	%
응답 있음	802	80.2%
응답 없음	198	19.8%
합계	1,000	100.0%



의견 분류	정의
“동의한다”는 의견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다중채무가 방지될 것이다” 등 수입 증명서류의 제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
중립적인(기타)의견	“잘 모르겠다”와 같은 수입 증명서류의 제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견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제출하는 것이 귀찮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등 수입 증명서류의 제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

도표4-9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대한 대출 이용자의 의견의 분류

응답내용	대출이용자		총량규제 해당자		총량규제 비해당자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동의한다”는 의견	417	52.0%	188	47.2%	229	56.7%
중립적인(기타) 의견	46	5.7%	21	5.3%	25	6.2%
“문제가 있다”는 의견	327	40.8%	177	44.5%	150	37.1%
잘 모르겠다	12	1.5%	12	3.0%	0	0.0%
합계	802	100.0%	398	100.0%	4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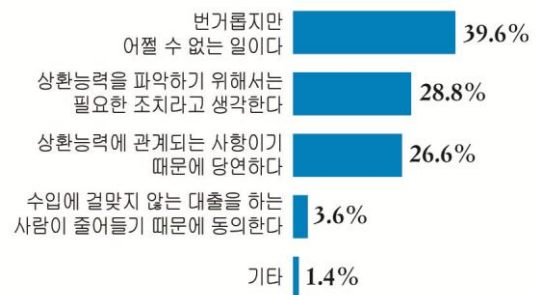
②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의 내용

대출 이용자 중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 의견(52.0%)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39.6%)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28.8%), “상환능력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26.6%)와 같은 의견이 뒤를 이었다.

도표4-10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 대출이용자의 의견 내용

(n=417)

응답내용	응답자수	%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65	39.6%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120	28.8%
상환능력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111	26.6%
수입에 걸맞지 않는 대출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의한다	15	3.6%
기타	6	1.4%
합계	417	100.0%



③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내용

대출이용자 중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의견(40.8%)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귀찮다”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15.9%)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출하고 싶지 않다”(11.9%),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면 난처하다”(7.0%)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도표4-11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대출이용자의 의견 내용

(n=327)

응답내용	응답자수	%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귀찮다	112	34.3%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52	15.9%
가능하면 제출하고 싶지 않다	39	11.9%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면 난처하다	23	7.0%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15	4.6%
그렇게까지 해서 빌리고 싶지 않다	12	3.6%
직전 수입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10	3.1%
기타	64	19.6%
합계	327	100.0%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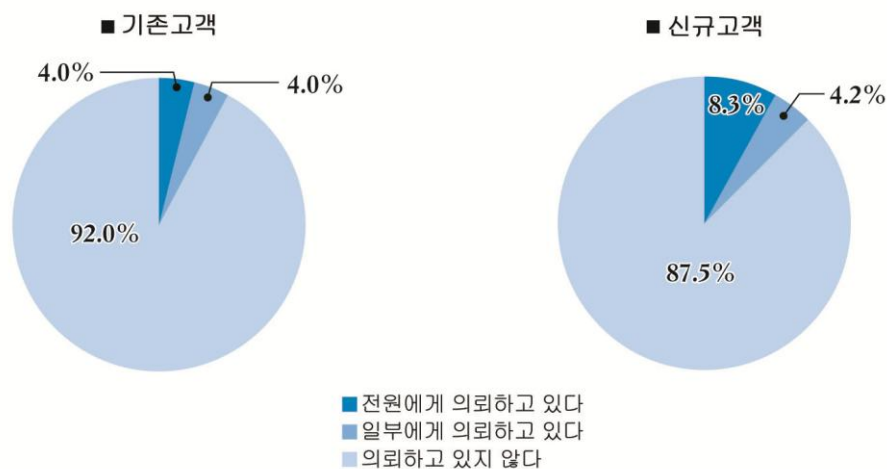
3. 배우자의 재정상태 조사와 동의서 등 필요 서류에 관한 조사 결과

1)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동의서 등 필요 서류의 제출 상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전업주부(전업남편)에게 대출 시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배우자의 동의 등)의 제출을 의뢰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8.0%가 기존고객에게 서류의 제출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12.5%가 서류의 제출을 의뢰하고 있었다.

도표4-12 전업주부(전업남편)에 대한 동의서 등 필요서류의 제출의뢰(기존, 신규고객)

선택지	기존고객		신규고객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	1	4.0%	2	8.3%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	1	4.0%	1	4.2%
의뢰하고 있지 않다	23	92.0%	21	87.5%
합계	25	100.0%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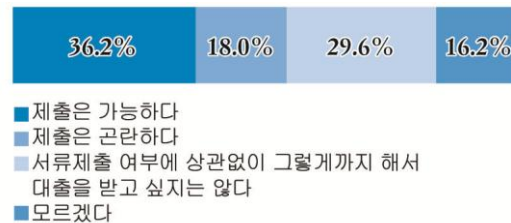
2) 배우자의 수입 증명서류 제출 여부

전업주부(전업남편)가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배우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출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할 지 여부에 관계없이 너무 귀찮고 그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29.6%), “제출은 곤란하다”(18.0%), “모르겠다”(16.2%) 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4-13 전업주부(전업남편)에 의한 배우자의 수입증명서류 제출 여부

(n=500)

선택지	응답자수	%
제출은 가능하다	181	36.2%
제출은 곤란하다	90	18.0%
서류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고 싶지는 않다	148	29.6%
모르겠다	81	16.2%
합계	500	100.0%



3) 배우자의 대출에 대한 인지도

전업주부(전업남편)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대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는 대출에 대해 알고 있다”가 62.0%, “배우자는 대출에 대해 모른다”가 38.0%로 나타났다.

도표4-14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사실을 배우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n=271)

선택지	응답자수	%
배우자는 대출에 대해 알고 있다	168	62.0%
배우자는 대출에 대해 모른다	103	38.0%
합계	2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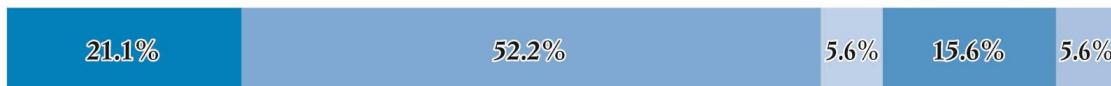
4) 배우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이유

배우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게 서류 제출을 상당함(빚이 있음을 고백)으로서 부부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현재 본인의 대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반대할 것 같기 때문에)”(21.1%), “본인 자신이 배우자의 개인정보(주민표(주민등록)나 수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15.6%)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도표4-15 배우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가장 큰 이유)

(n=90)

선택지	응답자수	%
배우자가 현재 본인의 대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반대할 것 같기 때문에)	19	21.1%
배우자에게 서류 제출을 상당함(빚이 있음을 고백)으로서 부부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47	52.2%
배우자가 개인정보(주민표나 수입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싫어하기 때문에(싫어할 것 같아서)	5	5.6%
본인 자신이 배우자의 개인정보(주민표나 수입증명서류 등)를 제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14	15.6%
기타	5	5.6%
합계	90	100.0%



- 배우자가 현재 본인의 대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반대할 것 같기 때문에)
- 배우자에게 서류 제출을 상당함(빚이 있음을 고백)으로서 부부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배우자가 개인정보(주민표나 수입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싫어하기 때문에(싫어할 것 같아서)
- 본인 자신이 배우자의 개인정보(주민표나 수입증명서류 등)를 제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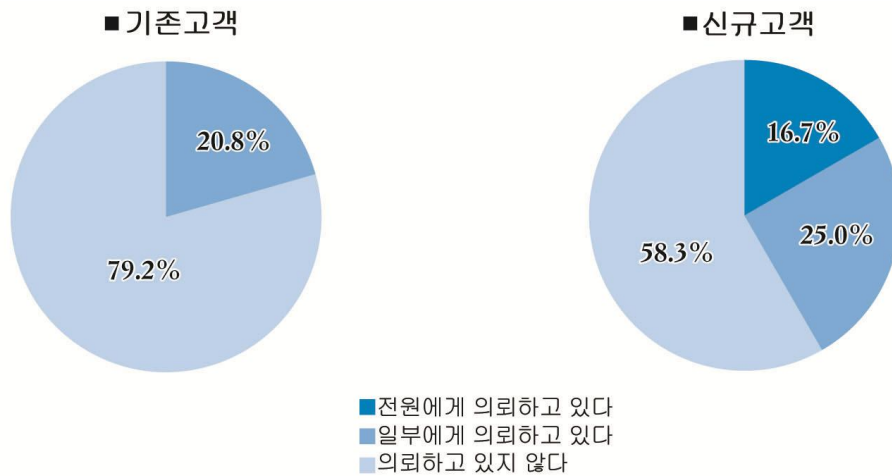
4. 개인사업주가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1) 대부업체가 개인사업주에게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의뢰한 상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주에게 대출 시,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의뢰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8%의 대부업체가 기존고객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뢰하고 있었으며,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41.7%로 나타났다.

도표4-16 개인사업주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의 제출의뢰(기존, 신규고객)

선택지	기존고객		신규고객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	0	0.0%	4	16.7%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	5	20.8%	6	25.0%
의뢰하고 있지 않다	19	79.2%	14	58.3%
합계	24	100.0%	24	100.0%



2) 대출잔고가 있는 개인사업주가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주에 대해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당 개인 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73.2%가 “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해당 개인 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6%에 머물렀다.

도표4-17 개인사업주의 사업실태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여부

(n=500)

선택지	응답자수	%
제출은 가능하다	366	73.2%
제출하지 않겠다(힘들다)	134	26.8%
합계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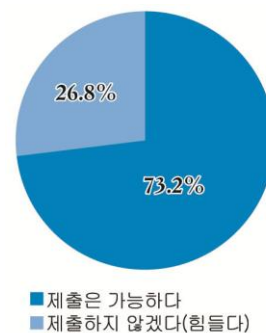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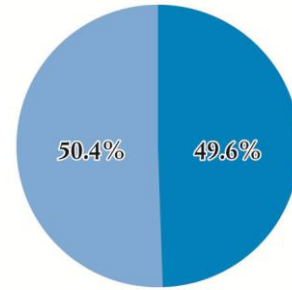


도표4-18 개인사업주의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 여부

(n=500)

선택지	응답자수	%
제출은 가능하다	248	49.6%
제출하지 않겠다(힘들다)	252	50.4%
합계	500	100.0%



■ 제출은 가능하다
■ 제출하지 않겠다(힘들다)

(주 1) 대부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주가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수입증명서류 외에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주 2)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의 네 가지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① 결산서 ② 녹색신고서 ③ 확정신고서 ④ 납세증명서

(주 3)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의미한다.

① 사업 계획 ② 수지 계획 ③ 자금 계획

3) 개인사업주가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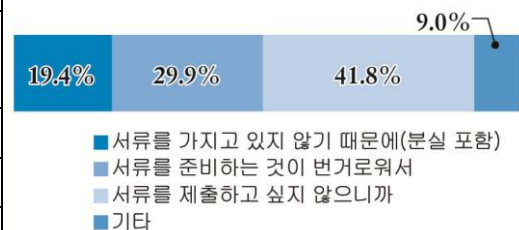
①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겠다(힘들다)”라고 응답한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29.9%),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분실 포함)”(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4-19 개인사업주의 사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

(n=134)

선택지	응답자수	%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실 포함)	26	19.4%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40	29.9%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56	41.8%
기타	12	9.0%
합계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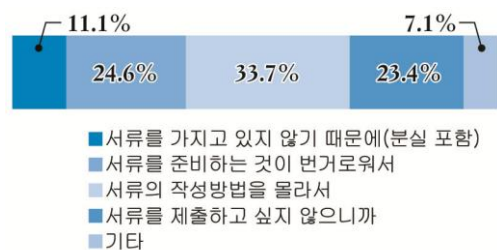
■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분실 포함)
■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 기타

② 해당 개인 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당 개인 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 “제출은 하지 않겠다(힘들다)”라고 응답한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의 작성방법을 몰라서”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워서”(24.6%),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4-20 개인사업주의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이유

(n=252)

선택지	응답자수	%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실 포함)	28	11.1%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62	24.6%
서류의 작성방법을 몰라서	85	33.7%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59	23.4%
기타	18	7.1%
합계	252	100.0%



5. 본 장의 요약

1) 대부업체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의뢰한 유무 및 취득 상황

- 대부업체의 70%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의뢰^(*)하고 있지만 취득율은 50% 이하였으며, 완전시행 시(2010년 6월 예상)까지도 70%의 대부업체가 40%초과~80%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제출을 하지 않은 일부의 이용자에게는 한도액의 인하나 신규대출의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 소비자대상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뢰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가 12.2%,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가 63.3%로 응답을 한 대부업체의 75.5%가 제출을 의뢰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도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가 36.2%,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가 46.8%로 나타나 응답을 한 대부업체의 83.0%가 제출을 의뢰하고 있었다.
- 취득이 필수인 고객 수에 대한 취득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0%초과~20%이하”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초과~50%이하”가 19.4%, “0%~10%이하”가 16.1%로 나타났으며, 완전시행 시의 경우, 70%의 대부업체가 40%초과~80%이하의 취득율을 예측했다. 이로써 수입증명서류를 요청 받은 이용자 중 약 40%^(*)

가 완전시행에 따라 한도액의 인하나 신규대출 정지 조치의 대상이 된다.

- 그리고 대출이용자에 대해 최근 1년간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없다”(57.6%),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했다)”(34.3%),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다(제출하지 않았다)”(8.1%)로 나타났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아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1) 완전시행일 이후, 대부업체는 개인인 고객 등에게 대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고객으로부터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요청해야만 한다. ① 대출금액(최고한도방식 기본계약의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이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② 대출금액(최고한도방식 기본계약의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이 기존의 대출 계약의 잔고(최고한도방식 기본계약의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와 지정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신용정보에 의해 판명된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잔고와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앙케트에 응답한 34사의 완전시행 시 취득율 전망의 평균치(59.7%)를 기준으로 산정

2)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

- 대출이용자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가 28.4%,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분실 포함한다)”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52.0%, 중립적인(기타) 의견이 5.7%로 나타난 반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40.8%로 나타났다
- 자유의견을 “동의한다”, “중립적(기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의한다”라는 의견(52.0%)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39.6%)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28.8%), “상환능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다”(26.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40.8%)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다”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지 걱정이다”(15.9%), “가능하면 제출하고 싶지 않다”(11.9%),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면 대응이 힘들다”(7.0%) 순으로 나타났다.

3) 배우자의 재정상태 조사와 동의서 등과 같은 필요 서류의 제출 여부와 대출 인지 상황

-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3)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대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0%가 “배우자는 대출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 그리고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 및 동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2%에 머물렀으며, “서류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너무 번거롭고 그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가 29.6%, “제출은 곤란하다”가 18.0%로 나타나 서류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 앞에서 기술한 “제출은 곤란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배우자에게 서류 제출을 상담함(빚이 있다고 고백)으로서 부부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5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현재 본인의 대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반대할 것 같기 때문에)”가 21.1%, “본인 자신이 배우자의 개인정보(주민표나 수입증명서류 등)를 제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가 15.6%로 나타났다.

(*3) 총량규제에 의해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은 배우자와 합산하여 수입의 1/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시에는 배우자의 동의 및 부부관계증명서류, 배우자의 수입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게 된다.

4) 개인사업주가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

-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주에게 대출 시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의뢰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8%의 대부업체가 기존고객에게 서류의 제출을 의뢰했으며,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전원에게 의뢰하고 있다”와 “일부에게 의뢰하고 있다”를 합하여 41.7%로 나타났다.
-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주^(*4)에 대해 총량규제의 예외로 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및 해당 개인 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6)의 제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73.2%가 “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해당 개인고객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6%에 머물렀다.

(*4)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주가 사업자금을 대출할 경우 수입증명서류 외에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환능력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5) 다음 네 가지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 ① 결산서 ② 녹색신고서
- ③ 확정신고서 ④ 납세증명서

(*6)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의미한다.

- ① 사업계획 ② 수지계획 ③ 자금계획

제5장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개정 대부업법의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

1. 앙케트 조사 개요

1)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개정 대부업법의 영향에 관한 조사

① 조사 목적

자금수요자의 동향 및 대부업법 개정의 영향 등을 소비자(일반소비자·대출이용자·특정 이용자·채무완제자) 및 사업자(기업경영자·개인사업주)별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② 조사 방법

(1) 소비자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	조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인터넷 모니터 요원
응답자 수	·사전조사자수 : 213,375명 ·일반 소비자 : 1,000명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누고 성별 및 연령대를 인구 구성에 따른 비율로 추출 ·대출 이용자 : 2,000명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으며,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1,000명과 총량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1,000명을 추출 ·특정 이용자 : 전업주부(전업남편) : 500명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을 추출 ·채무 완제자: 590명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으며, 최근 5년 이내(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채무를 완제한 590명을 추출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09년 12월 15일~12월 22일
조사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가) 대상자별 조사 목적

사전조사	대출이용자, 전업주부(전업남편), 채무 완제자를 추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일반소비자 대상 조사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대출 이용자 대상 조사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가 있는 대출이용자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특정 이용자 대상 조사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업주부(전업남편)에 대해 대출 상황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접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채무 완제자 대상 조사	현재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완제한 대출 완제자에 대해 대출 당시의 잔고 및 완제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나) 조사분석 시 유의점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전 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표본구성:

● 개인 연 수입

(n=3,09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570	18.4%
100만엔 이하	310	10.0%
101~200만엔	306	9.9%
201~300만엔	465	15.0%
301~500만엔	735	24.0%
501~700만엔	383	12.4%
701~1,000만엔	233	7.5%
1,001만엔 이상	88	2.8%
합계	3,090	100.0%

■ 대출 경험자^(*1)



(*1) 일반소비자 1,000명, 대출 이용자 2,000명, 특정 이용자(전업주부(전업남편)) 500명, 채무 완제자 590명을 포함한다.

(n=1,00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157	15.7%
100만엔 이하	118	11.8%
101~200만엔	122	12.2%
201~300만엔	150	15.0%
301~500만엔	222	22.2%
501~700만엔	111	11.1%
701~1,000만엔	89	8.9%
1,001만엔 이상	31	3.1%
합계	1,000	100.0%

● 대출 경험자의 내역

(n=1,00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9	0.9%
100만엔 이하	211	21.1%
101~200만엔	151	15.1%
201~300만엔	200	20.0%
301~500만엔	229	22.9%
501~700만엔	119	11.9%
701~1,000만엔	64	6.4%
1,001만엔 이상	17	1.7%
합계	1,000	100.0%

(n=1,00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0	0.0%
100만엔 이하	37	3.7%
101~200만엔	96	9.6%
201~300만엔	165	16.5%
301~500만엔	345	34.5%
501~700만엔	188	18.8%
701~1,000만엔	116	11.6%
1,001만엔 이상	53	5.3%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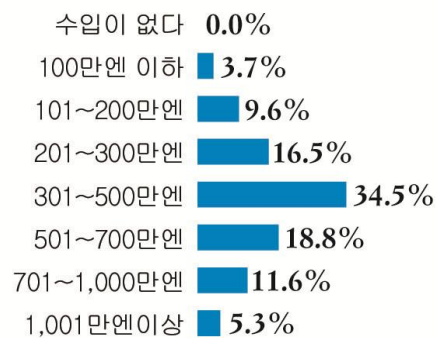
■ 일반소비자



■ 대출이용자(총량규제 ‘해당자’)



■ 대출이용자(총량규제 ‘비해당자’)



■ 전업주부(전업남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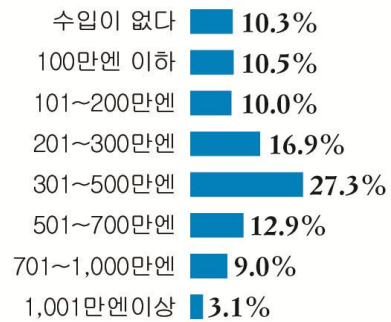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500	100.0%
100만엔 이하	0	0.0%
101~200만엔	0	0.0%
201~300만엔	0	0.0%
301~500만엔	0	0.0%
501~700만엔	0	0.0%
701~1,000만엔	0	0.0%
1,001만엔 이상	0	0.0%
합계	500	100.0%



■ 채무 완제자

(n=590)

선택지	응답자수	%
수입이 없다	61	10.3%
100만엔 이하	62	10.5%
101~200만엔	59	10.0%
201~300만엔	100	16.9%
301~500만엔	161	27.3%
501~700만엔	76	12.9%
701~1,000만엔	53	9.0%
1,001만엔 이상	18	3.1%
합계	5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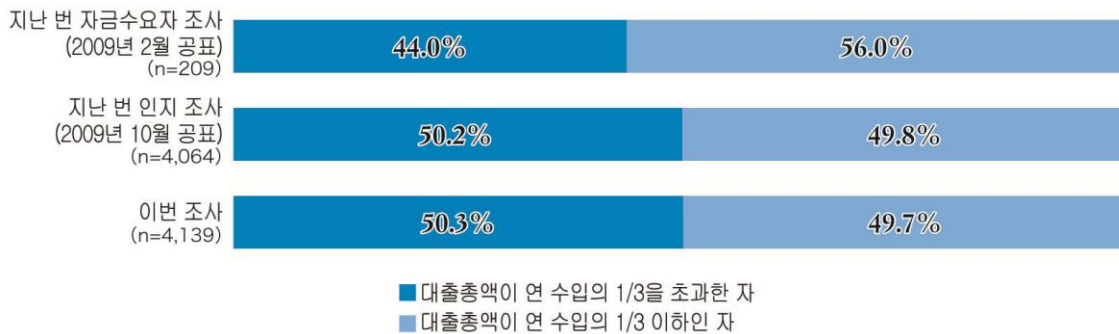
● 총량규제 해당자 비율

■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

사전조사자 213,375명 가운데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의 대출총액이 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50.3%가 연 수입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잔고를 가지고 있어, 지난 번 인지 조사^(*1)의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이용자의 생활환경 변화로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응답이 많은(도표 5-1 참조) 점을 보면 수입의 감소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 결과와 비교해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승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지난 번 인지 조사 (2009년 10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대출총액이 연 수입의 1/3을 초과한 자	92	44.0%	2,039	50.2%	2,080	50.3%
대출총액이 연 수입의 1/3 이하인 자	117	56.0%	2,025	49.8%	2,059	49.7%
합계	209	100.0%	4,064	100.0%	4,139	100.0%



(*1)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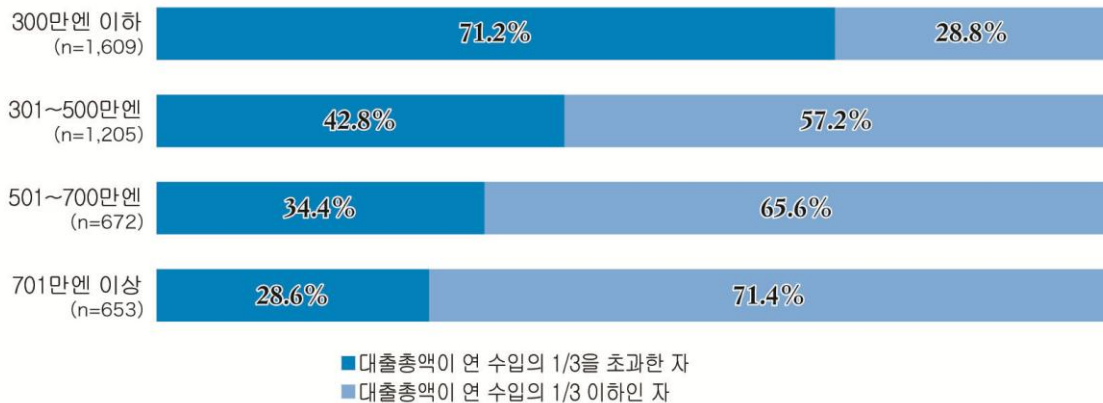
(*2)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

■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이용자의 연 수입 규모별 총량규제 해당 비율

소비자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이용자의 총량규제 해당 비율을 소득 계층별로 살펴 보면 대출총액이 연 수입의 1/3을 초과한 비율은 연 수입이 300만 엔 이하에서는 71.2%, 연 수입이 301~500만 엔에서는 42.8%, 연 수입이 501~700만 엔에서는 34.4%, 연 수입이 701만엔 이상에서는 28.6%로 나타나 연 수입이 낮은 층일수록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다.

■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의 소득계층별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비율

선택지	300만엔 이하		301~500만엔		501~700만엔		701만엔 이상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대출총액이 연 수입의 1/3을 초과한 자	1,146	71.2%	516	42.8%	231	34.4%	187	28.6%
대출총액이 연 수입의 1/3 이하인 자	463	28.8%	689	57.2%	441	65.6%	466	71.4%
합계	1,609	100.0%	1,205	100.0%	672	100.0%	653	100.0%



(2) 사업자 조사

(가)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인터넷 모니터 요원
응답자 수	·사전조사자수 : 213,375명 ·기업경영자 : 908명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성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자 및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자 ·개인사업주 : 767명 현재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성 자금(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의 대출잔고가 있는 자 및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자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조사기간	2009년 12월 15일~12월 22일
조사주체	일본대부업협회 기획조사부
조사기관	주식회사 NTT 데이터 경영연구소

(나) 대상자별 조사 목적

사전조사	사업성 자금을 대부업체에게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경영자나 개인사업주 및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추출하기 위한 조사
기업경영자 대상 조사	기업경영자의 현재 대출상황,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상황,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상황, 불법자금용의 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개인사업주 대상 조사	개인사업주의 현재 대출상황,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상황,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상황, 불법자금용의 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다) 조사분석 시 유의점

- 집계표 수치의 단위는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응답자수’이다. 그리고 각 집계표에 있는 “(n=137)”등은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집계구분의 ‘응답자 합계’를 의미한다.
- 전 항의 ‘응답자 합계’에는 ‘무응답(=응답 가능한 설문에 대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거나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이나 ‘비대상 등(=분기설문이나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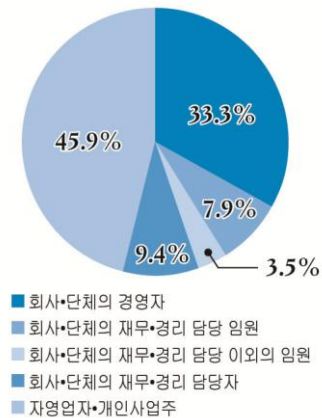
(라) 표본구성

해당 조사 대상자의 사업 형태 구성은 회사법인이 54.1%,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주가 45.9%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회사법인의 경우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n=1,675)

선택지	응답자수	%
회사·단체의 경영자	558	33.3%
회사·단체의 재무·경리 담당 임원	133	7.9%
회사·단체의 재무·경리 이외의 임원	59	3.5%
회사·단체의 재무·경리 담당자	158	9.4%
자영업자·개인사업주	767	45.9%
합계	1,6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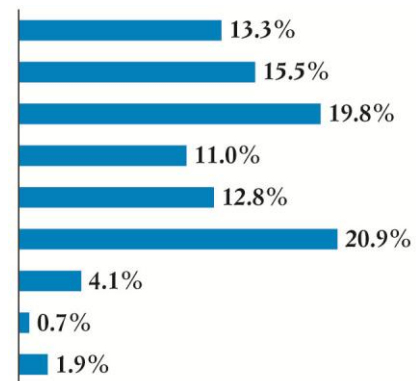
■ 직업



■ 연간 매출

(n=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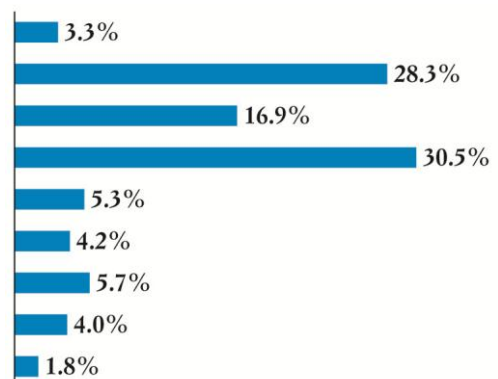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자수	%
500만엔 미만	223	13.3%
500만엔 이상~1,000만엔 미만	259	15.5%
1,000만엔 이상~3,000만엔 미만	332	19.8%
3,000만엔 이상~5,000만엔 미만	185	11.0%
5,000만엔 이상~1억엔 미만	215	12.8%
1억엔 이상~10억엔 미만	350	20.9%
10억엔 이상~100억엔 미만	69	4.1%
100억엔 이상	11	0.7%
모르겠다	31	1.9%



(n=908)

선택지	응답자수	%
100만엔 미만	30	3.3%
100만엔 이상~500만엔 미만	257	28.3%
500만엔 이상~1,000만엔 미만	153	16.9%
1,000만엔 이상~2,000만엔 미만	278	30.5%
2,000만엔 이상~3,000만엔 미만	48	5.3%
3,000만엔 이상~5,000만엔 미만	38	4.2%
5,000만엔 이상~1억엔 미만	52	5.7%
1억엔 이상	36	4.0%
모르겠다	16	1.8%

■ 자본금



2.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 결과

1) 신청 및 이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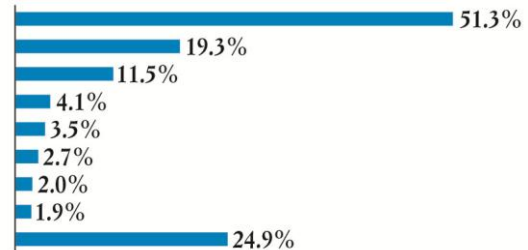
① 2006년 당시(개정 대부업법^(*)이 성립)와 비교한 현재의 생활 환경

● 대출 이용자의 생활 환경 변화

대출이용자의 19.3%가 “실수령액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한데 비해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한 응답자는 51.3%로 나타났다.

도표5-1 대출이용자의 생활환경 변화(복수응답)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	691	51.3%
실수령액 수입이 증가했다	260	19.3%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155	11.5%
직장에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55	4.1%
회사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47	3.5%
파견직인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7	2.7%
직장이 도산했다	27	2.0%
정사원에서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으로 변경되었다	25	1.9%
상기의 내용 중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335	24.9%
응답자수	1,348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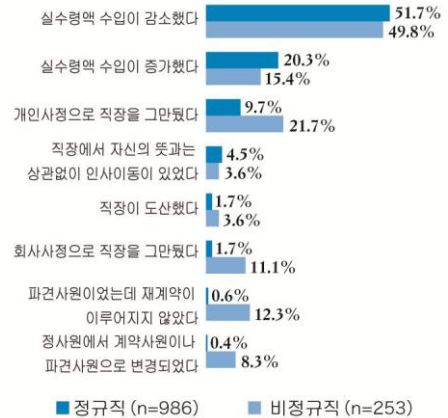
(*) 2006년 12월 13일,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의 도입’, ‘대부업의 적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해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간주 상환’을 폐지하고 출자법의 상한금리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 고용형태별 생활환경의 변화

고용형태별^(*)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형태 전반에 걸쳐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의 응답에서는 정규직의 응답과 비교해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21.7%), “회사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11.1%), “직장이 도산했다”(3.6%) 와 같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5-2 대출이용자(정규직/비정규직)의 생활환경의 변화(복수응답)

선택지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	510	51.7%	126	49.8%
실수령액 수입이 증가했다	200	20.3%	39	15.4%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96	9.7%	55	21.7%
직장에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44	4.5%	9	3.6%
직장이 도산했다	17	1.7%	9	3.6%
회사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17	1.7%	28	11.1%
파견사원이었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0.6%	31	12.3%
정사원에서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으로 변경되었다	4	0.4%	21	8.3%
응답자수	986	-	253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앙케트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② 첫 대출업체 및 최근 1년간의 대출금 용도에 대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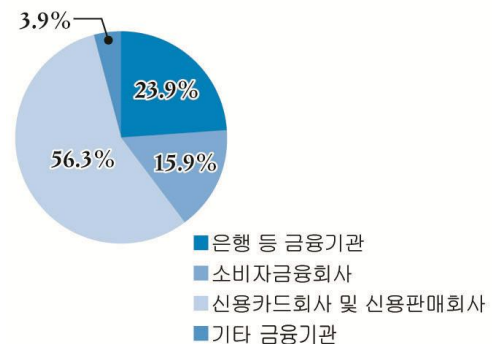
● 대출 이용자가 처음으로 이용한 대출업체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판매회사’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23.9%, ‘소비자 금융회사’가 15.9%로 그 뒤를 이었다.

도표5-3 대출이용자가 처음으로 이용한 대출업체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은행 등 금융기관	477	23.9%
소비자금융회사	317	15.9%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판매회사	1,126	56.3%
기타 금융기관	80	3.9%
합계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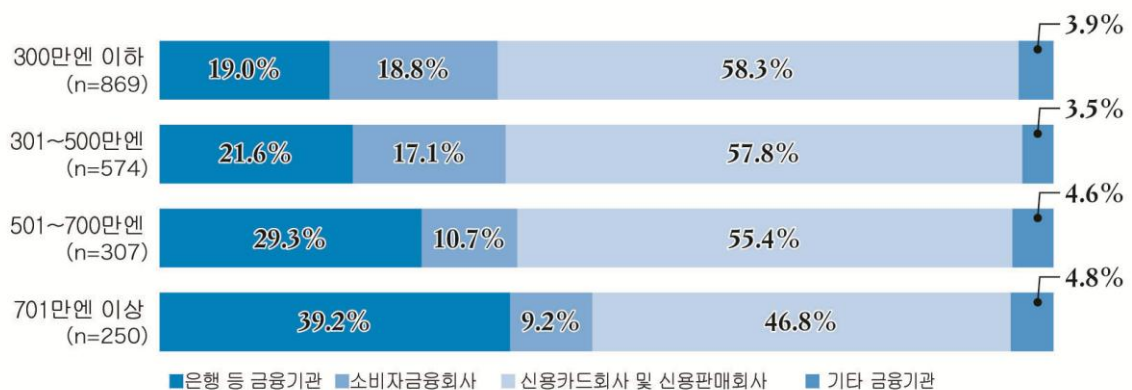


● 대출이용자의 소득계층별 첫 대출업체

대출이용자가 첫 대출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한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수입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는 18.8%, 301~500만 엔인 경우는 17.1%, 501~700만 엔인 경우는 10.7%, 701만 엔 이상인 경우는 9.2%로 나타나 연 수입이 낮을수록 첫 대출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5-4 대출이용자(소득계층별)의 첫 대출업체

선택지	300만엔 이하		301~500만엔		501~700만엔		701만엔 이상	
	응답율	%	응답율	%	응답율	%	응답율	%
은행 등 금융기관	165	19.0%	124	21.6%	90	29.3%	98	39.2%
소비자금융회사	163	18.8%	98	17.1%	33	10.7%	23	9.2%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판매회사	507	58.3%	332	57.8%	170	55.4%	117	46.8%
기타 금융기관	34	3.9%	20	3.5%	14	4.6%	12	4.8%
합계	869	100.0%	574	100.0%	307	100.0%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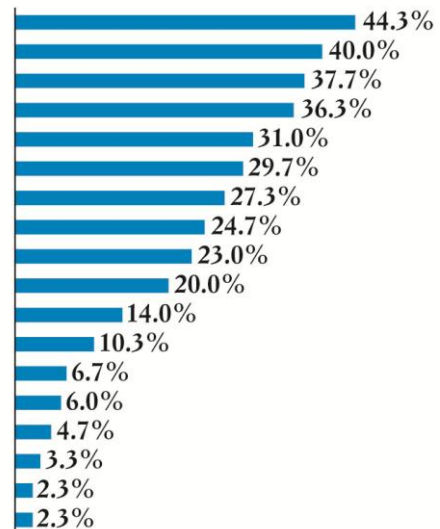
● 대출이용자가 첫 대출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

대출이용자가 처음으로 이용하는 대출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가 40.0%,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가 37.7%로 나타났다.

도표5-5 대출이용자가 첫 대출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

(n=300)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33	44.3%
보증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120	40.0%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	113	37.7%
심사가 빨라서	109	36.3%
가족에게는 비밀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93	31.0%
급히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89	29.7%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82	27.3%
집에서 가까워서	74	24.7%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69	23.0%
소액의 대출도 가능했기 때문에	60	20.0%
집 근처 역에서 가까워서	42	14.0%
단기간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31	10.3%
대부업체 이외에는 대출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20	6.7%
친구 및 지인의 소개로	18	6.0%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서	14	4.7%
친숙해서	10	3.3%
영업소 등의 창구에서 대출이나 상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	2.3%
기타	7	2.3%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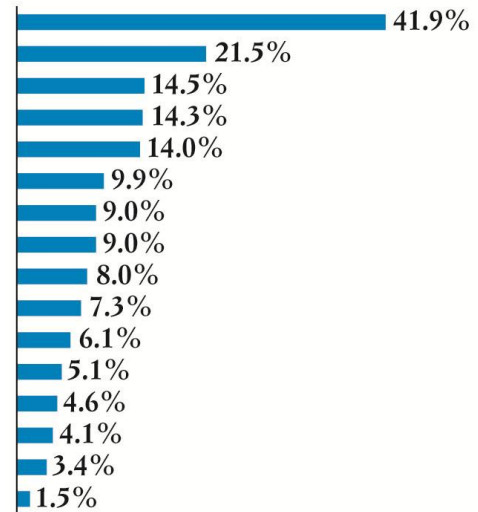
●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의 용도

최근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의 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에 충당’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대출금 상환에 충당’(21.5%), ‘물품 구입’(14.5%), ‘용돈으로 사용’(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탁을 받고’(4.6%)라는 응답도 있었다.

도표5-6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용도(복수응답)

(n=413)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생활비에 충당	173	41.9%
다른 대출금 상환에 충당	89	21.5%
물품 구입	60	14.5%
용돈으로 사용	59	14.3%
레저/여행	58	14.0%
취미/오락(도박 이외)	41	9.9%
의료비	37	9.0%
도박비	37	9.0%
사업성 자금에 충당	33	8.0%
외식 등과 같은 식비	30	7.3%
투자 및 자산 운용을 위한 비용	25	6.1%
관혼상제비용	21	5.1%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탁을 받고	19	4.6%
이사비용	17	4.1%
교육비	14	3.4%
기타	6	1.5%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대출을 부탁 받은 상대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탁을 받고”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뢰 받은 상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척’(75.0%), ‘친구·지인’(58.3%), ‘직장의 경영자 및 상사’(25.0%)로 나타났다.

도표5-7 대출을 부탁 받은 상대(복수응답)

(n=12)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친척	9	75.0%
친구·지인	7	58.3%
직장의 경영자 및 상사	3	25.0%
직장 동료 및 부하	3	25.0%
거래처	2	16.7%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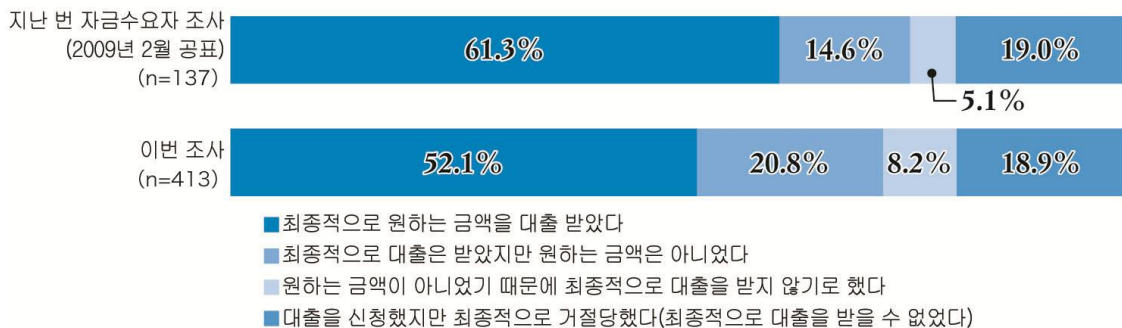
③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에 신청한 대출

●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결과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종적으로 대출은 받았지만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다”(20.8%),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8.2%), “대출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18.9%)를 합하여 47.9%(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9.2포인트 상승, 이하 동일)로 나타났다.

도표5-8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결과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최종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았다	84	61.3%	215	52.1%
최종적으로 대출은 받았지만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다	20	14.6%	86	20.8%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7	5.1%	34	8.2%
대출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6	19.0%	78	18.9%
합계	137	100.0%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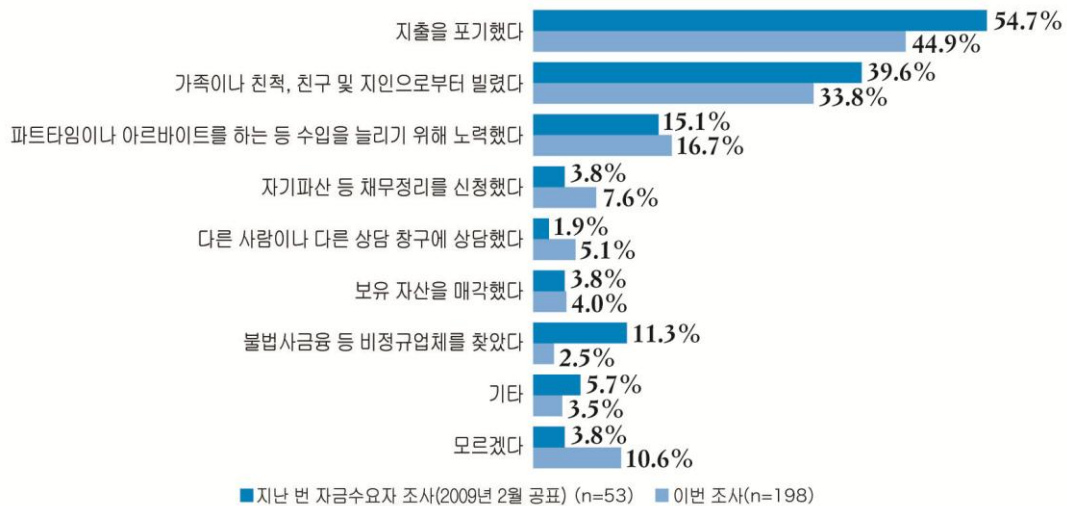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후 행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지출을 포기했다”가 44.9%(9.8포인트 감소)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및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가 33.8%(5.8포인트 감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가 16.7%(1.6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파산 등 채무정리를 신청했다”(7.6%)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담 창구에 상담했다”(5.1%)라는 응답도 있었다.

도표5-9 대출이용자가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대출을 포기했다	29	54.7%	89	44.9%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및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21	39.6%	67	33.8%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8	15.1%	33	16.7%
자기파산 등 채무정리를 신청했다	2	3.8%	15	7.6%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담 창구에 상담했다	1	1.9%	10	5.1%
보유 자산을 매각했다	2	3.8%	8	4.0%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체를 찾았다	6	11.3%	5	2.5%
기타	3	5.7%	7	3.5%
모르겠다	2	3.8%	21	10.6%
응답자수	53	-	198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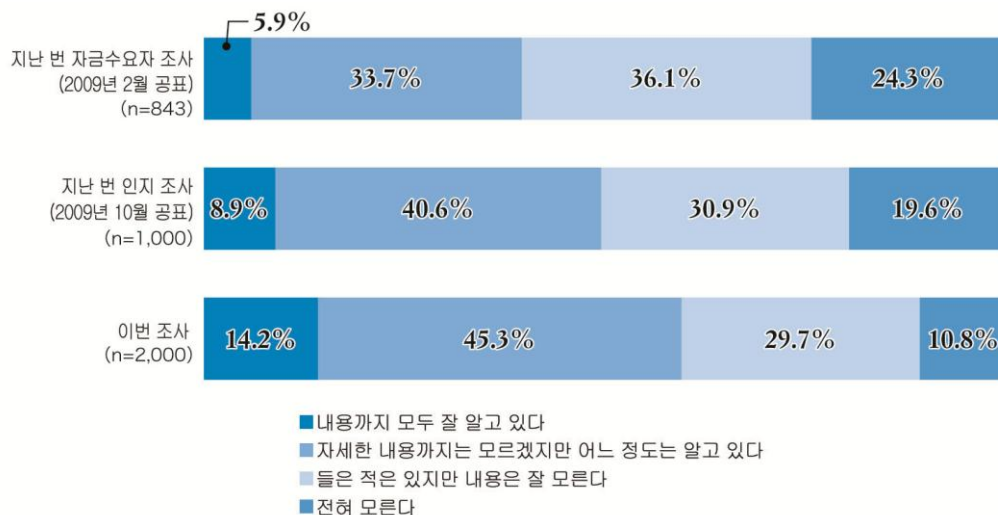
2)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 상황

① 대출 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 상황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이용자 중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14.2%)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45.3%)를 합하여 59.5%(지난 번 인지 조사^(*)와 비교하여 10.0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10 대출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 조사(2009년 2월 공표)		지난 번 인지 조사 (2009년 10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50	5.9%	89	8.9%	284	14.2%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284	33.7%	406	40.6%	905	45.3%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304	36.1%	309	30.9%	593	29.7%
전혀 모른다	205	24.3%	196	19.6%	218	10.8%
합계	843	100.0%	1,000	100.0%	2,000	100.0%



(*)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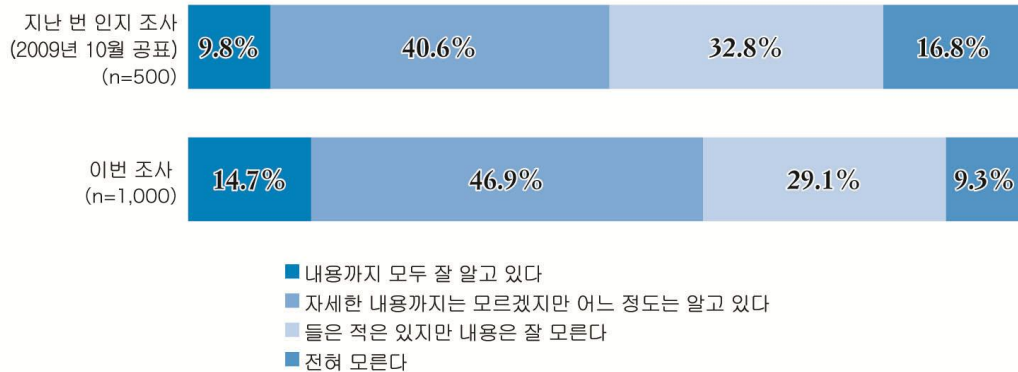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② 대출이용자 중 총량규제 해당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 상황

대출이용자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로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14.7%)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46.9%)를 합하여 61.6%(지난 번 인지 조사^(*))와 비교하여 11.2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11 대출이용자(총량규제 해당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선택지	지난 번 인지 조사 조사(2009년 10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49	9.8%	147	14.7%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203	40.6%	469	46.9%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64	32.8%	291	29.1%
전혀 모른다	84	16.8%	93	9.3%
합계	500	100.0%	1,000	100.0%



(*)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 대출이용자의 연 수입 규모별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 상황

대출이용자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수입이 300만 엔 이하의 경우,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를 합하여 54.9%로 나타났으며, 301~500만 엔의 경우 57.8%, 501~700만 엔의 경우 62.9%, 701만 엔 이상의 경우 74.8%로 나타나 지난 번 인지 조사^(*)에 이어 연 수입이 낮을수록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5-12 대출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선택지	300만원 이하		301~500만원		501~700만원		701만원 이상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99	11.4%	77	13.4%	50	16.3%	58	23.2%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378	43.5%	255	44.4%	143	46.6%	129	51.6%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280	32.2%	172	30.0%	86	28.0%	55	22.0%
전혀 모른다	112	12.9%	70	12.2%	28	9.1%	8	3.2%
합계	869	100.0%	574	100%	307	100%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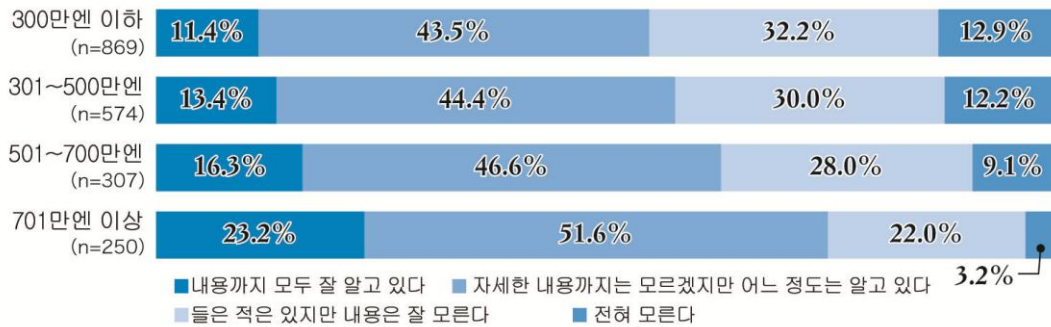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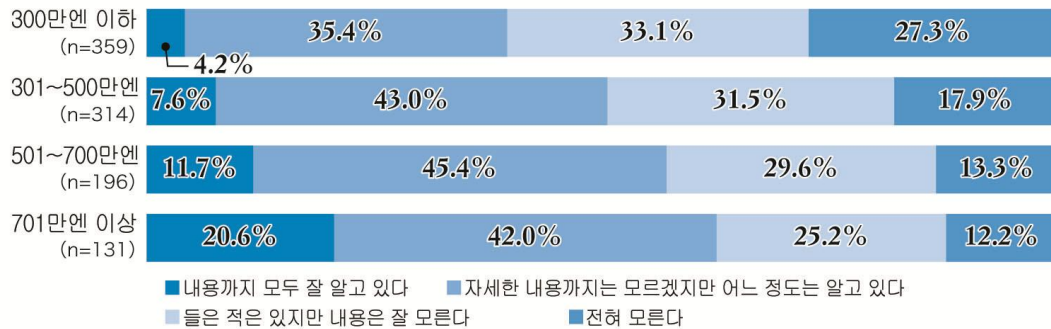


도표5-13 <참고> 지난 번 인지 조사 중 대출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선택지	300만원 이하		301~500만원		501~700만원		701만원 이상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15	4.2%	24	7.6%	23	11.7%	27	20.6%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127	35.4%	135	43.0%	89	45.4%	55	42.0%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19	33.1%	99	31.5%	58	29.6%	33	25.2%
전혀 모른다	98	27.3%	56	17.9%	26	13.3%	16	12.2%
합계	359	100%	314	100%	196	100%	1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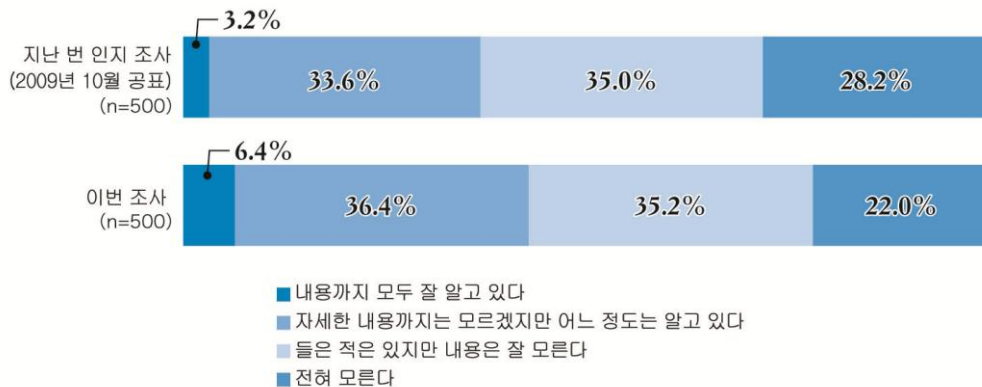
(*1)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③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 상황

현재 대출잔고가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6.4%)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6.4%)를 합하여 42.8%(지난 번 인지 조사^(*)와 비교하여 6.0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14 현재 대출잔고가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선택지	지난 번 인지 조사 (2009년 10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	16	3.2%	32	6.4%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168	33.6%	182	36.4%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75	35.0%	176	35.2%
전혀 모른다	141	28.2%	110	22.0%
합계	500	100%	500	100%



(*)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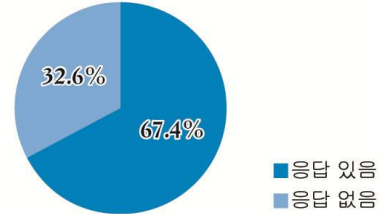
④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

대출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42.9%(지난 번 인지 조사^(*))와 비교하여 8.1포인트 상승)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27.1%, 중립적인(기타) 의견이 16.4%,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13.6%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량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33.8%로 나타난 반면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는 51.9%에 달했다.

도표5-15 대출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응답 상황

(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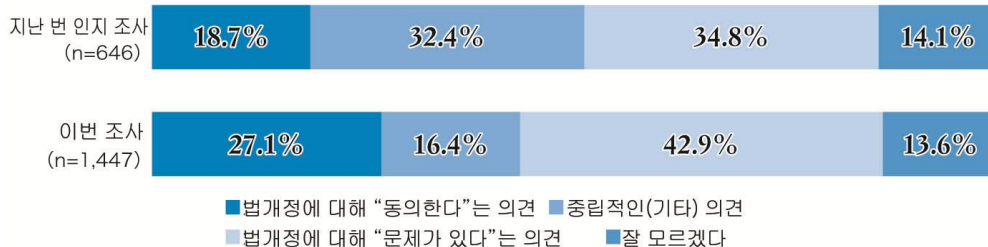
	응답자수	%
응답 있음	1,347	67.4%
응답 없음	653	32.6%
합계	2,000	16.7%



의견의 분류	정의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동의한다”, “어쩔 수는 일이다”, “더 빨리 했으면 좋았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그다지 관계가 없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의견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곤란하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다”,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한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도표5-16 대출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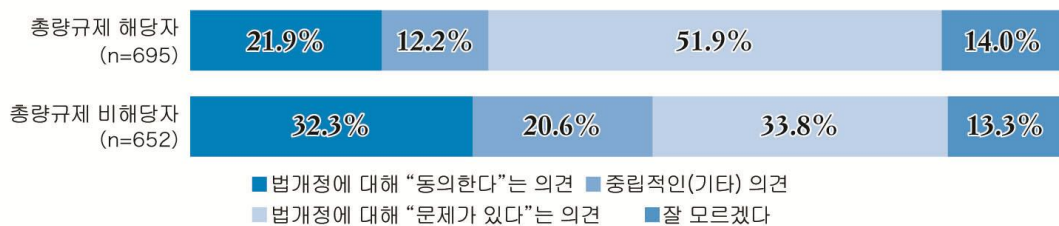
	지난 번 인지 조사 (2009년 10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121	18.7%	392	27.1%
중립적인(기타) 의견	209	32.4%	237	16.4%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225	34.8%	621	42.9%
잘 모르겠다	91	14.1%	197	13.6%
합계	646	100.0%	1,447	100.0%



(*1)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도표5-17 대출이용자(총량규제 해당자·비해당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분류

	총량규제 해당자(n=695)		총량규제 비해당자(n=652)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160	21.9%	232	32.3%
중립적인(기타) 의견	89	12.2%	148	20.6%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378	51.9%	243	33.8%
잘 모르겠다	102	14.0%	95	13.3%
합계	729	100.0%	718	100.0%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 법개정에 대한 의견의 내용

대출이용자의 법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34.2%) , “다중채무자를 줄일 수 있다”(17.1%)와 같은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엄격한 개정이며 철폐했으면 한다(행정기관에 요망)”(16.9%),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곤란하다”(16.4%)와 같은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표5-18 대출이용자 중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 의견의 내용

(n=392)

응답내용	응답자수	%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134	34.2%
다중채무자를 줄일 수 있다	67	17.1%
대출받은 입장으로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7	12.0%
총량규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42	10.7%
그레이트론 금리의 폐지는 뜻 깊은 일이다	35	8.9%
조금 더 빨리 개정하기를 바랐다	24	6.1%
악질적인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 한다	21	5.3%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12	3.1%
기타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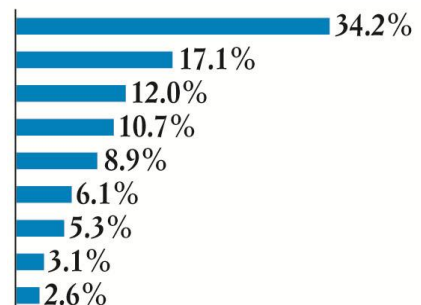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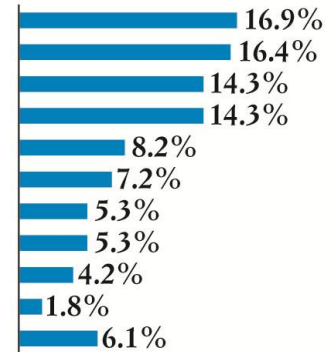


도표5-19 대출이용자가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의견의 내용

(n=621)

응답내용	응답자수	%
엄격한 개정이며 철폐했으면 한다(행정기관에 요망)	105	16.9%
생활이 안될 것 같아 곤란하다	102	16.4%
수입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소비자를 위한 개정인지 의문)	89	14.3%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89	14.3%
정규 대부업체가 없어지면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	51	8.2%
상환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45	7.2%
이런 불경기 속에서 왜 하필 지금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33	5.3%
서류가 늘어나는 등 번거롭다	33	5.3%
법률이 개정되면 자기파산할지도 모른다	26	4.2%
개인정보가 특정기관에 등록되는 것 같은데 불쾌하다	11	1.8%
기타	37	6.1%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⑤ 세이프티넷(safety net)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 일반소비자의 세이프티넷에 관한 인지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세이프티넷의 인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이프티넷 전체의 인지율^(*)은 10.7%(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0.8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20 일반소비자의 각 세이프티넷에 대한 인지도(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변호사 및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의 상담창구	406	12.2%	142	14.2%
국민생활센터와 같은 단체의 상담창구	346	10.4%	100	10.0%
정부 및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담창구	286	8.6%	90	9.0%
생활협동조합이나 노동금고, 신용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제도	215	6.5%	70	7.0%
합계	3,329	-	1,000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각 세이프티넷의 인지율과 응답자수로 구한 가중평균치.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대출이용자의 세이프티넷에 관한 인지도

대출이용자의 세이프티넷 전체 인지율^(*1)은 14.7%(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 결과와 비교하여 3.9포인트 감소)로 나타났으며,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의 상담창구’가 1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생활센터와 같은 단체의 상담창구’가 13.9%, “정부나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담창구”가 13.0%로 나타났다.

도표5-21 대출이용자의 각 세이프티넷에 대한 인지도(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변호사 및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의 상담창구	192	22.8%	384	19.2%
국민생활센터와 같은 단체의 상담창구	151	17.9%	278	13.9%
정부 및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담창구	144	17.1%	260	13.0%
생활협동조합이나 노동금고, 신용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제도	126	14.9%	182	9.1%
합계	843	-	2,000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각 세이프티넷의 인지율과 응답자수로 구한 가중평균치.

(*2)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⑥ 세이프티넷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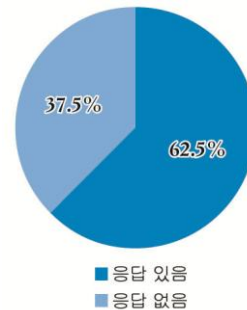
세이프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혹은 “현재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출이용자의 세이프티넷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세이프티넷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34.7%, “중립적(기타)”이라는 의견이 12.0%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이용자 중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세이프티넷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44.9%, 총량규제 비해당자의 경우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69.2%로 나타났다.

도표5-22 세이프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출이용자의 세이프티넷에 대한 의견의 응답 상황

(n=120)

	응답자수	%
응답 있음	75	62.5%
응답 없음	45	37.5%
합계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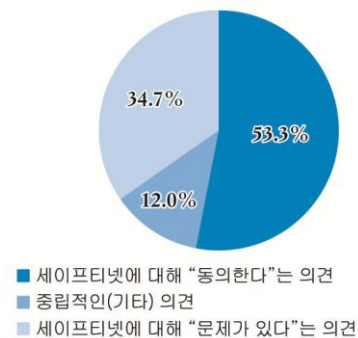


의견의 분류	정의
세이프티넷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	“좋은 제도다”, “필요하다”,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세이프티넷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그다지 관계가 없다”와 같은 세이프티넷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의견
세이프티넷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이용하기 불편하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한다” 등과 같은 세이프티넷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도표5-23 세이프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출이용자의 세이프티넷에 대한 의견의 분류

(n=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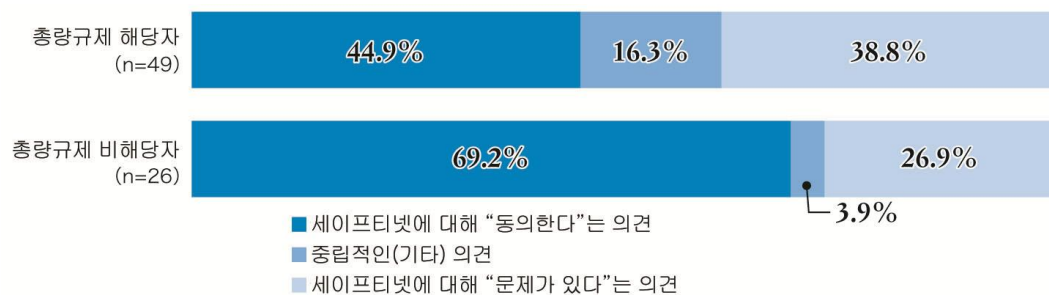
	응답자수	%
세이프티넷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	40	53.3%
중립적인(기타) 의견	9	12.0%
세이프티넷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26	34.7%
합계	75	100.0%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도표5-24 세이프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출이용자(총량규제 해당자·
비해당자)의 세이프티넷에 대한 의견의 분류

	총량규제 해당자		총량규제 비해당자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세이프티넷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22	44.9%	18	69.2%
중립적인(기타) 의견	8	16.3%	1	3.9%
세이프티넷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19	38.8%	7	26.9%
합계	49	100.0%	26	100.0%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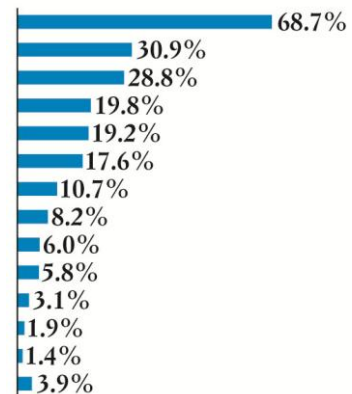
⑦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 이용자가 총량규제의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의 행동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의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절약하여(현재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 지금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늘린다”가 30.9%,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매달 지출을 조절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가 2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환을 포기하고 자기파산·채무정리(과불금의 반환청구 포함) 절차를 밟는다”(19.8%),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으로부터 빌린다”(17.6%)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했다.

도표5-25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이용자가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의 행동(복수응답)

(n=635)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생활비를 절약하여(현재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 지금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	436	68.7%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늘린다(배우자의 파트타임 등을 포함)	196	30.9%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매달 지출을 조절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	183	28.8%
상환을 포기하고 자기파산·채무정리(과불금의 반환청구 포함) 절차를 밟는다	126	19.8%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담창구에 상담한다	122	19.2%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으로부터 빌린다	112	17.6%
보유자산을 매각한다	68	10.7%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지불을 연기해서 자금을 변통한다	52	8.2%
거래처에 대금 지불을 연기해서 자금을 변통한다	38	6.0%
기타 자금조달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을 변통한다	37	5.8%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자금을 변통한다	20	3.1%
불법사금융 등 무등록 업체로부터 빌린다	12	1.9%
기타	9	1.4%
모르겠다	25	3.9%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⑧ 채무 완제자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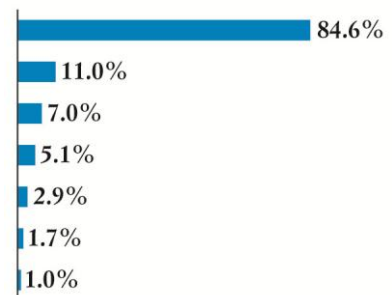
● 대출금의 완제 방법

과거에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금은 대출잔고가 없는 채무 완제자를 대상으로 완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나타났다.

도표5-26 채무 완제자의 대출금 완제 방법(복수응답)

(n=20,672)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	17,489	84.6%
적금을 해약하여 상환했다	2,270	11.0%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빌려서 상환했다	1,456	7.0%
자기파산 등과 같은 법적 채무정리를 했다	1,051	5.1%
과불금 반환청구를 했다	606	2.9%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여 상환했다	358	1.7%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상환했다	217	1.0%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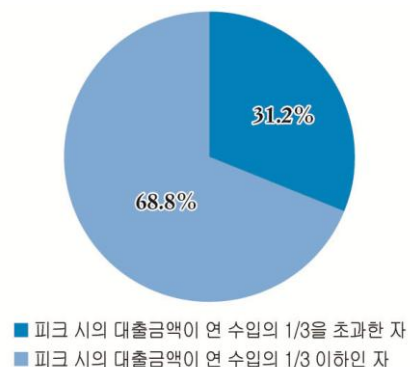
● 대출이 피크였을 때 대출잔고가 총량규제에 해당됐는지 여부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라고 응답한 채무 완제자 중 31.2%는 “대출이 피크였을 때 대출잔고가 그 당시 연 수입의 1/3을 초과했다”라고 응답했다.

도표5-27 채무완제자의 대출 피크 시 대출잔고와 대출잔고가 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n=510)

선택지	응답자수	%
피크 시의 대출금액이 연 수입의 1/3을 초과한 자	159	31.2%
피크 시의 대출금액이 연 수입의 1/3 이하인 자	351	68.8%
합계	5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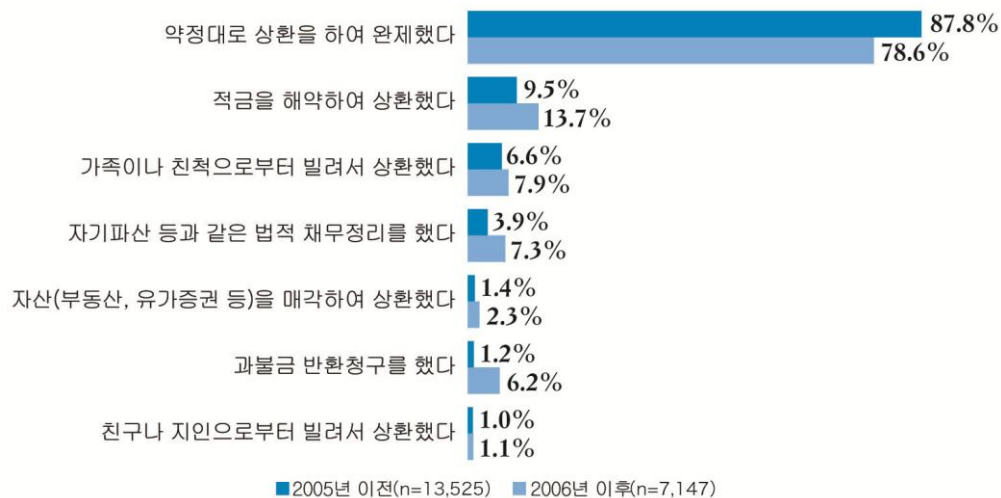
● 완제시기에 따른 완제 방법의 차이

2005년 이전에 채무를 완제한 자와 개정 대부업법^(*)이 성립된 2006년 이후에 채무를 완제한 자의 완제방법에 대해 비교한 결과,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5년 이전에 채무를 완제한 자의 경우는 87.8%인데 비해 2006년 이후에 채무를

완제한 경우는 78.6%로 9.2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자기파산과 같은 법적인 채무정리를 했다”라고 한 응답은 2005년 이전에 채무를 완제한 자의 경우 3.9%였으며, 2006년 이후에 채무를 완제한 자의 경우 7.3%(3.4포인트 상승)였고, “과불금 반환 청구를 했다”라고 한 응답은 2005년 이전 채무 완제자의 경우 1.2%인데 비해 2006년 이후 채무 완제자의 경우 6.2%(5.0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28 채무완제자의 대출금 완제 방법(복수응답)

선택지	2005년 이전		2006년 이후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	11,875	87.8%	5,614	78.6%
적금을 해약하여 상환했다	1,290	9.5%	980	13.7%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빌려서 상환했다	888	6.6%	568	7.9%
자기파산 등과 같은 법적 채무정리를 했다	529	3.9%	522	7.3%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여 상환했다	195	1.4%	163	2.3%
과불금 반환청구를 했다	166	1.2%	440	6.2%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상환했다	138	1.0%	79	1.1%
합계	13,525	-	7,147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13일에 ‘상한금리의 인하’와 ‘총량규제의 도입’, ‘대부업의 적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간주 상환’을 폐지, 출자법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완전 시행될 예정.

3)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황

①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와 이용에 대한 고려 여부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잘 알고 있다”(10.6%)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9.2%)를 합하여 49.8%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각한 적이 있다”가 10.6%, “생각한 적이 없다”가 89.4%로 나타났다.

도표5-29 대출이용자의 불법사금융에 관한 인지도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잘 알고 있다	212	10.6%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784	39.2%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872	43.6%
전혀 모른다	132	6.6%
합계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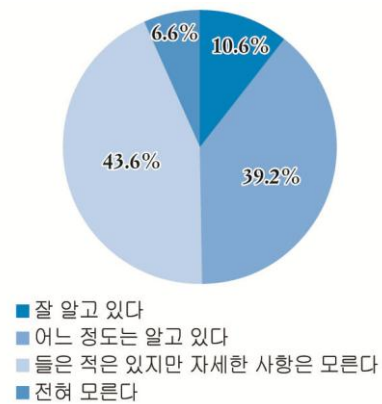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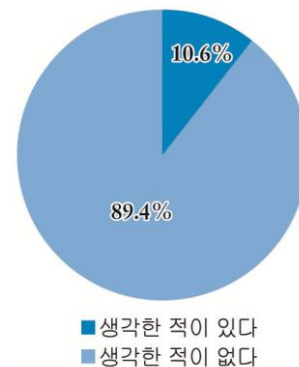


도표5-30 대출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고려 여부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생각한 적이 있다	211	10.6%
생각한 적이 없다	1,789	89.4%
계	2,000	100.0%



②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유무와 이용 경험의 유무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가 9.6%, “접촉한 적이 없다”가 90.4%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1.4%)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3.7%)를 합하여 5.1%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9%로 나타났다^(*1).

도표5-31 대출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유무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접촉한 적이 있다	191	9.6%
접촉한 적은 없다	1,809	90.4%
계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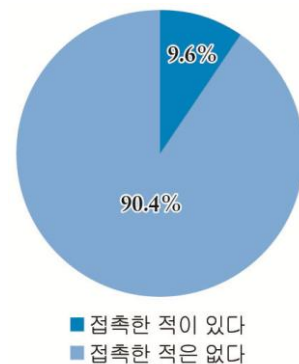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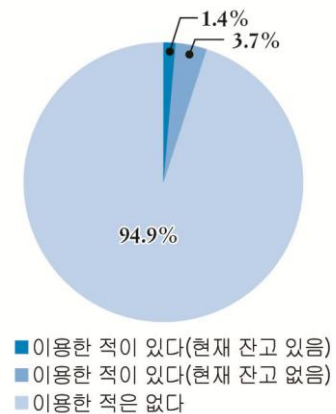


도표5-32 대출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유무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	28	1.4%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	74	3.7%
이용한 적은 없다	1,898	94.9%
계	2,000	100.0%



(*1)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 유무에 대해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를 참고로 살펴보면 대출 경험자(대부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포함한 3,177명)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04명)였으며, 이번 조사의 경우는 대출 경험자(대부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포함한 15,813명)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04명)으로 나타났다.

③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록 대부업체 중 어느 한 곳도 대출을 해 주지 않아서”가 38.8%로 나타났다.

도표5-33 대출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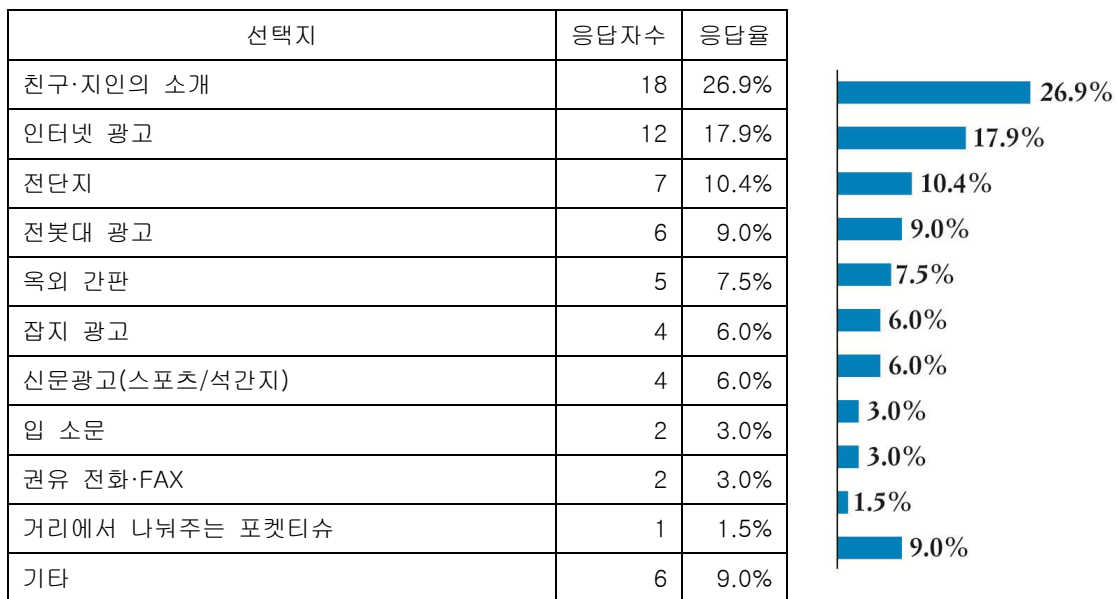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④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로는 ‘친구 및 지인의 소개’(26.9%), ‘인터넷 광고’(17.9%)가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5-34 대출이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복수응답)

(n=67)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⑤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고려 여부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현금화 업체 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잘 알고 있다”(5.8%)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22.3%)를 합하여 28.1%로 나타났으며, 이용을 생각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각한 적이 있다”가 9.9%, “생각한 적은 없다”가 90.1%로 나타났다.

도표5-35 대출이용자의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대한 인지도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잘 알고 있다	116	5.8%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445	22.3%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943	47.2%
전혀 모른다	496	24.7%
합계	2,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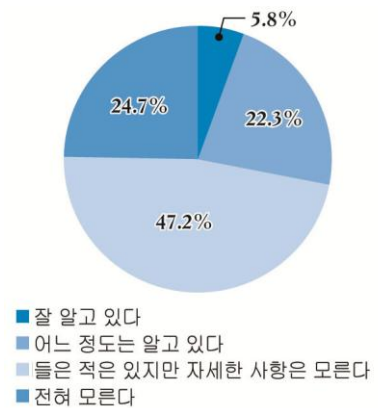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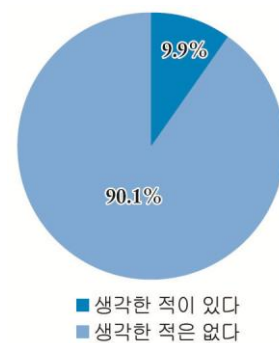


도표5-36 대출이용자의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대한 이용 고려 여부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생각한 적이 있다	198	9.9%
생각한 적은 없다	1,802	90.1%
합계	2,000	100.0%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업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금 목적의 거래 행위는 신용카드회사의 회원 규약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에서 탈퇴 당하는 경우가 있다.

⑥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접촉한 유무와 이용 경험의 유무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접촉한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가 6.2%, “접촉한 적이 없다”가 93.8%로 나타났으며, 이용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1.3%)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2.3%)을 합하여 3.6%로 나타났다.

도표5-37 대출이용자의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에 대한 접촉 유무

(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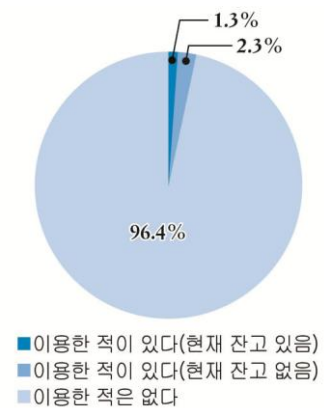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자수	%
접촉한 적이 있다	124	6.2%
접촉한 적은 없다	1,876	93.8%
합계	2,000	100.0%



도표5-38 대출이용자가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 등을 이용한 경험 유무

(n=2,000)

선택지	응답자수	%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	26	1.3%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	46	2.3%
이용한 적은 없다	1,928	96.4%
합계	2,000	100.0%



3.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 결과

1) 신청 및 이용 상황

① 2006년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경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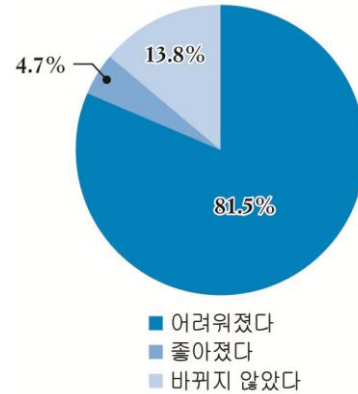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경영 환경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자인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성립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자사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워졌다”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뀌지 않았다”가 13.8%, “좋아졌다”가 4.7%로 나타났다.

도표5-39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경영 환경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어려워졌다	551	81.5%
좋아졌다	32	4.7%
바뀌지 않았다	93	13.8%
합계	676	100.0%



(*1) 2006년 12월 13일에 ‘상한금리의 인하’와 ‘총량규제의 도입’, ‘대부업의 적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간주 상환’을 폐지, 출자법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 부업법이 완전 시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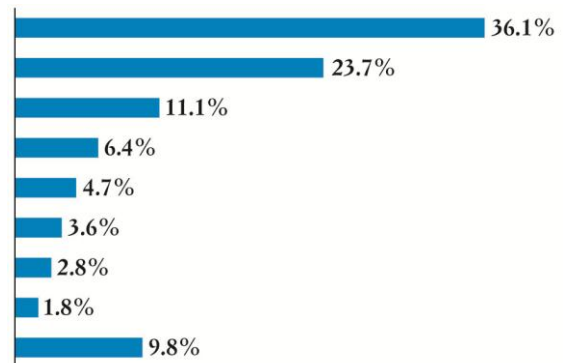
●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했다”(36.1%), “일이 줄었다”(23.7%), “용자를 받기 어려워졌다”(11.1%)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5-40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한 이유

(n=1,311)^(*1)

선택지	응답자수	%
매출이 감소했다	473	36.1%
일이 줄었다	311	23.7%
용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146	11.1%
고객이 줄었다	84	6.4%
판매단가가 내렸다	62	4.7%
경기 악화	47	3.6%
이익이 감소했다	37	2.8%
거래처의 폐업·도산	23	1.8%
기타	128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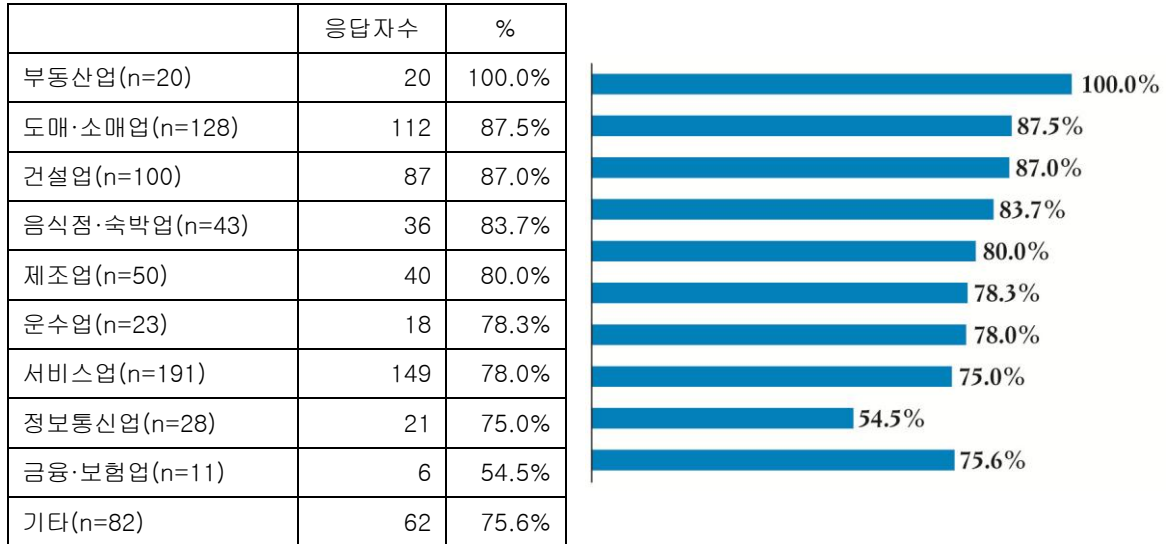


(*1)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중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1,311명

● 업종별로 살펴본 경영환경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100%), ‘도매·소매업’(87.5%), ‘건설업’(87.0%)이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도표5-41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어려워졌다고 한 비율(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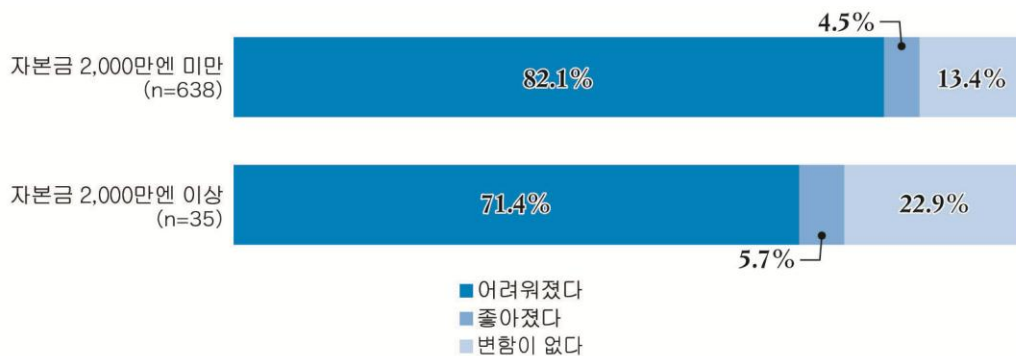


● 사업 규모별로 살펴본 경영환경

사업 규모별로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자본금 2,000만엔 이상의 사업자에 71.4%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는 82.1%로 나타났다.

도표5-42 사업규모별로 살펴본 기업경영자의 경영 환경

선택지	자본금 2,000만엔 미만		자본금 2,000만엔 이상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어려워졌다	524	82.1%	25	71.4%
줄아졌다	29	4.5%	2	5.7%
변함이 없다	85	13.4%	8	22.9%
합계	638	100.0%	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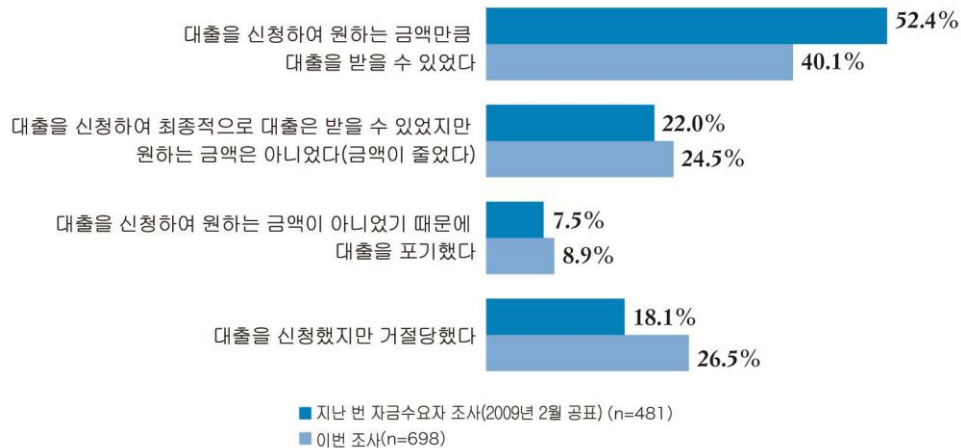
② 대출 신청 결과

● 최근 1년간 대출 신청 결과

최근 1년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가운데 “대출을 신청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2.3포인트 감소, 이하 동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을 신청하여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포기했다”(8.9%),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26.5%)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9.8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도표5-43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대출 신청 결과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대출을 신청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52	52.4%	280	40.1%
대출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대출은 받을 수 있었지만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다(금액이 줄었다)	106	22.0%	171	24.5%
대출을 신청하여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포기했다	36	7.5%	62	8.9%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87	18.1%	185	26.5%
합계	481	100.0%	698	100.0%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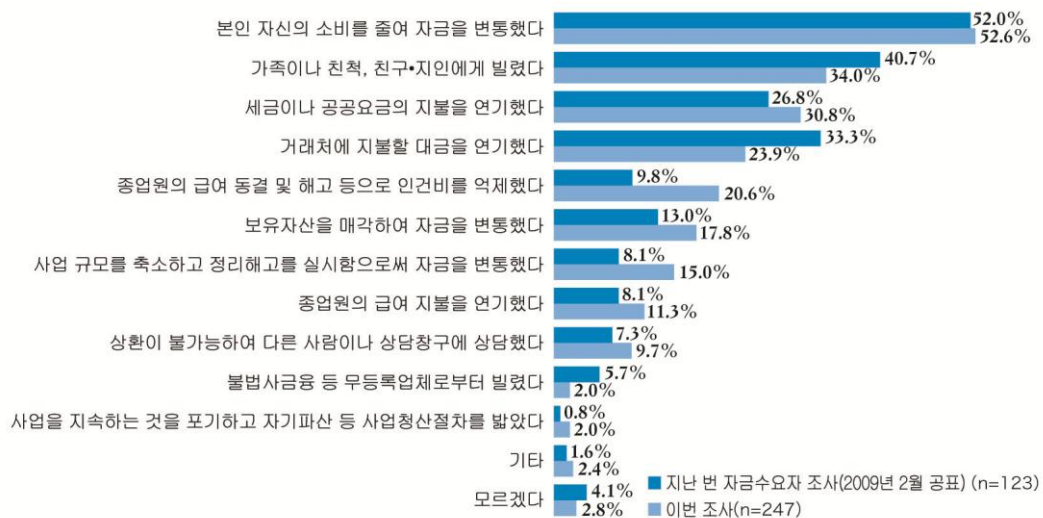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대출을 단념한 후의 행동

“대출을 포기했다/거절당했다”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후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자신의 소비를 줄여 자금을 변통했다”가 52.6%(지난 번 자금수요자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 이하 동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

인에게 빌렸다”가 34.0%(6.7포인트 감소),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지불을 연기했다”가 30.8%(4.0 포인트 상승)로 나타난 반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을 변통했다”(15.0%)나 “종업원의 급여 지불을 연기했다”(11.3%)와 같은 응답도 있었다.

도표5-44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대출을 단념한 후의 행동(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본인 자신의 소비를 줄여 자금을 변통했다	64	52.0%	130	52.6%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	50	40.7%	84	34.0%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지불을 연기했다	33	26.8%	76	30.8%
거래처에 지불할 대금을 연기했다	41	33.3%	59	23.9%
종업원의 급여 동결 및 해고 등으로 인건비를 억제했다	12	9.8%	51	20.6%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변통했다	16	13.0%	44	17.8%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을 변통했다	10	8.1%	37	15.0%
종업원의 급여 지불을 연기했다	10	8.1%	28	11.3%
상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당창구에 상담했다	9	7.3%	24	9.7%
불법사금융 등 무등록업체로부터 빌렸다	7	5.7%	5	2.0%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파산 등 사업청산절차를 밟았다	1	0.8%	5	2.0%
기타	2	1.6%	6	2.4%
모르겠다	5	4.1%	7	2.8%
응답자수	123	-	247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1)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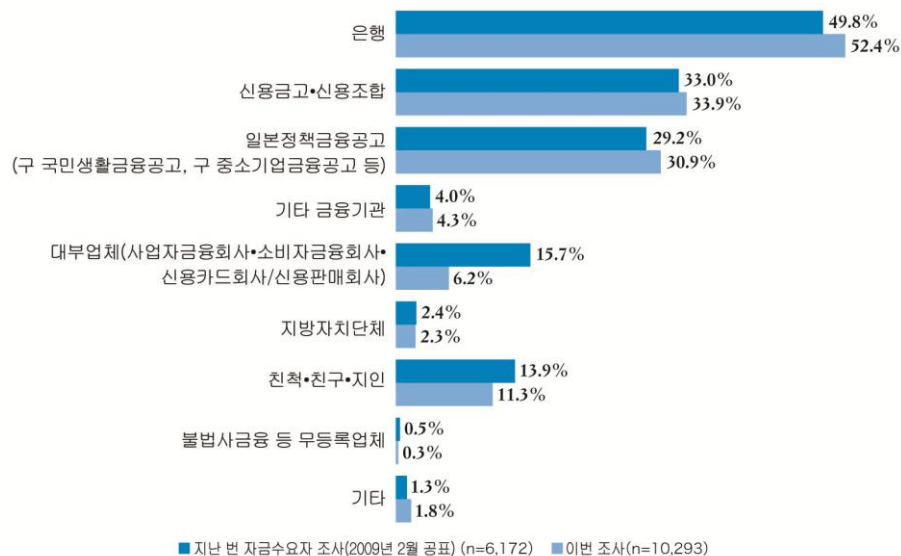
③ 대부업체가 사업자에게 대출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기업 및 개인사업주의 차입처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중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 자금을 대출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은행”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체”는 6.2%로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9.5포인트 감소했다.

도표5-45 자본금 2,000만엔 미만 사업자의 사업성 자금 차입처(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은행	3,075	49.8%	5,391	52.4%
신용금고·신용조합	2,036	33.0%	3,490	33.9%
일본정책금융공고(구 국민생활금융공고, 구 중소기업금융공고 등)	1,802	29.2%	3,181	30.9%
기타 금융기관	245	4.0%	447	4.3%
대부업체(사업자금용회사·소비자금용회사·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969	15.7%	638	6.2%
지방자치단체	150	2.4%	235	2.3%
친척·친구·지인	860	13.9%	1,162	11.3%
불법사금융 등 무등록업체	32	0.5%	26	0.3%
기타	83	1.3%	188	1.8%
응답자수	6,172	—	10,293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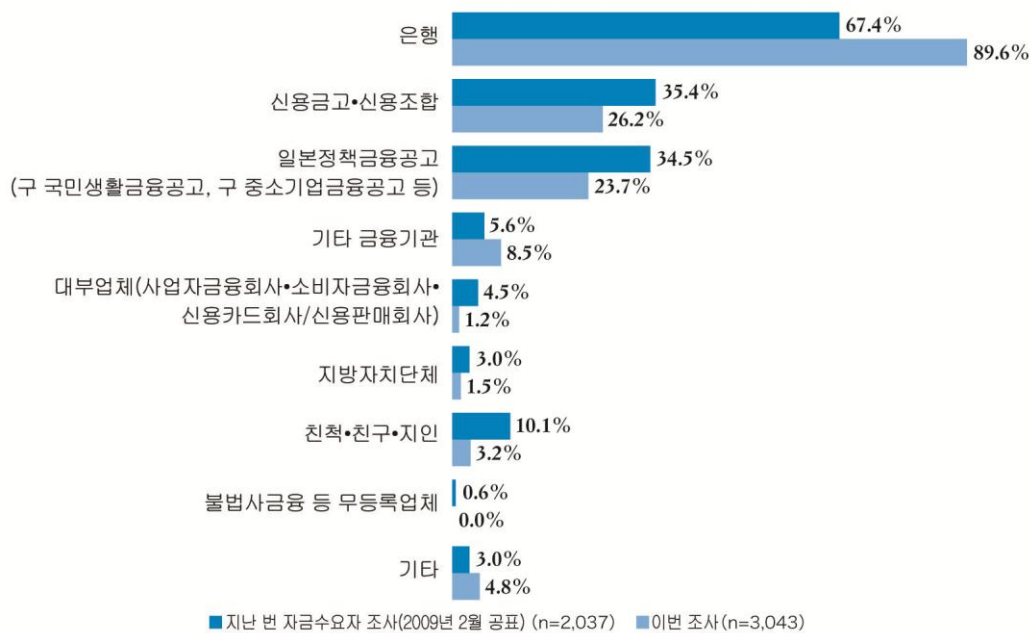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자본금 2,000만엔 이상 기업의 차입처

자본금 2,000만엔 이상 사업자가 사업성 자금을 대출 받은 차입처로는 ‘은행’이 89.6%로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2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1.2%로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도표5-46 자본금 2,000만엔 이상 사업자의 사업성 자금 차입처(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은행	1,372	67.4%	2,728	89.6%
신용금고·신용조합	721	35.4%	797	26.2%
일본정책금융공고(구 국민생활금융공고, 구 중소기업금융공고 등)	703	34.5%	721	23.7%
기타 금융기관	114	5.6%	258	8.5%
대부업체(사업자금용회사·소비자금용회사·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91	4.5%	35	1.2%
지방자치단체	62	3.0%	47	1.5%
친척·친구·지인	206	10.1%	96	3.2%
불법사금융 등 무등록업체	13	0.6%	1	0.0%
기타	62	3.0%	145	4.8%
응답자수	2,037	-	3,0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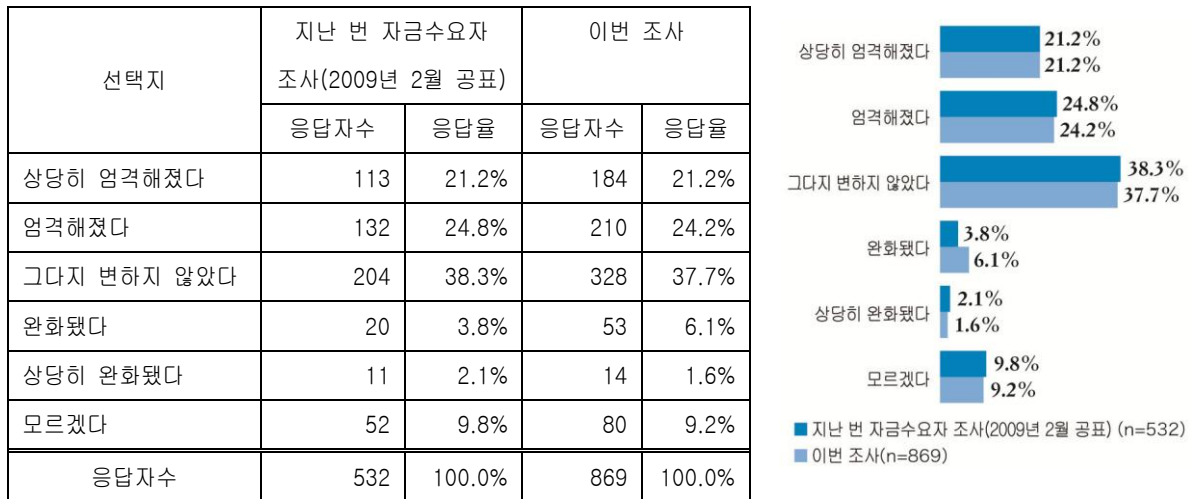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은행의 융자 자세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은행의 융자 자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격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엄격해졌다”(21.2%)와 “엄격해졌다”(24.2%)를 합하여 45.4%(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로 나타났다.

도표5-47 은행의 융자자세(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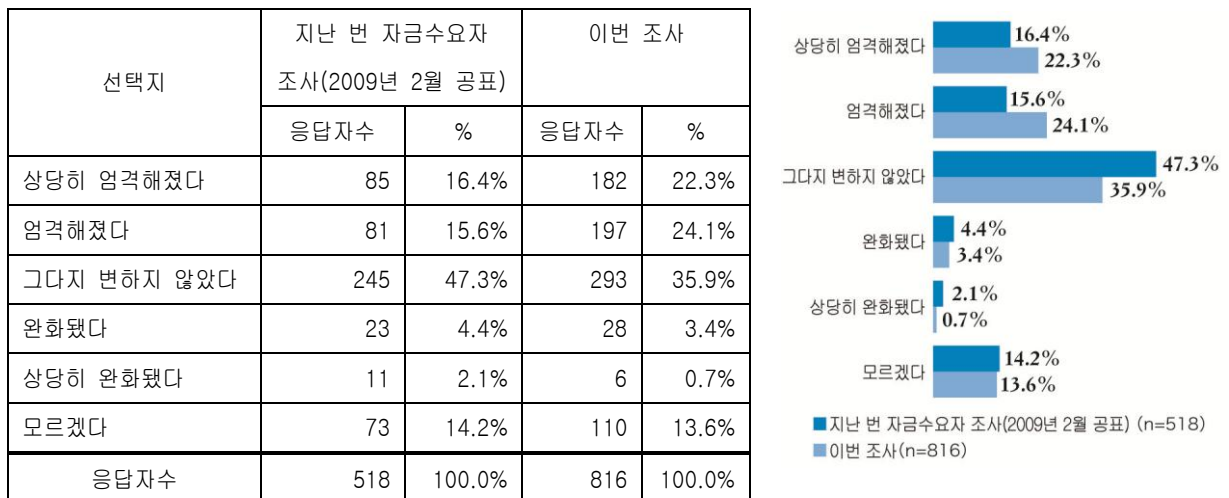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대부업체의 융자 자세

반면 대부업체의 융자 자세에 대해서는 “엄격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엄격해졌다”(22.3%)와 “엄격해졌다”(24.1%)를 합하여 46.4%로 나타나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1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5-48 대부업체의 융자자세(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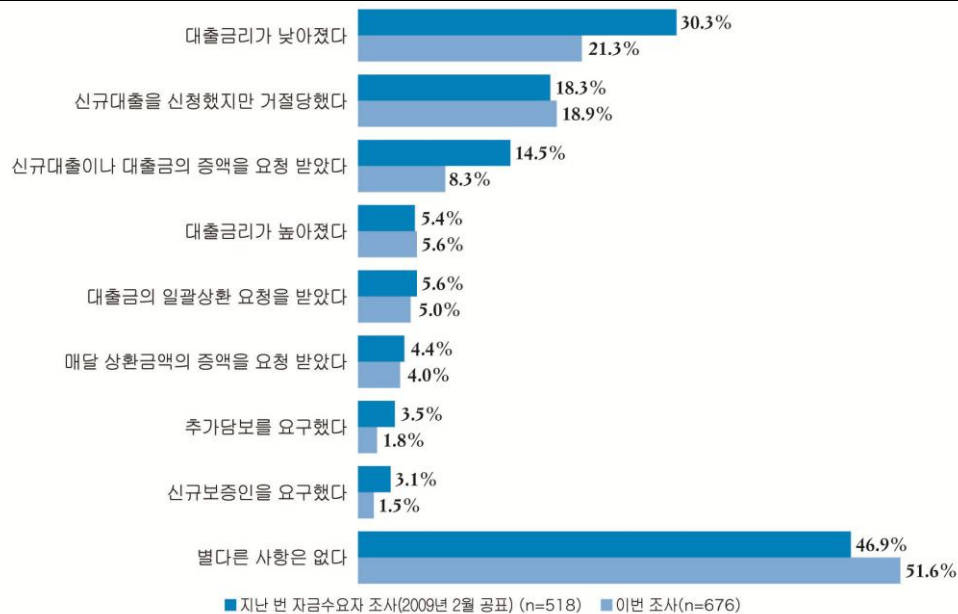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대부업체와의 거래 상황

최근 1년간 대부업체와의 거래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가 21.3%(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9.0포인트 감소, 이하 동일), “신규대출이나 대출금의 증액을 요청 받았다”가 8.3%(6.2포인트 감소)로 나타나 대출을 받는 쪽에 유리한 거래 항목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신규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9%(지난 번 조사와 거의 비슷하다)로 나타났다.

도표5-49 대부업체와의 거래상황(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대출금리가 낮아졌다	157	30.3%	144	21.3%
신규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95	18.3%	128	18.9%
신규대출이나 대출금의 증액을 요청 받았다	75	14.5%	56	8.3%
대출금리가 높아졌다	28	5.4%	38	5.6%
대출금의 일괄상환 요청을 받았다	29	5.6%	34	5.0%
매달 상환금액의 증액을 요청 받았다	23	4.4%	27	4.0%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18	3.5%	12	1.8%
신규보증인을 요구했다	16	3.1%	10	1.5%
별다른 사항은 없다	243	46.9%	349	51.6%
응답자수	518	-	676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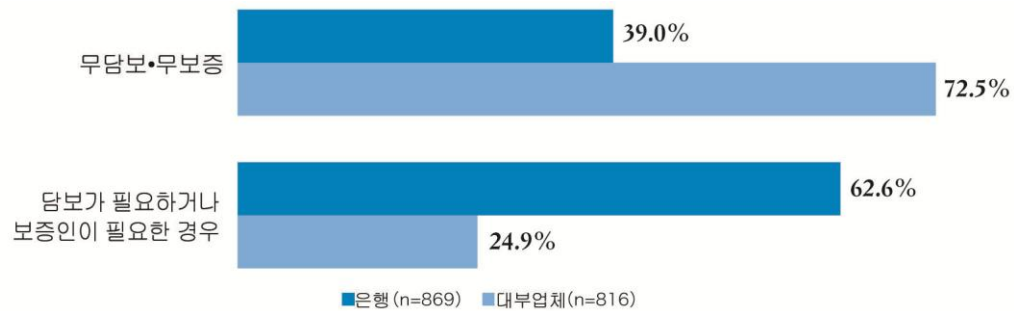
④ 대출의 담보상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조사 결과

● 대출의 담보 상황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출 시의 담보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거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62.6%로 나타난 반면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무담보·무보증”이 72.5%로 나타났다.

도표5-50 대출의 담보 상황(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선택지	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	
	응답자수	응답율	응답자수	응답율
무담보·무보증	339	39.0%	592	72.5%
담보가 필요하거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544	62.6%	203	24.9%
응답자수	869	-	816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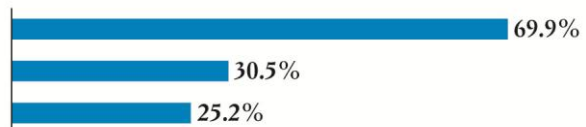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금’이 69.9%, ‘설비자금’이 30.5%, ‘기타자금’이 25.2%로 나타났다.

도표5-51 대출의 담보 상황(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n=816)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운전자금	570	69.9%
설비자금	249	30.5%
기타자금	206	25.2%
합계	816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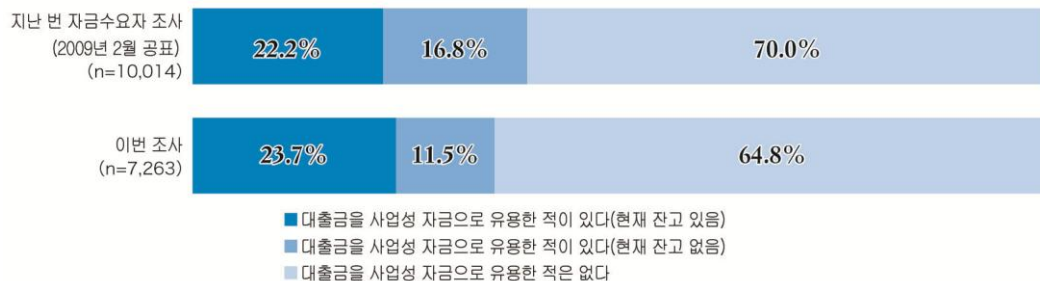
⑤ 개인용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유용에 대한 조사 결과

● 개인용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유용 비율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용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2%가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해,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표5-52 개인용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유용 비율(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선택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2009년 2월 공표)		이번 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적이 있다 (현재 잔고 있음)	2,229	22.2%	1,722	23.7%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적이 있다 (현재 잔고 없음)	1,686	16.8%	835	11.5%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	6,099	70.0%	4,706	64.8%
응답자수	10,014	100.0%	7,2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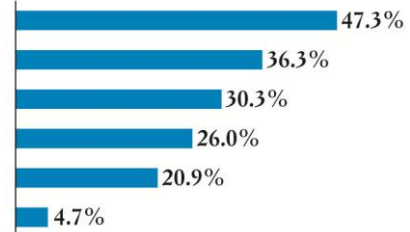
(*)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 개인용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유용 목적

개인용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목적으로는 ‘물품대금의 지급’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에 상환’이 36.3%, ‘사원의 급여 지불’이 30.3%로 나타났다.

도표5-53 개인용 대출금의 사업성 자금 유용 목적(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물품대금 지급 시 부족한 금액을 보충했다	517	47.3%
은행에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을 보충했다	396	36.3%
사원의 급여를 지불 시 부족한 금액을 보충했다	331	30.3%
사업상 투자 시 부족한 금액을 보충했다	284	26.0%
사업성 융자의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을 보충했다	228	20.9%
기타	51	4.7%
응답자수	1,092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 제삼자에게 사업성 자금 목적으로 의뢰한 대출

제삼자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줬으면 좋겠다(사업성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라고 의뢰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6%가 “의뢰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의뢰한 대상은 ‘가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지인’이 32.3%, ‘회사의 공동경영자’가 24.6%로 나타났다.

도표5-54 제삼자에게 사업성 자금 명목의 대출을 의뢰한 여부(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n=1,675)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의뢰한 적이 있다	362	21.6%
의뢰한 적은 없다	1,313	78.4%
합계	1,6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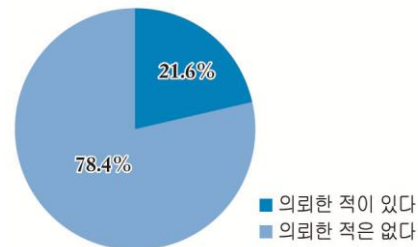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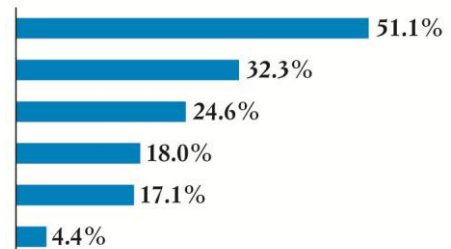


도표5-55 사업성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의뢰한 대상(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가족	185	51.1%
친구·지인	117	32.3%
회사의 공동 경영자	89	24.6%
거래처	65	18.0%
본인의 회사나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종업원	62	17.1%
기타	16	4.4%
응답자수	362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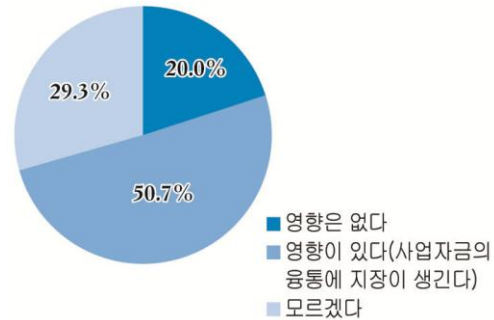
● 총량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총량규제에 해당하여 개인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자금 유통에 미칠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이 있다(사업자금의 유통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도표5-56 총량규제가 사업에 미칠 영향(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영향은 없다	135	20.0%
영향이 있다(사업자금의 유통에 지장이 생긴다)	343	50.7%
모르겠다	198	29.3%
합계	676	100.0%



⑥ 대부업체의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이용 의향

대출이용자 중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향후 대부업체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22.6%)와 “필요하다면 이용을 검토해보겠다”(53.0%)를 합하여 75.6%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가 43.2%,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가 43.1%,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대출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서)”가 36.0%로 나타났다.

도표5-57 대부업체의 향후 이용 의향(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153	22.6%
필요하다면 이용을 검토해보겠다	358	53.0%
앞으로도 이용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125	18.5%
모르겠다	40	5.9%
합계	6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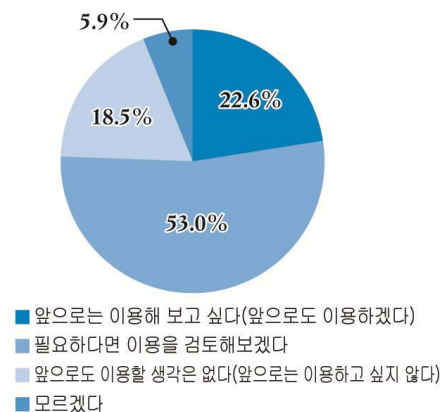


도표5-58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복수응답)

(n=511)

선택지	응답자수	응답율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서	260	50.9%
보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221	43.2%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	220	43.1%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서)	184	36.0%
소액이라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75	34.2%
심사가 빨라서	143	28.0%
단기간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34	26.2%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07	20.9%
대부업체 이외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47	9.2%
친숙해서	31	6.1%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7	1.4%
기타	12	2.3%
응답자수	511	-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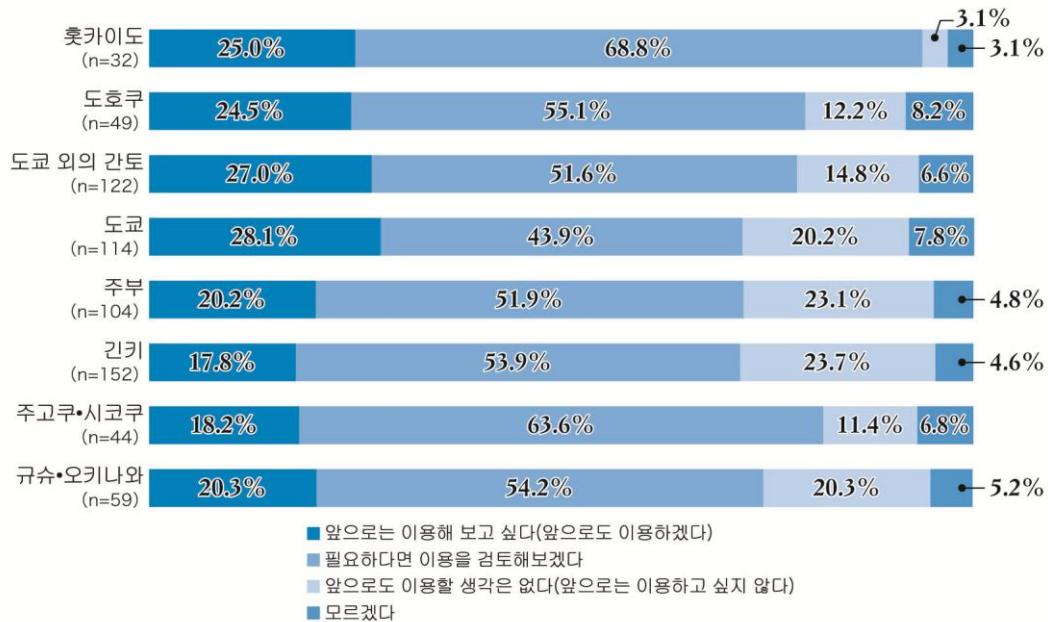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본 이용 의향

지역별로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필요하다면 이용을 검토해보겠다”를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쿄’(72.0%), ‘주부’(72.1%), ‘긴키’(71.7%), ‘규슈·오키나와’(74.5%)로 나타났다. 반면 ‘홋카이도’의 경우 93.8%로 나타났다.

도표5-59 향후 대부업체를 이용할 의향(지역별)

선택지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외의 간토		도쿄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8	25.0%	12	24.5%	33	27.0%	32	28.1%
필요하다면 이용을 검토해보겠다	22	68.8%	27	55.1%	63	51.6%	50	43.9%
앞으로도 이용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1	3.1%	6	12.2%	18	14.8%	23	20.2%
모르겠다	1	3.1%	4	8.2%	8	6.6%	9	7.8%
합계	32	100.0%	49	100.0%	122	100.0%	114	100.0%

선택지	주부		긴키		주고쿠·시코쿠		규슈·오키나와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21	20.2%	27	17.8%	8	18.2%	12	20.3%
필요하다면 이용을 검토해보겠다	54	51.9%	82	53.9%	28	63.6%	32	54.2%
앞으로도 이용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24	23.1%	36	23.7%	5	11.4%	12	20.3%
모르겠다	5	4.8%	7	4.6%	3	6.8%	3	5.2%
합계	104	100.0%	152	100.0%	44	100.0%	59	100.0%



2)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 상황

①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경향과 구체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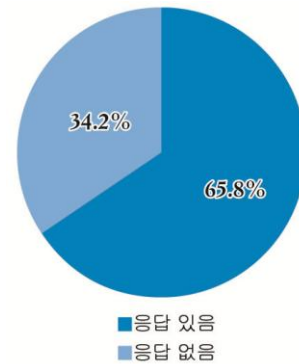
●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대출이용자 중 기업경영자와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의견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 의견이 25.6%, “중립적(기타)이다”라는 의견이 15.7%, “잘 모르겠다”라고 한 의견이 12.9%로 나타났다.

도표5-60 대출 이용자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응답상황

(n=1,675)

	응답자수	%
응답 있음	1,102	65.8%
응답 없음	573	34.2%
합계	1,6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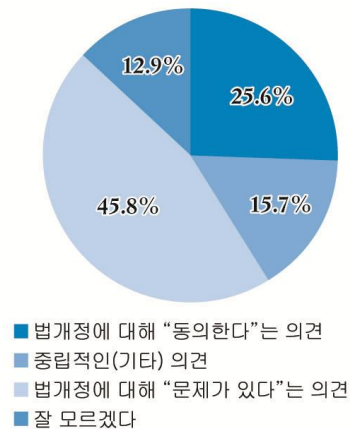


의견의 분류	정의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동의한다”, “어쩔 수는 일이다”, “더 빨리 했으면 좋았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
중립적인(기타) 의견	“그다지 관계가 없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의견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곤란하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다”,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한다”와 같은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도표5-61 대출 이용자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분류

(n=1,102)

	응답자수	%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	298	25.6%
중립적인(기타) 의견	183	15.7%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	534	45.8%
잘 모르겠다	150	12.9%
합계	1,165	100.0%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 법개정에 대한 의견의 내역

대출이용자 중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법개정에 대한 자유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48.0%), “그레이트론 금리의 폐지는 상당히 뜻 깊은 일이다”(10.1%)와 같은 법개정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21.5%), “자영업자로서 대출이 어려워져 앞으로가 걱정이다”(18.4%)와 같은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도표5-62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의 내역

(n=298)

응답내용	응답자수	%
적절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143	48.0%
그레이트론 금리의 폐지는 상당히 뜻 깊은 일이다	30	10.1%
악질적인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27	9.1%
빚진 처지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6	8.7%
다중채무자를 줄일 수 있다	23	7.7%
총량규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19	6.4%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17	5.7%
더 빨리 개정했으면 좋았겠다	9	3.0%
기타	4	1.3%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도표5-63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내역

(n=534)

응답내용	응답자수	%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115	21.5%
자영업자로 대출이 불가능해져 앞으로가 불안하다	980	18.4%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한다	63	11.8%
이 개정은 숨통을 조이듯이 자금 유통을 어렵게 할 것 같다	51	9.6%
대출의 제한이 엄격해져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	45	8.4%
자금난에 빠질 회사가 늘어날 것이다	41	7.7%
상환능력이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35	6.6%
간편하다는 점이 번거로워진다	26	4.9%
최근의 경제정세 등을 고려한 유연성이 있는 대응을 했으면 한다	21	3.9%
왜 신용카드회사에 자신의 소득을 알려야만 하는가?	6	1.1%
기타	33	6.1%

(주 1) 하나의 의견에 복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수 의견으로 분할했다.

3)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황

① 불법사금융의 인지와 이용을 고려한 여부

대출이용자 중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잘 알고 있다”(13.0%)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8.8%)를 합하여 51.8%로 나타났으며, 이용을 생각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각한 적이 있다”가 18.2%, “생각한 적은 없다”가 81.8%로 나타났다.

도표5-64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불법사금융에 관한 인지도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잘 알고 있다	88	13.0%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262	38.8%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268	39.6%
전혀 모른다	58	8.6%
합계	6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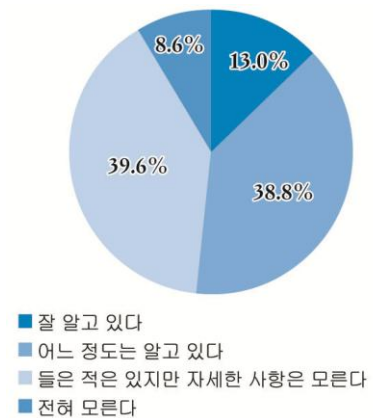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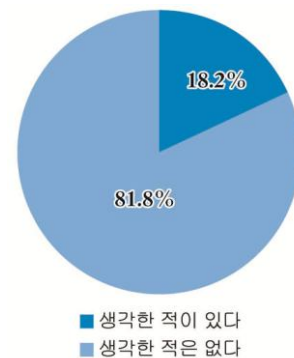


도표5-65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불법사금융의 이용을 고려한 여부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생각한 적이 있다	123	18.2%
생각한 적은 없다	553	81.8%
합계	676	100.0%



②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유무와 이용 경험 유무

대출이용자 중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가 18.9%, “접촉한 적은 없다”가 81.1%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2.4%),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5.5%)를 합하여 7.9%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2.1%로 나타났다.

도표5-66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여부

(n=676)

선택지	응답자수	%
접촉한 적이 있다	128	18.9%
접촉한 적은 없다	548	81.1%
합계	6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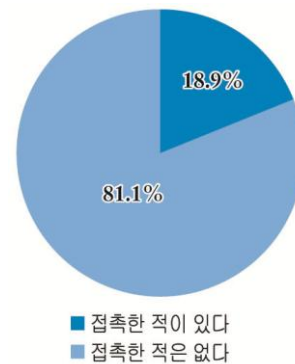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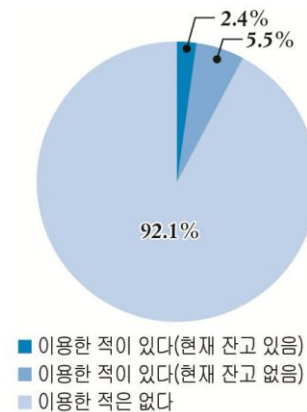


도표5-67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여부

(n=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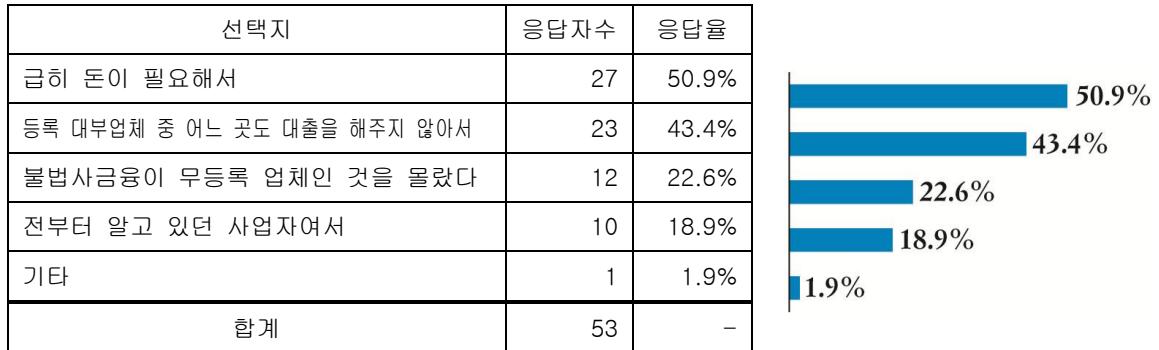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자수	%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있음)	16	2.4%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잔고 없음)	37	5.5%
이용한 적은 없다	623	92.1%
합계	676	100.0%



③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 대부업체 중 어느 곳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가 43.4%로 나타났다.

도표5-68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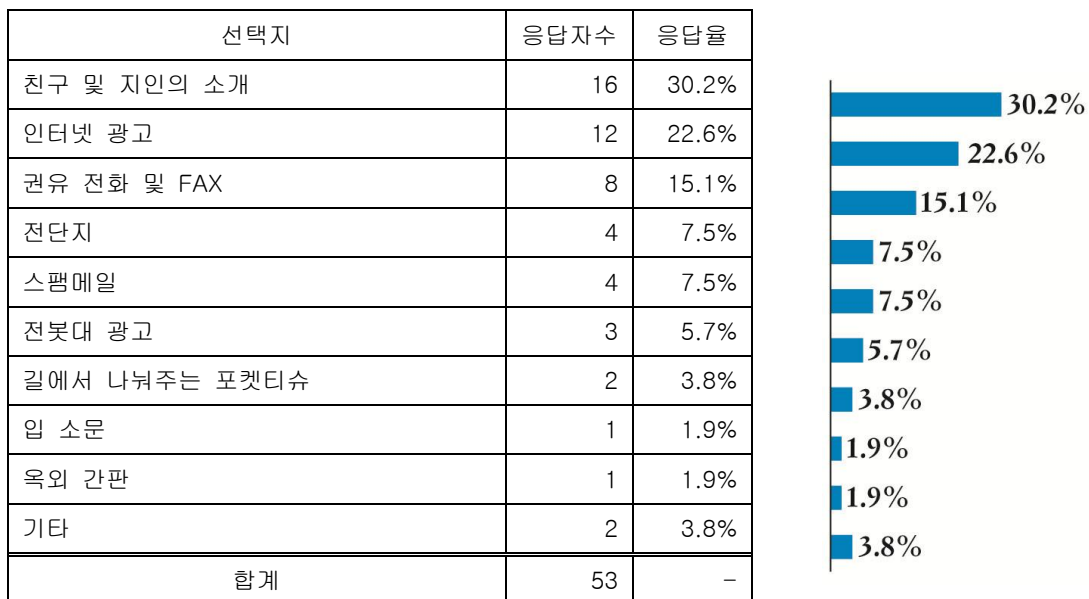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으로 인해 n이 일치하지 않는다.

④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로는 ‘친구·지인의 소개’(30.2%), ‘인터넷 광고’(22.6%), ‘권유 전화·FAX’(15.1%)가 상위를 차지했다.

도표5-68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가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복수응답)



4. 본 장의 정리

1) 소비자 대상 앙케트 조사 결과

① 2006년 당시(개정 대부업법^{(*)1})와 비교한 생활 환경의 변화

- 대출 이용자의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해 2006년 당시와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3%가 “실수령액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한 반면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1.3%로 나타났다.
- 고용형태별^{(*)2}로 생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형태 전반에 걸쳐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수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비정규직 고용자의 응답에서는 정규직 고용자의 응답과 비교하여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21.7%),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11.1%), “직장이 도산했다”(3.6%) 등이 높았다.

(*)1 2006년 12월 13일, ‘상한금리의 인하’, ‘총량규제의 도입’, ‘대부업의 적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해 같은 해 12월 20일에 공포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간주 상환’을 폐지하고 출자법의 상한금리 인하, 총량규제 도입, 재산적 기초 요건 인상(5,000만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2 앙케트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파트타임·아르바이트)”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② 처음 대출을 받은 업체와 그 업체를 선택한 이유

-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23.9%, ‘소비자금융회사’가 15.9%로 나타났으며, 소득 계층별로 살펴본 경우에는 연수입이 낮을수록 첫 대출 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이용자가 첫 대출 업체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3}로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가 40.0%,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가 37.7%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에 충당”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대출금 상환에 충당”(21.5%), “물품 구입”(14.5%), “용돈으로 사용”(1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탁을 받고”(4.6%)라는 응답도 있었다.
-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탁을 받고”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의뢰를 받은 상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척’(75.0%), ‘친구·지인’(58.3%), ‘직장의 경영자·상사’(25.0%) 등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 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관한 설문은 복수응답 설문이다.

③ 최근 1년간 대출을 신청한 결과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

- 최근 1년간 소비자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 이용자 중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했다”(29.0%)와 “최종적으로 대출을 거절 당했다”(18.9%) 라고 응답한 비율은 합산하여 47.9%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4) 결과와 비교하여 9.2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답한 대출 이용자(47.9%)를 대상으로 이 후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출을 포기했다”가 44.9%(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4) 결과와 비교해 9.8포인트 감소, 이하 동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지인에게 빌렸다”가 33.8%(5.8포인트 감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했다”가 16.7%(1.6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파산과 같은 채무 정리 절차를 밟았다”(7.6%)나 “다른 사람이나 상담 창구에 상담했다”(5.1%)와 같은 응답도 있었다.

(*4)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

④ 대부업법 개정에 관한 인지 상황과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경우는 59.5%(지난 번 인지 조사^(*5)와 비교해 10.0포인트 상승, 이하 동일),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61.6%(11.2포인트 상승)가 개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 대출 이용자의 소득 계층별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 연 수입이 300만엔 이하의 경우는 54.9%, 301~500만 엔의 경우는 57.8%, 501~700만 엔의 경우는 62.9%, 701만엔 이상의 경우는 74.8%로 나타나 지난 번 인지 조사^(*5)에 이어 연 수입이 낮을수록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총량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업주부(전업남편)^(*6)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용까지 모두 잘 알고 있다”(6.4%),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6.4%)로 나타났으며, 약 60%가 법개정에 대해 “잘 모르겠다”,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 대출 이용자의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한 의견이 27.1%, 중립적인(그 외) 의견이 16.4%,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의견이 42.9%, “잘 모르겠다”가 13.6%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번 인지 조사^(*5)와 비교해 8.1포인트 상승했다.
- 총량규제 해당자와 비해당자 중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량규제 비해당자의 경우 33.8%로 나타난 반면 총량규제 해당자의 경우는 51.9%에 달했다.

(*5) 2009년 10월에 공표된 ‘대부업법 개정의 인지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보고.

(*6) 총량규제에 의해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금 금액은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 수입의 1/3까지로 제한되며 대출 시는 배우자의 동의 및 부부관계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⑤ 세이프티넷(safety net)에 대한 인지도

- 세이프티넷의 인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소비자의 세이프티넷 전체 인지율^(*7)은 10.7%(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4) 결과와 비교해 0.8포인트 상승)로 나타났으며, 대출 이용자의 세이프티넷 전체 인지율은 14.7%에 머물렀다.
 - 대출 이용자의 인지율을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의 상담 창구’가 1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센터와 같은 단체의 상담창구’가 13.9%, ‘정부나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담창구’가 13.0%로 나타났다.
- (*7) 각 세이프티넷의 인지율과 응답자 수로 구한 가중평균치.

⑥ 총량규제 해당자 비율

- 소비자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대출금 총액이 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 수입의 1/3을 초과한 대출금이 있다(총량규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다.
- 소득계층별로 대출금 총액이 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연 수입 300만 엔 이하에서는 71.2%, 301~500만 엔의 경우 42.8%, 501~700만 엔의 경우 34.4%, 701만 엔 이상의 경우 28.6%로 나타났다.
-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의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절약한다”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수입을 늘린다”가 30.9%, “매달 지출을 조절하여 상환한다”가 28.8%로 나타났다. 한편, “상환을 포기하고, 자기파산이나 채무 정리(과불금의 반환 청구를 포함한다) 절차를 밟는다”(19.8%),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및 지인에게 빌린다”(17.6%)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했다.
- 대출 이용자의 생활 환경의 변화로는 “실수령액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한 응답이 많아(도표5-1참조) 수입의 감소가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4) 결과와 비교해 총량규제 해당 비율이 상승한 요인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⑦ 채무 완제자의 대출 당시와 완제 방법

- 과거에 소비자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대출잔고가 없는 채무 완제자를 대상으로 완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84.6%로 나타났다.
-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31.2%는 “대출 피크 시의 대출잔고가 당시 연 수입의 1/3을 초과했다”라고 응답했다.
- 2005년 이전 완제자와 개정 대부업법^(*1)이 성립된 2006년 이후 완제자의 완제 방법을 비교한 결과, 2006년 이후 채무 완제자의 경우 “약정대로 상환을 하여 완제했다”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기파산과 같은 법적인 채무정리를 했다”, “과불금 반환 청구를 실시했다”라고 한 응답은 증가했다.

⑧ 불법사금융의 이용 상황 등

-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잘 알고 있다”(10.6%)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9.2%)를 합하여 49.8%로 나타났으며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6%가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여부 및 이용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다(이 중 1.4%는 지금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8)
-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록대부업체 중 어느 곳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가 38.8%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인지 매체의 경우 ‘친구 및 지인의 소개’(26.9%), ‘인터넷 광고’(17.9%)가 상위를 차지했다.

(*8)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 유무에 대해 2009년 2월에 공표된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를 참고로 살펴보면 대출 경험자(대부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포함한 3,177명)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04명)였으며, 이번 조사의 경우는 대출 경험자(대부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포함한 15,813명)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04명)로 나타났다.

2) 사업자 대상 앙케트 조사 결과

① 2006년 당시(개정 대부업법^(*1)이 성립)와 비교한 경영환경의 변화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인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성립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사의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워졌다”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변화가 없다”가 13.8%, “좋아졌다”가 4.7%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36.1%), “일이 줄었다”(23.7%),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11.1%)와 같은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100.0%), ‘도매·소매업’(87.5%), ‘건설업’(87.0%)에서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사업규모별로는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본금 2,000만엔 이상의 사업자에게서 71.4%로 나타난 반면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82.1%로 나타났다.

② 최근 1년간 대출을 신청한 결과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했을 경우의 행동

- 최근 1년간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신청한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중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4) 결과와 비교해 12.3포인트 감소)로 나타난 반면 “원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대출을 포기했다”(8.9%)와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26.5%)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 응답

을 합하여 35.4%(9.8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 “대출을 포기했다/거절 당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후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소비를 절약해서 자금을 변통했다”가 52.6%(지난 번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및 지인에게 빌렸다”가 34.0%(6.7포인트 감소),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지불을 연기했다”가 30.8%(4.0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을 변통했다”(15.0%)나 “종업원의 급여 지불을 연기했다”(11.3%)와 같은 응답도 있었다.

③ 대부업체의 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자세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 중 자본금 2,000만엔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 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은행’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경우는 6.2%로 지난 번 조사에 비해 9.5포인트 감소했다.
- 자본금 2,000만엔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성 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의 경우 ‘은행’이 89.6%로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2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체’의 경우는 1.2%로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은행의 융자 자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격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엄격해졌다”(21.2%)와 “엄격해졌다”(24.2%)를 합하여 45.4%(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로 나타났다.
-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자세에 대해서는 “엄격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엄격해졌다”(22.3%)와 “엄격해졌다”(24.1%)를 합하여 46.4%로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1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사업성 자금 대출 시 담보 등의 유무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출 시 담보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는 ‘담보 혹은 보증인이 필요하다’가 62.6%로 나타난 반면 대부업체의 경우는 ‘무담보·무보증’이 72.5%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을 조사한 결과 ‘운용자금’이 69.9%, ‘설비자금’이 30.5%, ‘기타 자금’이 25.2%로 나타났다.

⑤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2%가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해 지난 번 자금수요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적인 대출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유용한 목적의 경우 ‘거래처에 물품대금 지불’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에 상환’이 36.3%, ‘사원의 급여 지불’이

30.3%로 나타났다.

- 제삼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그 대출금을 빌려달라(사업성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고 의뢰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6%가 “의뢰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의뢰를 한 상대로는 ‘가족’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지인’이 32.3%, ‘회사의 공동경영자’가 24.6%로 나타났다.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인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자금의 유통에 미칠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이 있다(사업자금의 유통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⑥ 향후 대부업체 이용 의향

- 기업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인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22.6%)와 “필요하면 이용을 검토해 보고 싶다”(53.0%)를 합하여 75.6%로 나타났다.
- 이유로는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가 43.2%, “수속 절차가 간단해서”가 43.1%,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가 36.0%로 나타났다.
- 지역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이용해 보고 싶다(“필요하면 이용을 검토해 보고 싶다”를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쿄’(72.0%), ‘주부’(72.1%), ‘긴키’(71.7%), ‘규슈·오키나와’(74.5%)로 나타난 반면 ‘홋카이도’의 경우 93.8%로 나타났다.

⑦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 기업경영자와 개인사업주 중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25.6%, “중립적(기타)”인 의견이 15.7%,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12.9%로 나타났다.
- 법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우 엄격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인데 대출이 어려워져 앞으로가 불안하다”, “홍보를 더 했으면 한다”, “이번 개정은 서서히 목을 조이듯이 자금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출 제한이 엄격해져 불법자금용으로 빠지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⑧ 불법자금용의 이용 상황 등

- 기업경영자와 개인사업주 중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자금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자금용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잘 알고 있다”(13.0%)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38.8%)를 합하여 51.8%였으며, 불법자금용을 이용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있다”가 18.2%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에 접촉한 경험 및 이용 경험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한 적이 있다(전화나 메일 등을 포함)”가 18.9%, “이용한 적이 있다”가 7.9%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록 대부업체 중 어느 곳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가 43.4%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을 알게 된 매체에 대해서는 ‘친구·지인의 소개’(30.2%), ‘인터넷 광고’(22.6%), ‘권유 전화·FAX’(15.1%)가 상위를 차지했다.

연대표 2006년 12월 2010년 1월

2006년 12월	• 대부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성립, 동시에 공포
2007년 1월	• 20일, 개정법의 제1조 시행.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3월	• 개정법에 규정된 대부업협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신대부업협회 설립협의회 발족
4월	• 정부의 다중채무자 대책본부가 ‘다중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을 결정
5월	• 기존의 대부업협회(각 도도부현에 설치)가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결정
7월	• 금융청이 신대부업법의 정·성령안을 공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8월	• 금융청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감독 지침(안)’을 작성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 신대부업협회 설립 협의회가 자율규제기본규칙(안) 등을 작성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9월	• 신대부업협회 설립 협의회가 신탁회 개요를 책정하고 전국 9개소에서 신탁회 설명회를 실시
10월	• 자민당이 신대부업법의 정·성령안에 대해 금융청의 당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
11월	• 신대부업법에 준한 개정 정령 및 내각부령 공포
12월	• 18일, 신대부업법의 제2조 시행.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의 강화 및 행위 규제의 강화, 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일본대부업협회(JFSA) 설립
	• 주식회사 일본정보센터, 주식회사 아이넷, 주식회사 테라넷 3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테라넷’이 발족
2008년 3월	• 아에루 주식회사가 도쿄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
4월	• 다중채무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목적으로 초당파(자민당·민주당·공명당·공산당·사민당·무소속) 국회의원 69명으로 구성된 ‘다중채무문제 대책의원 연맹’을 설립
7월	• 주식회사 오크스가 나하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
9월	• 선라이즈 파이낸스 주식회사와 리먼·브라더즈·코머셜·모기지 주식회사가 도쿄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
	• 가자카 파이낸스 주식회사가 산와파이낸스 주식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해 자회사화
	• 주식회사 신세이은행이 GE컨슈머·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레이크를 비롯한 모든 개인 대상 금융사업을 매수
10월	• 아코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 의한 TOB(주식공개 매수)에 의해 지분법 적용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된다
12월	• 주식회사 레타스카드가 오사카 지방법원에 파산 절차 개시 신청
2009년 1월	• 대법원이 과불금 반환청구 시의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림
2월	• 주식회사 SFCG가 도쿄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민사재생 절차 폐지, 파산

	절차로 이행)
4월	- 주식회사 OMC카드, 주식회사 센트럴파이낸스, 주식회사 구오크 3사가 합병해, 새롭게 '주식회사 세디나'가 발족 - 주식회사 테라넷이 전국신용정보센터 연합회 가맹 33 정보센터로부터 신용정보사업을 계승해 회사명을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로 변경 - 개정 할부판매법에 명기된 크레딧 업계의 자율규제단체인 '사단법인 일본크레딧 협회'가 발족
6월	18일, 개정 대부업법 제3조 시행.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및 지정신용정보기관 제도,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 일본대부업협회가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의 지정시험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지정을 받는다
7월	주식회사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이 오릭스·크레딧 주식회사의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해 자회사화
8월	-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가 주식회사 시시비를 합병해 회사 약칭을 'JIC'에서 'JICC'로 변경 - 일본대부업협회가 '제1회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9월	- 아이후르 주식회사가 사적정리의 일종인 사업재생 ADR 절차(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를 신청 -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5,000사를 넘었다
11월	- 주식회사 로프로가 도쿄 지방법원에 회사 갱생법의 적용을 신청 - 일본사업자금융협회가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정 - 금융청은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 - 일본대부업협회가 '제2회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 일본대부업협회가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회 사무국 회의에 소집되어 '대부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12월	-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가 경제산업청 장관으로부터 '인가 할부판매협회'의 인가를 받다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2회~제7회 사무국 회의 개최 - 일본대부업협회가 '제3회 대부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 일본대부업협회가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의 좌장(금융담당 차관) 앞으로 의견서(개정 대부업법의 완전시행에 대비하여)를 제출
2010년 1월	'대부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8회~제11회 사무국 회의 개최 - 금융청이 지정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함에 있어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의 과불금 반환 청구에 응했을 경우에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등록되는 정보(서비스 정보 71 '계약 재검토')의 등록 및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009년도판

JFSA 백서

2010년 7월 발행

본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LFA(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

WWW.clfa.or.kr

TEL : 02-3487-5800

FAX : 02-3487-5757

발행 : 일본대부업협회

번역 :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 서은영